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5. 8.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교육부

I 특수교육의 개요

11

- 1. 특수교육의 정의 13
-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3
-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5

II 2025년 특수교육 현황

19

- 1. 주요 현황 21
- 2. 특수학교 현황 24
-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27
- 4. 순회교육 현황 28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8
-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29

III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1

-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33
 -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33
 -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33
 - (2) 특수학교 학생 34
 -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6
 -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37
 -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38
 - 2) 특수교육기관 확충 39
 - (1) 특수학교 39
 - (2) 특수학급 42



CONTENTS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5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47
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50
6) 장애 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53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59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양성	59
(2)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직 연수	68
8)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71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75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75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76
3)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80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82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86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86
2)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89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91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93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02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9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13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113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17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118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조사	118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교육과정 운영 지원	120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121
4) 장애공감문화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2

5) 특수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124
6)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128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130

Appendix

부록

I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133
II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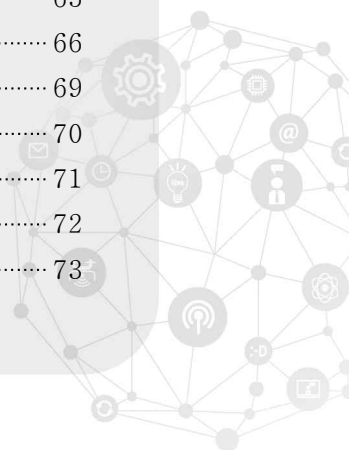


CONTENTS

표목차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14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15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15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15
〈표 1·5〉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15
〈표 1·6〉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	15
〈표 1·7〉 연도별 학급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6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16
〈표 1·9〉 연도별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7
〈표 2·1〉 2025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21
〈표 2·2〉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2
〈표 2·3〉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3
〈표 2·4〉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23
〈표 2·5〉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24
〈표 2·6〉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24
〈표 2·7〉 시·도별 설립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25
〈표 2·8〉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26
〈표 2·9〉 특수학급 현황	27
〈표 2·1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27
〈표 2·11〉 순회교육 현황	28
〈표 2·1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28
〈표 2·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29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33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3〉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35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36
〈표 3·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6
〈표 3·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37
〈표 3·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7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38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39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39
〈표 3·12〉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40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41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42
〈표 3·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43
〈표 3·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44
〈표 3·17〉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46
〈표 3·18〉 유아 특수교육기관 현황	47
〈표 3·19〉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47
〈표 3·20〉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48
〈표 3·21〉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49
〈표 3·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51
〈표 3·23〉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52
〈표 3·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54
〈표 3·25〉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55
〈표 3·26〉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56
〈표 3·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57
〈표 3·2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58
〈표 3·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60
〈표 3·30〉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현황	63
〈표 3·31〉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65
〈표 3·32〉 국·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66
〈표 3·33〉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자격 소지 현황	69
〈표 3·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70
〈표 3·3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71
〈표 3·36〉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72
〈표 3·37〉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73



CONTENTS

표목차

〈표 3·3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73
〈표 3·39〉 연도별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	74
〈표 3·4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75
〈표 3·41〉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77
〈표 3·42〉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78
〈표 3·43〉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79
〈표 3·44〉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81
〈표 3·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83
〈표 3·46〉 2024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	83
〈표 3·47〉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84
〈표 3·48〉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84
〈표 3·49〉 병원학교 운영 현황	87
〈표 3·50〉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현황	88
〈표 3·51〉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89
〈표 3·52〉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90
〈표 3·5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90
〈표 3·5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현황	91
〈표 3·55〉 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94
〈표 3·5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95
〈표 3·5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96
〈표 3·58〉 2025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97
〈표 3·59〉 2025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98
〈표 3·60〉 2025년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99
〈표 3·61〉 2025년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100
〈표 3·6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101
〈표 3·63〉 치료지원 현황	102
〈표 3·6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103
〈표 3·65〉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104
〈표 3·66〉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현황	105
〈표 3·67〉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106

〈표 3·6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107
〈표 3·69〉 2024년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0
〈표 3·70〉 2024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1
〈표 3·71〉 2024년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1
〈표 3·72〉 2024년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1
〈표 3·73〉 2024년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2
〈표 3·74〉 2025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114
〈표 3·7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15
〈표 3·76〉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116
〈표 3·77〉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117
〈표 3·78〉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 조사	119
〈표 3·79〉 국립특수교육원 교과용도서 개발, 교육과정 운영 지원	120
〈표 3·80〉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121
〈표 3·8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2
〈표 3·82〉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24
〈표 3·83〉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124
〈표 3·84〉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128
〈표 3·85〉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129
〈표 3·86〉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130
〈표 3·87〉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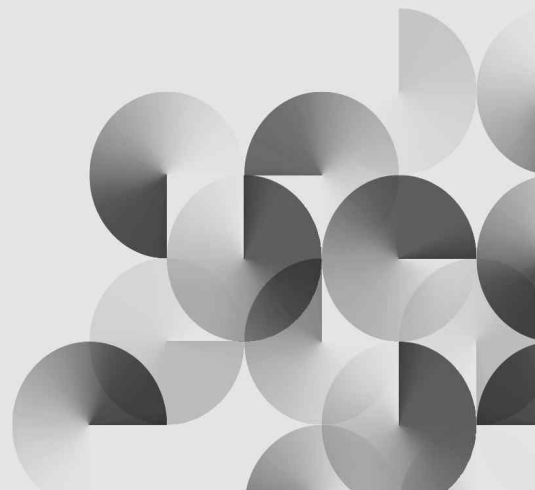


I

2025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I.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 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령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A)	‘25(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120,735	5,125
학교 과정 별	장애영아	742	656	549	582	532	439	369	359	407	470	360	-110
	유치원	4,744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8,248	8,781	8,746	8,222	-524
	초등학교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54,283	56,725	2,442
	중학교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23,005	25,013	27,188	2,175
	고등학교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19,867	20,725	22,040	23,326	1,286
	전공과	4,460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311	5,200	5,058	4,914	-144
특수학교 수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196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14,658	727
교원 수*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24,962	25,599	27,084	28,445	1,361

* 국·공·사립,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72	'77	'82	'87	'92	'97	'03	'06	'0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교 수	38	51	65	95	103	114	137	143	150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196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77	'82	'87	'92	'97	'00	'08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생 수	7,342	10,679	17,373	20,680	22,789	24,196	23,400	25,531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30,027	31,027

〈표 1·5〉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80	'85	'90	'95	'08	'12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급 수	355	1,601	3,181	3,440	6,352	8,927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14,658

〈표 1·6〉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86	'91	'96	'08	'09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생 수	30,876	28,795	26,087	37,857	39,380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65,966	69,908

〈표 1·7〉 연도별 학급 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학급,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학급 수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특수학교 학급	4,968	5,114	146	2.9	5,255	141	2.8	5,443	188	3.6	5,582	139	2.6	5,712	130	2.3
일반학교 특수학급	11,661	12,042	381	3.3	12,712	670	5.6	13,287	575	4.5	13,931	644	4.8	14,658	727	5.2
특수교육 지원센터	50	59	9	18.0	56	-3	-5.1	61	5	8.9	69	8	13.1	69	-	0.0
계	16,679	17,215	536	3.2	18,023	808	4.7	18,791	768	4.3	19,582	791	4.2	20,439	857	4.4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특수학교 배치 학생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6	25,467 (28.9)	494 (0.6)	46,645 (53.0)	15,344 (17.4)	61,989 (70.5)	87,950 (100)
2017	25,798 (28.9)	401 (0.4)	47,564 (53.2)	15,590 (17.4)	63,154 (70.7)	89,353 (100)
2018	25,919 (28.5)	418 (0.5)	48,848 (53.8)	15,595 (17.2)	64,443 (71.0)	90,780 (100)
2019	26,084 (28.1)	375 (0.4)	50,812 (54.7)	15,687 (16.9)	66,499 (71.5)	92,958 (100)
2020	26,299 (27.6)	316 (0.3)	52,744 (55.3)	16,061 (16.8)	68,805 (72.1)	95,420 (100)
2021	27,027 (27.5)	261 (0.3)	54,266 (55.3)	16,600 (16.9)	70,866 (72.2)	98,154 (100)
2022	27,979 (27.0)	254 (0.2)	57,948 (55.9)	17,514 (16.9)	75,462 (72.8)	103,695 (100)
2023	28,942 (26.4)	294 (0.3)	61,993 (56.5)	18,474 (16.8)	80,467 (73.3)	109,703 (100)
2024	30,027 (26.0)	363 (0.3)	65,966 (57.1)	19,254 (16.6)	85,220 (73.7)	115,610 (100)
2025	31,027 (25.7)	268 (0.2)	69,908 (57.9)	19,532 (16.2)	89,440 (74.1)	120,735 (100.0)

〈표 1·9〉 연도별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8	1,981 (2.2)	3,268 (3.6)	48,747 (53.7)	10,439 (11.5)	2,221 (2.4)	12,156 (13.4)	2,081 (2.3)	1,627 (1.8)	1,758 (1.9)	6,502 (7.2)	90,780 (100)
2019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9)	92,958 (100)
2020	1,908 (2.0)	3,132 (3.3)	50,693 (53.1)	9,928 (10.4)	1,993 (2.1)	13,917 (14.6)	2,404 (2.5)	1,226 (1.3)	1,785 (1.9)	8,434 (8.8)	95,420 (100)
2021	1,826 (1.9)	3,026 (3.1)	51,788 (52.8)	9,695 (9.9)	1,874 (1.9)	15,215 (15.5)	2,450 (2.5)	1,114 (1.1)	1,799 (1.8)	9,367 (9.5)	98,154 (100)
2022	1,753 (1.7)	2,961 (2.9)	53,718 (51.8)	9,639 (9.3)	1,865 (1.8)	17,024 (16.4)	2,622 (2.5)	1,078 (1.0)	1,948 (1.9)	11,087 (10.7)	103,695 (100)
2023	1,745 (1.6)	2,907 (2.6)	55,867 (50.9)	9,522 (8.7)	1,831 (1.7)	19,275 (17.6)	2,645 (2.4)	1,037 (0.9)	1,956 (1.8)	12,918 (11.8)	109,703 (100)
2024	1,698 (1.5)	2,842 (2.5)	57,883 (50.1)	9,263 (8.0)	1,785 (1.5)	22,194 (19.2)	2,600 (2.2)	1,065 (0.9)	1,979 (1.7)	14,301 (12.4)	115,610 (100.0)
2025	1,678 (1.4)	2,812 (2.3)	59,456 (49.3)	8,987 (7.4)	1,643 (1.4)	25,614 (21.2)	2,681 (2.2)	1,121 (0.9)	1,924 (1.6)	14,819 (12.3)	120,735 (100.0)

통계 자료 분석

○ 학생 수 변화 추이

-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20,735명으로 2024년보다 5,125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는 89,440명(74.1%)으로 2024년보다 4,220명(5.0%)이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학생 비율이 2.0%p 증가함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교원 변화 추이

- 2025년 특수학교는 총 196교로 2024년보다 1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14,658학급으로 2024년보다 727학급이 증가함
- 특수교육교원은 28,445명으로 2024년보다 1,361명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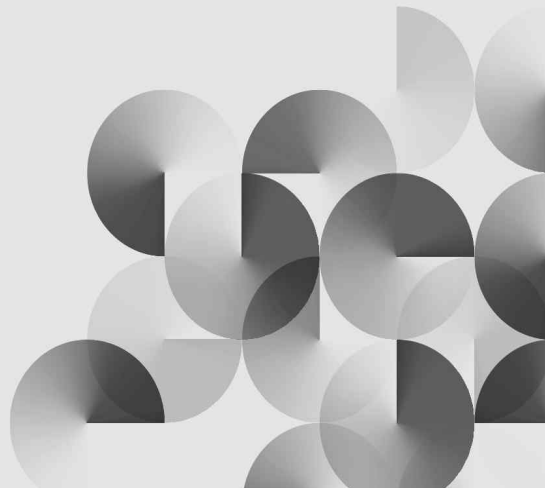


2025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II

2025년 특수교육 현황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II. 2025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2025. 4. 1.

1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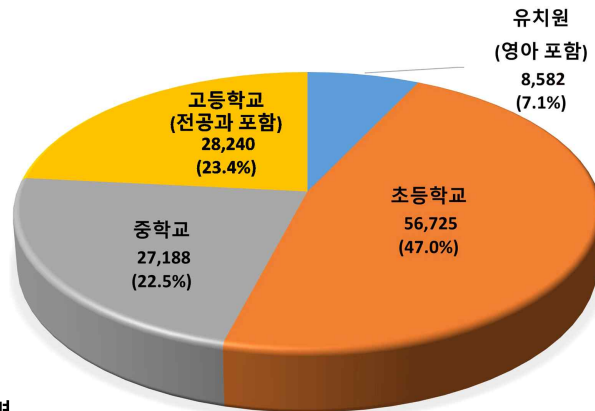
〈표 2·1〉 2025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단위: 명, 교, 학급)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31,027	69,908	19,532	268	120,735
학 생 수	장 애 유 형 별	시각장애	1,017	207	454	-	1,678
		청각장애	511	689	1,604	8	2,812
		지적장애	14,767	38,666	6,019	4	59,456
		지체장애	3,717	2,959	2,253	58	8,987
		정서·행동장애	70	1,057	516	-	1,643
		자폐성장애	9,805	14,012	1,797	-	25,614
		의사소통장애	200	1,447	1,034	-	2,681
		학습장애	6	687	428	-	1,121
		건강장애	8	97	1,819	-	1,924
		발달지체	926	10,087	3,608	198	14,819
		계	31,027	69,908	19,532	268	120,735
	학 교 과 정 별	장애영아	92	-	-	268	360
		유치원	804	5,524	1,894	-	8,222
		초등학교	10,671	37,150	8,904	-	56,725
		중학교	7,290	15,305	4,593	-	27,188
		고등학교	7,415	11,770	4,141	-	23,326
		전공과	4,755	159	-	-	4,914
		계	31,027	69,908	19,532	268	120,735
학교 및 센터 수			196	12,390		197	12,783
				9,709	8,486		
학급 수			5,712	14,658	18,535	69	38,974
특수학교(급) 교원 수*			10,733	15,911	-	1,801	28,445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			5,391	11,289	255	-	16,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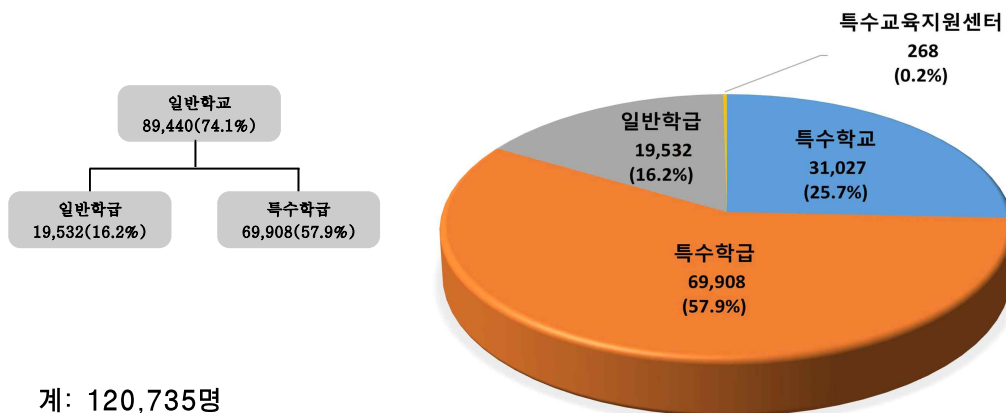
* 국·공·사립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계: 120,735명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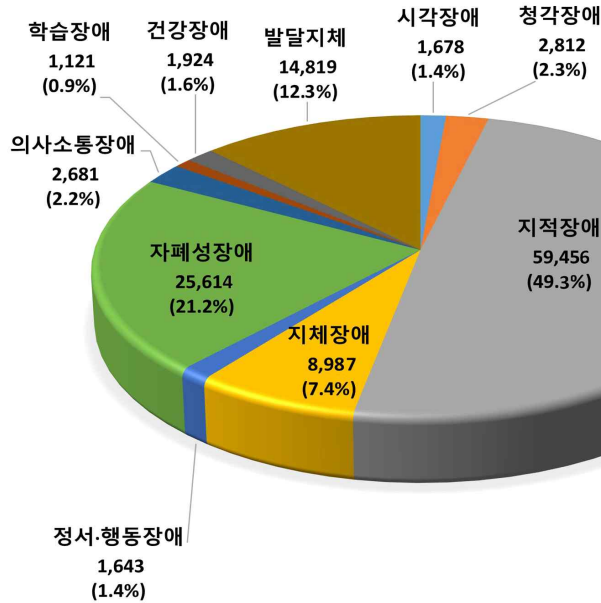
계: 120,735명

〈표 2·2〉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31,027 (25.7)	69,908 (57.9)	19,532 (16.2)	89,440 (74.1)	268 (0.2)	120,735 (100.0)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계: 120,735명

〈표 2·3〉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1,678 (1.4)	2,812 (2.3)	59,456 (49.3)	8,987 (7.4)	1,643 (1.4)	25,614 (21.2)	2,681 (2.2)	1,121 (0.9)	1,924 (1.6)	14,819 (12.3)	120,7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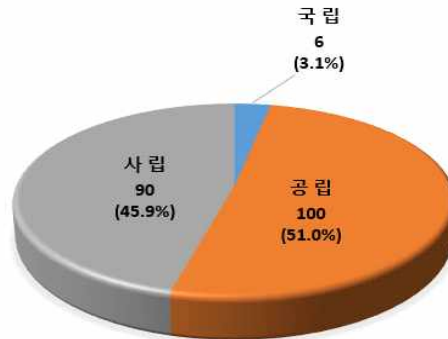
〈표 2·4〉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계
중도중복장애	지적장애	56	66	736	16	874
	자폐성장애	6	12	19	18	55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8			8

2 특수학교 현황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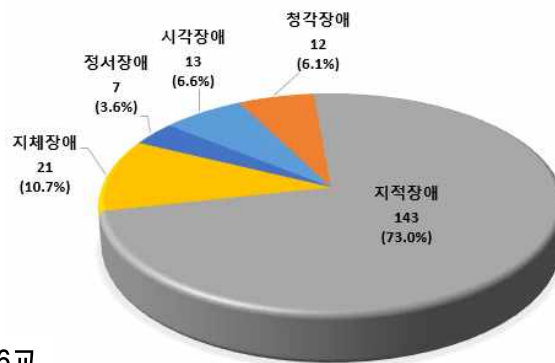
계: 196교

〈표 2·5〉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립	6	179	908	349
공립	100	3,506	19,284	6,549
사립	90	2,027	10,835	3,835
계	196	5,712	31,027	10,733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계: 196교

〈표 2·6〉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학교 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수	13	12	143	21	7	196

〈표 2·7〉 시·도별 설립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설립별 학교 수				장애유형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11	18	32	3	4	16	6	3	32
부산	-	8	7	15	1	1	12	1	-	15
대구	-	5	6	11	1	1	6	2	1	11
인천	-	6	4	10	1	1	7	1	-	10
광주	-	4	2	6	1	-	4	1	-	6
대전	-	4	2	6	1	-	4	1	-	6
울산	-	2	2	4	-	1	3	-	-	4
세종	-	2	-	2	-	-	2	-	-	2
경기	2	14	22	38	-	2	32	3	1	38
강원	-	8	1	9	1	-	8	-	-	9
충북	-	4	7	11	2	1	5	2	1	11
충남	1	8	2	11	-	-	10	1	-	11
전북	-	6	4	10	1	1	6	2	-	10
전남	-	4	5	9	1	-	8	-	-	9
경북	-	3	5	8	-	-	7	-	1	8
경남	-	9	2	11	-	-	11	-	-	11
제주	-	2	1	3	-	-	2	1	-	3
계	6	100	90	196	13	12	143	21	7	196

〈표 2·8〉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단위: 교)

시도	계	학교과정 설치별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	32	7	23	28	28	27	26
부산	15	5	9	12	13	11	9
대구	11	-	4	10	10	11	11
인천	10	1	7	9	10	9	8
광주	6	4	5	6	6	6	5
대전	6	1	4	6	6	6	6
울산	4	-	3	4	4	4	4
세종	2	2	2	2	2	2	2
경기	38	3	32	33	35	35	29
강원	9	-	5	9	9	9	8
충북	11	-	8	10	10	10	10
충남	11	2	4	9	9	11	9
전북	10	1	3	9	9	9	9
전남	9	-	5	9	9	9	9
경북	8	-	4	8	8	8	8
경남	11	-	5	11	11	11	11
제주	3	-	3	3	3	3	3
계	196	26	126	178	182	181	167

※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는 각 학교과정별로 각각 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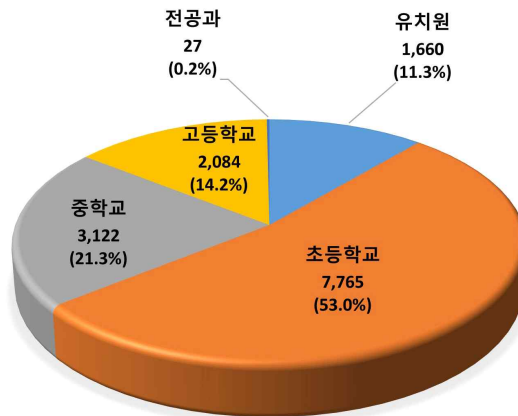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표 2·9〉 특수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치원	1,275	1,660	5,524	1,763
초등학교	5,006	7,765	37,150	8,204
중학교	2,221	3,122	15,305	3,442
고등학교	1,191	2,084	11,770	2,449
전공과	16	27	159	53
계	9,709	14,658	69,908	15,911

〔학교급별 특수학급 현황〕



계: 14,658개

〈표 2·1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치원	1,330	1,675	1,894
초등학교	3,626	8,585	8,904
중학교	2,031	4,393	4,593
고등학교	1,499	3,882	4,141
계	8,486	18,535	19,532

4 순회교육 현황

〈표 2·11〉 순회교육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별					학교과정별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영아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922	117	37	-	1,076	135	447	232	262	1,076	311	316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460	117	19	10	606	49	263	142	152	606	218	226
특수교육 지원센터	416	51	37	2,117	2,621	936	1,000	450	235	2,621	-	1,730*
계	1,798	285	93	2,127	4,303	1,120	1,710	824	649	4,303	529	2,272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비정규교사 104명 포함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표 2·1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학급 수	배치 인력 현황		
			교사	일반직 공무원	기타 (치료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197	268	69	1,801	55	573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표 2·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		취업		비진학 · 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전공과)	진학률	취업자 수	취업률	
고등학교	특수학교	2,036	1,216	59.7	84	10.2	736
	특수학급	3,425	1,916	55.9	494	32.7	1,015
	일반학급	1,080	722	66.9	49	13.7	309
	소계	6,541	3,854	58.9	627	23.3	2,060
전공과	특수학교	2,157	37	1.7	1,081	51.0	1,039
	특수학급	83	2	2.4	56	69.1	25
	소계	2,240	39	1.7	1,137	51.7	1,064
계		8,781	3,893	44.3	1,764	36.1	3,124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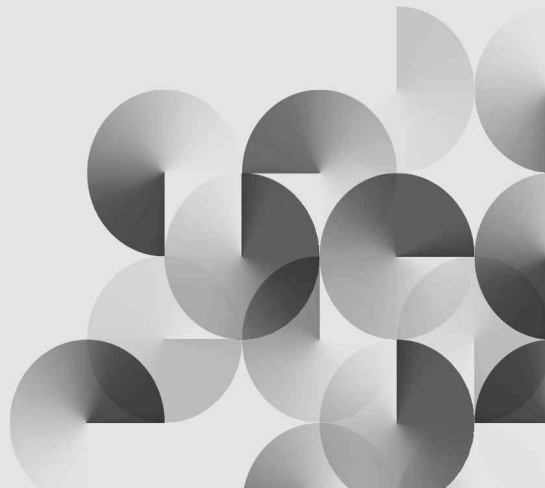


III

2025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33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75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86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113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18





Ⅲ.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2025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2%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체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58,592	342,249	200,112	203,454	804,407	863	6,928	3,490	3,628	14,909	1.5	2.0	1.7	1.8	1.8
부산	31,118	137,888	78,993	70,832	318,831	577	3,642	1,691	1,736	7,646	1.8	2.6	2.1	2.4	2.4
대구	28,157	110,567	63,675	59,533	261,932	505	2,829	1,247	1,592	6,173	1.8	2.5	1.9	2.6	2.3
인천	33,700	144,022	82,641	75,887	336,250	700	4,063	1,955	1,875	8,593	2.1	2.8	2.4	2.4	2.5
광주	18,185	72,944	43,212	41,505	175,846	204	1,500	849	953	3,506	1.1	2.0	1.9	2.3	2.0
대전	18,116	67,173	39,685	38,540	163,514	285	1,590	716	1,013	3,604	1.6	2.4	1.8	2.6	2.2
울산	12,371	58,039	33,543	31,406	135,359	243	1,411	674	807	3,135	2.0	2.4	2.0	2.5	2.3
세종	5,840	30,985	16,633	15,002	68,460	173	657	253	171	1,254	3.0	2.1	1.5	1.1	1.8
경기	135,809	689,102	392,634	360,518	1,578,063	2,053	14,949	6,862	6,458	30,322	1.5	2.2	1.7	1.8	1.9
강원	12,304	61,371	37,313	36,558	147,546	228	1,458	829	836	3,351	1.8	2.4	2.2	2.3	2.3
충북	13,326	73,843	43,390	40,499	171,058	424	2,295	1,203	1,236	5,158	3.2	3.1	2.7	3.0	3.0
충남	19,769	105,163	62,103	59,650	246,685	520	2,986	1,358	1,428	6,292	2.6	2.8	2.2	2.4	2.5
전북	15,164	75,909	48,665	48,191	187,929	394	2,253	1,061	1,093	4,801	2.6	3.0	2.2	2.2	2.5
전남	13,970	76,201	47,588	45,831	183,590	286	2,110	1,090	1,164	4,650	2.0	2.8	2.3	2.5	2.5
경북	24,816	108,629	64,338	64,076	261,859	438	3,066	1,369	1,687	6,560	1.8	2.8	2.1	2.6	2.5
경남	35,024	159,766	96,642	90,126	381,558	502	3,896	2,064	2,084	8,546	1.4	2.4	2.1	2.3	2.2
제주	5,035	36,245	20,750	18,711	80,741	187	1,092	477	479	2,235	3.7	3.0	2.3	2.5	2.7
계	481,296	2,350,096	1,371,917	1,300,319	5,503,628	8,582	56,725	27,188	28,240	120,735	1.8	2.4	2.0	2.2	2.2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을 포함

※ 연도별 비율: 1.6%(2020), 1.7%(2021), 1.8%(2022), 1.9%(2023), 2.0%(2024), 2.2%(2025)

(2) 특수학교 학생

-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31,027명으로 2024년의 30,027명에 비해 1,000명이 증가함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생 수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30,027	31,027

- 시도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설립 분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3〉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서울	285	224	1,353	897	2	1,570	-	-	-	171	4,502
부산	71	20	886	308	9	648	7	1	-	128	2,078
대구	66	47	1,119	253	6	375	40	1	1	148	2,056
인천	88	34	991	202	4	635	25	-	-	22	2,001
광주	86	19	667	161	3	418	2	-	-	69	1,425
대전	108	4	530	120	-	365	3	-	-	11	1,141
울산	12	19	456	58	5	241	3	-	-	15	809
세종	-	1	111	41	2	145	3	1	-	9	313
경기	33	30	2,677	583	5	2,138	37	1	-	62	5,566
강원	48	2	538	68	2	294	13	-	-	39	1,004
충북	122	66	782	134	13	347	6	-	1	79	1,550
충남	1	2	911	185	-	518	4	-	-	21	1,642
전북	45	8	696	115	2	283	12	-	1	80	1,242
전남	40	16	723	127	3	337	12	-	2	18	1,278
경북	1	5	1,000	95	4	434	17	-	-	10	1,566
경남	10	12	1,031	305	10	804	8	2	3	42	2,227
제주	1	2	296	65	-	253	8	-	-	2	627
계	1,017	511	14,767	3,717	70	9,805	200	6	8	926	31,027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908명(2.9%), 공립학교 19,284명(62.2%), 사립학교 10,835명(34.9%)임
 -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3·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울	460	1,849	2,193	4,502	48.7
부산	-	1,511	567	2,078	27.3
대구	-	1,230	826	2,056	40.2
인천	-	1,624	377	2,001	18.8
광주	-	1,163	262	1,425	18.4
대전	-	877	264	1,141	23.1
울산	-	535	274	809	33.9
세종	-	313	-	313	-
경기	378	2,867	2,321	5,566	41.7
강원	-	939	65	1,004	6.5
충북	-	731	819	1,550	52.8
충남	70	1,356	216	1,642	13.2
전북	-	713	529	1,242	42.6
전남	-	724	554	1,278	43.3
경북	-	489	1,077	1,566	68.8
경남	-	1,940	287	2,227	12.9
제주	-	423	204	627	32.5
계	908(2.9)	19,284(62.2)	10,835(34.9)	31,027(100.0)	34.9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69,908명으로 2024년의 65,966명에 비해 3,942명이 증가함
 - －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비해 727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생 수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65,966	69,908

- 학교급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5,524명, 초등학교 37,150명, 중학교 15,305명, 고등학교 11,929명(전공과 포함)임

〈표 3·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520	-	520	10	4,173	-	4,183	12	1,848	17	1,877	18	1,202	221	1,441	40	7,743	238	8,021
부산	-	227	-	227	5	2,000	5	2,010	-	767	6	773	8	569	88	665	13	3,563	99	3,675
대구	-	215	-	215	9	1,417	-	1,426	6	552	-	558	7	384	11	402	22	2,568	11	2,601
인천	-	454	-	454	6	2,643	-	2,649	-	1,000	6	1,006	-	679	49	728	6	4,776	55	4,837
광주	-	119	-	119	6	785	-	791	10	345	12	367	14	242	54	310	30	1,491	66	1,587
대전	-	213	-	213	-	1,041	-	1,041	-	371	10	381	-	312	46	358	-	1,937	56	1,993
울산	-	164	-	164	-	964	-	964	-	384	-	384	-	318	-	318	-	1,830	-	1,830
세종	-	150	-	150	-	418	-	418	-	126	-	126	-	69	-	69	-	763	-	763
경기	-	1,553	4	1,557	-	10,660	21	10,681	-	4,341	161	4,502	-	3,354	146	3,500	-	19,908	332	20,240
강원	5	157	-	162	5	997	-	1,002	-	412	-	412	8	271	-	279	18	1,837	-	1,855
충북	2	318	-	320	9	1,413	-	1,422	12	623	7	642	17	436	20	473	40	2,790	27	2,857
충남	4	401	-	405	6	2,175	-	2,181	6	826	46	878	3	635	23	661	19	4,037	69	4,125
전북	-	257	-	257	11	1,422	-	1,433	-	523	19	542	7	370	31	408	18	2,572	50	2,640
전남	-	205	-	205	3	1,592	-	1,595	-	683	18	701	-	537	21	558	3	3,017	39	3,059
경북	-	173	-	173	-	1,972	8	1,980	-	671	111	782	-	523	190	713	-	3,339	309	3,648
경남	-	315	-	315	2	2,701	11	2,714	5	1,025	110	1,140	7	723	116	846	14	4,764	237	5,015
제주	-	68	-	68	6	654	-	660	16	218	-	234	15	158	27	200	37	1,098	27	1,162
계	11	5,509	4	5,524	78	37,027	45	37,150	67	14,715	523	15,305	104	10,782	1,043	11,929	260	68,033	1,615	69,908

*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59명(대구 19명, 인천 16명, 경기 124명) 포함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2025년 4월 기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9,532명으로 2024년의 19,254명에 비해 278명이 증가함

〈표 3·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생 수	15,622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16,600	17,514	18,474	19,254	19,532

- 학교급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유치원 1,894명, 초등학교 8,904명, 중학교 4,593명, 고등학교 4,141명임

〈표 3·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18	84	102	4	1,086	29	1,119	6	477	122	605	9	269	241	519	19	1,850	476	2,345
부산	-	59	188	247	2	857	2	861	-	357	62	419	10	273	83	366	12	1,546	335	1,893
대구	-	59	199	258	1	701	2	704	5	226	41	272	6	182	84	272	12	1,168	326	1,506
인천	-	95	101	196	-	720	4	724	-	431	17	448	-	328	43	371	-	1,574	165	1,739
광주	-	4	31	35	-	173	1	174	3	115	32	150	5	95	35	135	8	387	99	494
대전	-	13	22	35	-	202	1	203	-	90	9	99	-	97	31	128	-	402	63	465
울산	-	24	35	59	-	193	-	193	-	110	4	114	-	107	12	119	-	434	51	485
세종	-	8	-	8	-	99	-	99	-	40	-	40	-	30	1	31	-	177	1	178
경기	-	89	100	189	-	2,219	18	2,237	-	969	119	1,088	-	751	163	914	-	4,028	400	4,428
강원	-	35	10	45	-	163	3	166	-	132	12	144	14	110	12	136	14	440	37	491
충북	-	37	13	50	6	314	4	324	-	168	8	176	4	165	18	187	10	684	43	737
충남	2	47	22	71	1	248	1	250	1	78	19	98	1	77	27	105	5	450	69	524
전북	-	47	49	96	5	411	-	416	-	182	36	218	5	117	64	186	10	757	149	916
전남	-	50	15	65	-	120	1	121	-	64	16	80	-	33	13	46	-	267	45	312
경북	-	107	124	231	-	625	16	641	-	192	64	256	-	133	69	202	-	1,057	273	1,330
경남	-	76	87	163	1	462	3	466	3	237	74	314	2	241	115	358	6	1,016	279	1,301
제주	-	26	18	44	2	204	-	206	-	62	10	72	9	37	20	66	11	329	48	388
계	2	794	1,098	1,894	22	8,797	85	8,904	18	3,930	645	4,593	65	3,045	1,031	4,141	107	16,566	2,859	19,532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025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69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268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16명, 1세 100명, 2세 152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182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86명임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학급, 명)

시도	센터 설치 장애영아 학급 수	연령별 지원 영아 수				교육유형별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교육 영아 수	계
서울	9	1	15	25	41	41	-	41
부산	-	-	-	-	-	-	-	-
대구	3	-	4	6	10	10	-	10
인천	7	1	6	9	16	11	5	16
광주	-	-	-	-	-	-	-	-
대전	3	-	2	3	5	5	-	5
울산	-	2	5	4	11	-	11	11
세종	-	-	-	-	-	-	-	-
경기	37	6	45	37	88	24	64	88
강원	1	-	1	-	1	1	-	1
충북	3	2	8	4	14	13	1	14
충남	1	-	-	1	1	1	-	1
전북	1	-	-	3	3	2	1	3
전남	-	1	-	-	1	-	1	1
경북	-	2	9	5	16	14	2	16
경남	2	-	1	2	3	2	1	3
제주	2	1	4	53	58	58	-	58
계	69	16	100	152	268	182	86	268

2)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96교로 2024년 대비 1교 증가하였음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교 수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196

- 전국 196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6교, 공립 100교, 사립 90교로 국·공립학교 비율이 54.1%임
- 전국 196개 특수학교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2교, 지적장애학교 143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3.0%임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국립	1	1	2	1	1	6
공립	2	2	89	6	1	100
사립	10	9	52	14	5	90
계	13	12	143	21	7	196

※ 장애유형별 구분은 주 장애유형을 말함

- 전국 196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38교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특별시 32교, 부산광역시 15교 등의 순임

〈표 3·12〉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4	16	6	3	32
부산	1	1	12	1	-	15
대구	1	1	6	2	1	11
인천	1	1	7	1	-	10
광주	1	-	4	1	-	6
대전	1	-	4	1	-	6
울산	-	1	3	-	-	4
세종	-	-	2	-	-	2
경기	-	2	32	3	1	38
강원	1	-	8	-	-	9
충북	2	1	5	2	1	11
충남	-	-	10	1	-	11
전북	1	1	6	2	-	10
전남	1	-	8	-	-	9
경북	-	-	7	-	1	8
경남	-	-	11	-	-	11
제주	-	-	2	1	-	3
계	13	12	143	21	7	196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립특수학교, 그 외 시도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11	18	32
부산	-	8	7	15
대구	-	5	6	11
인천	-	6	4	10
광주	-	4	2	6
대전	-	4	2	6
울산	-	2	2	4
세종	-	2	-	2
경기	2	14	22	38
강원	-	8	1	9
충북	-	4	7	11
충남	1	8	2	11
전북	-	6	4	10
전남	-	4	5	9
경북	-	3	5	8
경남	-	9	2	11
제주	-	2	1	3
계	6	100	90	196

■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예술·체육 및 직업교육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 지원
- 도시형캠퍼스 등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운영 제도의 활성화

(2) 특수학급

■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14,658학급으로 2024년보다 727개 학급이 증가함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급 수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14,658

- 학교급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1,660학급, 초등학교 7,765학급, 중학교 3,122학급, 고등학교 2,111학급(전공과 포함)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53.0%를 차지함
-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6학급, 공립 14,290학급, 사립 322학급으로 총 14,658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특수학급은 전체 특수학급의 97.8%를 차지함

<표 3·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153	-	153	2	880	-	882	2	340	3	345	3	246	50	299	7	1,619	53	1,679
부산	-	66	-	66	1	389	1	391	-	148	1	149	1	82	12	95	2	685	14	701
대구	-	59	-	59	2	280	-	282	1	103	-	104	1	71	2	74	4	513	2	519
인천	-	122	-	122	1	519	-	520	-	179	1	180	-	116	7	123	1	936	8	945
광주	-	34	-	34	1	179	-	180	2	72	3	77	2	38	10	50	5	323	13	341
대전	-	62	-	62	-	210	-	210	-	83	2	85	-	51	9	60	-	406	11	417
울산	-	45	-	45	-	190	-	190	-	77	-	77	-	58	-	58	-	370	-	370
세종	-	48	-	48	-	92	-	92	-	32	-	32	-	18	-	18	-	190	-	190
경기	-	495	1	496	-	2,059	3	2,062	-	861	31	892	-	562	22	584	-	3,977	57	4,034
강원	1	41	-	42	1	234	-	235	-	95	-	95	1	58	-	59	3	428	-	431
충북	1	97	-	98	2	328	-	330	2	134	4	140	3	76	3	82	8	635	7	650
충남	1	114	-	115	1	485	-	486	1	175	9	185	1	116	5	122	4	890	14	908
전북	-	82	-	82	2	328	-	330	-	113	5	118	1	66	7	74	3	589	12	604
전남	-	70	-	70	1	401	-	402	-	170	5	175	-	96	4	100	1	737	9	747
경북	-	54	-	54	-	452	2	454	-	153	25	178	-	92	35	127	-	751	62	813
경남	-	96	-	96	1	603	2	606	1	218	29	248	1	132	26	159	3	1,049	57	1,109
제주	-	18	-	18	1	112	-	113	2	40	-	42	2	22	3	27	5	192	3	200
계	3	1,656	1	1,660	16	7,741	8	7,765	11	2,993	118	3,122	16	1,900	195	2,111	46	14,290	322	14,658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7학급(대구 2학급, 인천 3학급, 경기 22학급) 포함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5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3명, 초등학교 4.9명,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5.9명임

〈표 3·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0	5.5	5.4	5.4	3.4	4.7	5.4	4.8	3.3	4.9	5.4	5.1
부산	2.8	5.6	5.5	6.2	3.4	5.1	5.2	7.0	3.2	5.3	5.3	6.6
대구	3.7	5.5	5.4	6.8	3.6	5.1	5.4	5.4	3.6	5.2	5.4	6.3
인천	2.8	5.3	5.6	6.1	3.7	5.1	5.6	5.9	3.7	5.1	5.6	6.0
광주	3.1	4.8	4.9	6.3	3.5	4.4	4.8	6.2	3.4	4.5	4.8	6.2
대전	2.9	5.2	5.5	6.5	3.4	5.0	4.5	6.0	3.4	5.0	4.8	6.3
울산	2.3	4.7	4.9	6.5	3.6	5.1	5.0	5.5	3.5	5.0	5.0	6.0
세종	3.0	5.4	5.8	5.9	3.1	4.5	3.9	3.8	3.1	4.7	4.5	4.7
경기	3.2	5.9	5.9	6.2	3.1	5.2	5.0	6.0	3.1	5.3	5.2	6.1
강원	3.3	4.1	4.8	5.5	3.9	4.3	4.3	4.7	3.8	4.2	4.5	5.1
충북	2.9	4.5	5.0	5.9	3.3	4.3	4.6	5.8	3.2	4.4	4.7	5.9
충남	3.6	4.8	5.2	5.8	3.5	4.5	4.7	5.4	3.5	4.5	4.9	5.6
전북	3.2	5.3	5.2	6.1	3.1	4.3	4.6	5.5	3.1	4.5	4.8	5.8
전남	3.0	4.6	5.3	6.0	2.9	4.0	4.0	5.6	2.9	4.1	4.3	5.8
경북	3.0	4.9	5.3	6.9	3.2	4.4	4.4	5.6	3.2	4.5	4.6	6.2
경남	3.0	4.5	5.1	6.0	3.3	4.5	4.6	5.3	3.3	4.5	4.8	5.7
제주	3.4	5.4	5.5	6.1	3.8	5.8	5.6	7.4	3.7	5.7	5.5	6.7
평균	3.0	5.2	5.4	6.1	3.3	4.8	4.9	5.7	3.3	4.9	5.0	5.9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 향후 과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등 장애유형별 또는 특정 분야별 특수학급 설치·운영 추진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교 37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69학급, 총 106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92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268명으로 총 360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23명, 1세 132명, 2세 205명으로 총 360명임

〈표 3·17〉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학급)

시도	연령별 지원 영아 수				배치기관별 지원 영아 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합계			
	1세 미만	1세	2세	계	영아 학급 수	영아를 배치한 유치원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영아를 배치한 유치원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센터 지원 영아 수									순회 지원 영아 수	계				
서울	3	19	36	58	10	-	17	9	41	-	41	19	-	58
부산	-	6	14	20	9	1	20	-	-	-	-	9	1	20
대구	-	4	6	10	-	-	-	3	10	-	10	3	-	10
인천	2	8	11	21	2	-	5	7	11	5	16	9	-	21
광주	2	8	8	18	4	-	18	-	-	-	-	4	-	18
대전	-	6	5	11	3	3	6	3	5	-	5	6	3	11
울산	2	5	4	11	-	-	-	-	-	11	11	-	-	11
세종	-	2	3	5	2	-	5	-	-	-	-	2	-	5
경기	7	46	42	95	4	-	7	37	24	64	88	41	-	95
강원	-	1	-	1	-	-	-	1	1	-	1	1	-	1
충북	2	8	4	14	-	-	-	3	13	1	14	3	-	14
충남	1	2	6	9	2	1	8	1	1	-	1	3	1	9
전북	-	3	5	8	1	2	5	1	2	1	3	2	2	8
전남	1	-	1	2	-	-	1	-	-	1	1	-	-	2
경북	2	9	5	16	-	-	-	-	14	2	16	-	-	16
경남	-	1	2	3	-	-	-	2	2	1	3	2	-	3
제주	1	4	53	58	-	-	-	2	58	-	58	2	-	58
계	23	132	205	360	37	7	92	69	182	86	268	106	7	360

■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진단·등록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를 통해 적기에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연계 강화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의 가족 지원 강화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4월 기준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26교 257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교 58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1,275교 1,660학급으로 총 1,401교 1,917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18〉 유아 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교 수	126	10	1,275	1,401
학급 수	257	58	1,660	1,917

- 2025년 4월 기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804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00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5,524명, 유치원 일반학급 1,894명으로 총 8,222명임

〈표 3·19〉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유아 수	804	200	5,524	1,894	8,222

- 2025년 4월 기준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비는 공립유치원 6,303명, 사립유치원 1,102명으로 총 7,405명이 지원받고 있음
- 1인당 월 교육비 평균은 공립유치원 214.5천 원, 사립유치원 504.4천 원임

〈표 3·20〉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시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서울	538	236	84	684
부산	286	150	188	460
대구	274	150	199	401
인천	549	268	101	468
광주	123	200	31	600
대전	226	200	22	400
울산	188	180	35	450
세종	158	310	-	-
경기	1,642	322	104	502
강원	192	201	10	405
충북	355	200	13	600
충남	448	150	22	613
전북	304	150	49	515
전남	255	200	15	480
경북	280	150	124	451
경남	391	230	87	491
제주	94	350	18	550
합계 및 전국 평균	6,303	214.5	1,102	504.4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표 3·21〉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특수교육통계('25.4.1.기준)				보육통계('24.12.31.기준)				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소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126	1,275	1,330	2,731	178	1,718	677	2,573	5,304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강화
- 유아단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

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4월 기준, 전국에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은 교사 1,801명, 일반직 55명, 치료지원인력과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한 기타 인력 573명으로 총 2,429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연간 예산 총액은 약 2,564억 원임

〈표 3·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원)

시도	센터 수	교사			일반직			기타				계	연간 예산 (총액)
		정규	계약	소계	정규	계약	소계	치료 지원 인력	사회 복무 요원	기타	소계		
서울	11	116	6	122	-	4	4	-	-	37	37	163	15,242
부산	6	88	3	91	8	-	8	-	1	4	5	104	26,195
대구	6	103	6	109	4	-	4	-	11	1	12	125	7,980
인천	6	111	-	111	-	-	-	8	-	3	11	122	8,065
광주	3	38	8	46	-	-	-	-	2	10	12	58	14,704
대전	5	57	2	59	6	-	6	3	1	7	11	76	9,852
울산	3	43	2	45	2	-	2	37	1	6	44	91	8,468
세종	1	20	4	24	2	-	2	-	3	-	3	29	6,531
경기	27	390	-	390	7	3	10	44	1	51	96	496	31,068
강원	18	70	8	78	1	-	1	32	-	4	36	115	6,557
충북	11	104	-	104	6	1	7	12	-	10	22	133	26,517
충남	15	96	9	105	4	1	5	39	1	29	69	179	33,007
전북	15	90	5	95	4	-	4	2	-	23	25	124	13,415
전남	23	78	-	78	-	-	-	26	-	40	66	144	9,717
경북	23	140	-	140	-	-	-	11	-	26	37	177	10,945
경남	21	163	-	163	2	-	2	70	-	8	78	243	16,491
제주	3	40	1	41	-	-	-	8	-	1	9	50	11,685
계	197	1,747	54	1,801	46	9	55	292	21	260	573	2,429	256,439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188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4개를 운영하고 있음

〈표 3·23〉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시도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지원단 수	구성인원 수	센터 수	거점 영역
서울	11	188	5	시각(2), 청각(2), 지체중복(1)
부산	6	61	6	시각(1), 청각(1), 지체(1), 발달(1), 진로직업(1), 장애영유아(1)
대구	6	149	3	시각(1), 청각(1), 정서(1)
인천	6	100	2	시각(1), 청각(1)
광주	3	72	1	시청각(1)
대전	4	50	1	시청각(1)
울산	3	20	1	시청각(1)
세종	1	18	-	-
경기	25	332	5	시각(1), 청각(1), 시청각(1), 지체중복(1), 건강(1)
강원	18	172	2	시각(1), 청각(1)
충북	10	123	4	시각(2), 청각(1), 발달(1)
충남	14	136	1	시청각(1)
전북	14	166	4	시각(1), 청각(1), 지체(1), 행동중재(1)
전남	23	211	3	시청각(3)
경북	22	190	4	시청각(4)
경남	19	205	10	시청각(2), 전환교육(4), 시청각·전환교육(1), 진로직업(1), 장애영유아·전환교육(1), 시청각·장애영유아·전환교육(1)
제주	3	22	2	시청각(2)
계	188	2,215	54	

■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학교-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담당 교육전문직, 교사, 행정직원 등 전문인력 배치·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지원 확대

6) 장애 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학생 51,896 중 45,291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배치율은 87.5%이며, 2,464명이 선정 취소되었음

〈표 3·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배치 비율	선정 취소자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서울	1,618	1,313	3,405	3,153	1,187	1,052	74	65	6,284	5,583	88.8	161
부산	745	641	1,699	1,576	1,333	1,051	-	-	3,777	3,268	86.5	156
대구	674	597	1,093	1,037	954	867	10	9	2,731	2,510	91.9	98
인천	755	499	1,982	1,796	1,045	875	17	17	3,799	3,187	83.9	225
광주	476	471	688	556	341	244	-	-	1,505	1,271	84.5	66
대전	267	267	825	731	236	181	11	11	1,339	1,190	88.9	64
울산	233	210	918	728	338	202	11	10	1,500	1,150	76.7	27
세종	127	127	361	341	127	112	1	1	616	581	94.3	32
경기	1,955	1,412	8,442	7,597	2,701	2,334	107	98	13,205	11,441	86.6	896
강원	273	271	714	657	314	229	4	2	1,305	1,159	88.8	146
충북	457	431	1,208	1,127	435	386	20	18	2,120	1,962	92.5	132
충남	514	440	1,844	1,605	321	271	3	3	2,682	2,319	86.5	73
전북	263	258	1,112	1,038	652	553	6	5	2,033	1,854	91.2	59
전남	380	361	1,316	1,147	165	150	-	-	1,861	1,658	89.1	89
경북	381	342	1,194	1,097	840	687	22	18	2,437	2,144	88.0	91
경남	721	702	1,996	1,698	900	713	3	3	3,620	3,116	86.1	121
제주	184	176	522	453	230	167	146	102	1,082	898	83.0	28
계	10,023	8,518	29,319	26,337	12,119	10,074	435	362	51,896	45,291	87.5	2,464
영아	98	96	-	-	-	-	435	362	533	458	85.9	100
유	739	705	4,385	3,866	2,616	1,957	-	-	7,740	6,528	84.3	755
초	3,486	2,523	13,995	12,284	5,087	4,149	-	-	22,568	18,956	84.0	979
중	3,130	2,661	6,834	6,232	2,780	2,490	-	-	12,744	11,383	89.3	336
고	2,570	2,533	4,105	3,955	1,636	1,478	-	-	8,311	7,966	95.8	294

※ 기간: 2024년 4월 ~ 2025년 3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65명이며, 이 중 6세는 249명, 7세는 93명, 8세 이상은 123명으로 나타남

〈표 3·25〉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명)

시도	6세		7세		8세 이상		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37	8	10	2	9	1	56	11
부산	36	11	22	6	21	6	79	23
대구	119	35	41	15	47	27	207	77
인천	3	1	-	-	4	2	7	3
광주	-	-	-	-	-	-	-	-
대전	-	-	2	-	-	-	2	-
울산	-	-	-	-	-	-	-	-
세종	1	-	-	-	2	1	3	1
경기	12	4	3	-	4	2	19	6
강원	1	1	2	-	1	-	4	1
충북	-	-	-	-	1	-	1	-
충남	1	1	1	-	3	-	5	1
전북	1	-	2	1	11	3	14	4
전남	1	1	1	-	7	5	9	6
경북	2	1	-	-	1	-	3	1
경남	35	6	7	5	12	1	54	12
제주	-	-	2	1	-	-	2	1
계	249	69	93	30	123	48	465	147

※ 2025. 6. 1. 기준

- 2025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32.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23.9%로 나타남

〈표 3·26〉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 명, %)

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계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타	
서울	12	4	21	13	3	3	56
부산	-	10	3	1	63	2	79
대구	-	26	51	111	19	-	207
인천	-	2	3	1	-	1	7
광주	-	-	-	-	-	-	-
대전	-	-	1	-	-	1	2
울산	-	-	-	-	-	-	-
세종	-	1	-	1	-	1	3
경기	-	1	9	2	4	3	19
강원	-	2	-	1	1	-	4
충북	-	1	-	-	-	-	1
충남	-	3	2	-	-	-	5
전북	-	-	4	1	9	-	14
전남	-	2	1	1	1	4	9
경북	-	-	2	-	-	1	3
경남	-	18	8	18	9	1	54
제주	-	-	-	-	2	-	2
계	12 (2.6)	70 (15.0)	105 (22.6)	150 (32.3)	111 (23.9)	17 (3.6)	465 (100.0)

※ 2025. 6. 1.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특수학교 31,027명 중 29,861명(96.2%), 특수학급 69,908명 중 43,578명(62.3%), 일반학급 19,532명 중 7,651명(39.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268명 중 109명(40.7%)임

〈표 3·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장애유형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체장애	552	735	882	8	2,177
뇌병변장애	3,407	2,449	1,316	88	7,260
시각장애	875	181	350	1	1,407
청각장애	500	646	1,429	7	2,582
언어장애	344	2,021	505	-	2,870
지적장애	14,039	23,017	1,927	3	38,986
자폐성장애	10,065	14,413	1,135	1	25,614
정신장애	27	14	-	-	41
신장장애	3	5	25	1	34
심장장애	2	13	15	-	30
호흡기장애	2	2	13	-	17
간장애	-	5	12	-	17
안면장애	-	2	1	-	3
장루·요루장애	2	10	29	-	41
뇌전증장애	43	65	12	-	120
계	29,861 (96.2)	43,578 (62.3)	7,651 (39.2)	109 (40.7)	81,199 (67.3)

- 전국에 194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위원은 1,797명,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는 1,840회임

〈표 3·2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단위: 개, 명, 회)

시도	위원회 수	구성원									운영실적 ('24. 3. ~ '25. 2.)
		교장 (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계	
서울	12	16	40	2	26	-	10	-	9	103	156
부산	6	12	14	6	16	3	2	4	9	66	44
대구	6	10	8	5	19	3	5	1	1	52	68
인천	6	13	16	-	9	-	6	3	9	56	76
광주	3	3	3	4	14	2	3	-	2	31	94
대전	3	6	8	1	17	1	1	-	3	37	35
울산	3	3	7	1	9	-	5	1	5	31	47
세종	1	2	2	2	6	-	1	-	-	13	15
경기	26	67	64	4	46	2	25	5	19	232	308
강원	18	26	61	3	24	-	14	2	6	136	141
충북	11	14	23	6	27	2	12	10	15	109	123
충남	15	25	44	8	48	3	13	7	8	156	134
전북	15	28	60	3	29	8	15	5	16	164	124
전남	24	36	108	7	19	4	14	6	24	218	129
경북	23	30	64	10	31	12	19	5	19	190	176
경남	19	27	46	5	34	10	18	8	18	166	132
제주	3	8	7	1	8	2	4	3	4	37	38
계	194	326	575	68	382	52	167	60	167	1,797	1,840

■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과 조기교육 연계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병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정보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초등교육(초등)/표시과목(중등)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유치원/초등):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 성적 기준: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 2021. 6. 23. 이후, 교원자격검정 대상자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시 교사 자격 취득 불가
- 2025년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사범대, 일반대의 교육과)는 36개교이고 승인 인원은 1,392명이며,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 교육대학원은 14개교임
 - ※ 교육대학원은 총정원으로 관리되어 연도별 교원양성정원이 유동적이므로 승인인원 산출 불가

〈표 3·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5년도 입학정원	2025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국립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남대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창원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사립	한국교원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9	9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소계	7	9	183	183	
	가야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6	26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19	19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19	19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건양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50	5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신경주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학과	4	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광주여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전공	22	22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전공	18	18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5년도 입학정원	2025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극동대	교육과	특수교육학과 초등특수교육전공	24	2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남부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국대 (죽전)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직과정	재활상담학과	33	3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한의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대전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백석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신라대	교직과정	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20	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유원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5년도 입학정원	2025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용인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34	3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원광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7	1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부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소계	29		42	1,257	1,209	
계	36		51	1,440	1,392	

※ 경주대학교가 서라벌대학교와 신경주대학교로 통합('24.3.1.)됨에 따라 특수체육교육학과 폐지 및 2023학년도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입학생에 한해 학사 운영

※ 한국국제대학교 폐교('23.8.31.)에 따라 특수교육전공 재적생('23년 승인정원 40명)에 대해 인근 교원양성대학에 특별편입학 추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5호 관련)

- 2025년 승인정원 기준, 14개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0〉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2025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국립공주대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서울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창원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소계	5	8	
사립	대구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아주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영남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설립별	대학원명	2025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용인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우석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이화여대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조선대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소계	9	11	
계	14	19	

※ 출처: 2025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2025년 승인정원 기준, 9개의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1〉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교육대학명	형태	수업형태	2025학년도 운영전공	비고
국립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	재교육과정
	대구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계절·야간	초등특수교육, 뇌기반 특수체육	재교육과정
		전문대학원	주간	특수통합 유아교육	재교육과정
	경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계절·야간	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광주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주간	교육심리상담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춘천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계절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공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주간·계절	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전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진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청주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주간	심리상담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계	9			10	

※ 출처: 2025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대학원의 종류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규정

- 2025년 승인정원 기준, 19개의 국·사립대학교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2〉 국·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2025학년도 운영전공	비고
국립	국립공주대	유아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특수직업교육전공	
	국립한국교통대	특수교육 ABA전공	
	전남대	특수교육전공	
	한국교원대	특수교육전공	
	한경국립대	특수교육전공	
소계	5	8	
사립	가톨릭대	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직업특수교육전공	
	강남대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고신대	특수교육전공	
	광운대	특수교육	
	광주여대	특수교육전공	
	나사렛대	특수교육학	
	남부대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직업재활교육	
		장애인평생교육	
	단국대(죽전)	학습장애·난독증교육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지적학습발달장애교육	
		감각운동발달장애교육	
	대구대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지적학습발달장애교육	
		감각운동발달장애교육	
	동의대	유아특수교육	
	명지대	장애통합보육교육전공	
	순천향대	특수체육교육전공	
	위덕대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인제대	특수교육전공	
	중부대	특수교육전공	
소계	15	26	
계	20	34	

※ 출처: 2025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음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현장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예비교원의 장애유형별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양성체제 안착 지원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 미래사회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특수교사 양성 및 지원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강화

(2)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직 연수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직속기관인 시도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 특수교육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육 교사 자격연수(유·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가 98.9%, 특수학급이 98.5%, 전체 98.7%로 나타남

〈표 3·33〉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자격 소지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특수학급				합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서울	1,604	1,598	6	99.6	1,838	1,831	7	99.6	3,442	3,429	13	99.6
부산	772	758	14	98.2	745	742	3	99.6	1,517	1,500	17	98.9
대구	736	731	5	99.3	548	548	-	100.0	1,284	1,279	5	99.6
인천	721	721	-	100.0	999	999	-	100.0	1,720	1,720	-	100.0
광주	515	515	-	100.0	342	342	-	100.0	857	857	-	100.0
대전	429	425	4	99.1	442	442	-	100.0	871	867	4	99.5
울산	306	305	1	99.7	401	387	14	96.5	707	692	15	97.9
세종	114	105	9	92.1	187	182	5	97.3	301	287	14	95.3
경기	2,472	2,442	30	98.8	4,813	4,679	134	97.2	7,285	7,121	164	97.7
강원	385	379	6	98.4	441	434	7	98.4	826	813	13	98.4
충북	601	581	20	96.7	663	641	22	96.7	1,264	1,222	42	96.7
충남	638	625	13	98.0	922	906	16	98.3	1,560	1,531	29	98.1
전북	495	486	9	98.2	604	603	1	99.8	1,099	1,089	10	99.1
전남	512	512	-	100.0	750	743	7	99.1	1,262	1,255	7	99.4
경북	606	606	-	100.0	850	839	11	98.7	1,456	1,445	11	99.2
경남	894	888	6	99.3	1,117	1,114	3	99.7	2,011	2,002	9	99.6
제주	231	225	6	97.4	249	234	15	94.0	480	459	21	95.6
계	12,031	11,902	129	98.9	15,911	15,666	245	98.5	27,942	27,568	374	98.7

* 특수학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는 제외

- 2025년 현재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1,596개로서 18,58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약 11억 원임

〈표 3·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천 원)

시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 수	지원 예산
서울	21	501	21,674
부산	131	1,037	105,530
대구	142	925	92,000
인천	112	1,215	92,407
광주	96	751	41,238
대전	51	1,381	42,916
울산	23	213	17,440
세종	34	396	11,900
경기	399	4,985	162,094
강원	7	80	20,000
충북	84	871	63,689
충남	152	1,274	104,063
전북	56	534	50,435
전남	35	665	67,000
경북	92	1,599	109,318
경남	125	1,696	79,657
제주	36	461	18,600
계	1,596	18,584	1,099,961

■ 향후 과제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 과정 질 제고 및 연수과정 다양화
 -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과정, 장애학생 행동중재 역량 강화 과정, 통합교육 역량 강화 과정,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등
- 특수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 제공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마음건강 회복 연수 확대

8)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40,158천 원, 초등학교 35,178천 원, 중학교 34,796천 원, 고등학교 40,270천 원임
- 신설 특수학급의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66,419천 원, 초등학교 62,255천 원, 중학교 63,263천 원, 고등학교 66,296천 원임

〈표 3·3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천 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30,387	50,387	25,361	65,361	28,797	68,797	31,200	71,200
부산	48,019	75,219	40,858	70,879	43,655	78,211	57,437	-
대구	27,370	59,290	29,976	53,726	33,383	57,133	39,532	63,282
인천	52,080	86,681	37,418	78,998	35,950	78,236	38,033	76,808
광주	37,558	87,558	36,955	86,955	35,791	85,791	43,323	93,323
대전	49,051	69,051	23,529	43,529	23,780	43,780	26,939	46,939
울산	34,351	74,611	33,005	58,791	34,922	73,671	36,377	79,247
세종	47,240	57,240	48,391	58,391	49,444	59,444	59,463	69,463
경기	43,516	73,516	34,365	64,365	29,094	59,094	29,885	59,885
강원	23,410	46,223	24,890	47,830	27,550	51,460	27,762	53,114
충북	20,074	50,313	19,418	50,720	20,253	50,537	32,169	51,008
충남	50,402	66,746	45,161	53,311	47,092	56,666	50,137	65,803
전북	49,104	71,104	39,076	61,076	39,608	61,608	40,565	62,565
전남	41,201	59,174	45,417	66,852	38,261	55,686	42,839	63,830
경북	42,080	58,697	58,882	64,658	51,120	57,015	55,386	68,404
경남	45,699	70,699	28,479	53,479	30,540	55,540	38,990	63,990
제주	41,146	72,613	26,850	79,408	22,294	82,810	34,545	71,871
평균	40,158	66,419	35,178	62,255	34,796	63,263	40,270	66,296

※ 특수학급 운영비: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 지원인력(인건비 제외),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4조 282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4.1%의 비율을 나타냄

〈표 3·36〉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비율
				전체(A)	전체(A) 중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서울	12,620,352,251	332,155,455	139,260,152	18,498,544	9,466,000	1,577,474	585,457	658,327	492,735,409	3.9
부산	5,335,056,781	156,962,664	82,761,705	28,518,808	4,397,160	3,277,050	147,238	212,000	271,879,465	5.1
대구	4,274,600,000	120,719,380	57,463,974	9,678,184	-	-	464,186	-	188,325,724	4.4
인천	5,514,358,078	135,908,714	122,699,618	10,094,401	2,510,047	1,383,312	286,693	2,843,172	273,215,910	5.0
광주	2,875,206,517	58,798,680	41,304,001	5,188,693	-	1,466,917	306,120	2,270,820	109,335,231	3.8
대전	2,797,084,015	70,295,174	51,304,111	12,815,408	508,421	1,143,576	206,186	1,184,317	136,948,772	4.9
울산	2,372,741,626	57,287,891	35,195,495	4,636,186	45,500	460,000	30,065	924,616	98,534,253	4.2
세종	1,183,421,936	35,823,931	9,369,830	5,723,274	119,600	475,907	70,332	2,127,097	53,590,371	4.5
경기	23,063,989,329	655,578,154	212,471,140	25,220,584	18,122,607	6,106,394	1,430,015	2,889,908	903,696,195	3.9
강원	4,434,925,000	65,610,000	35,168,778	36,565,550	7,711,141	52,295	443,519	852,445	138,692,587	3.1
충북	3,952,687,606	93,422,350	27,545,850	17,422,785	529,790	1,541,842	457,874	223,410	140,614,111	3.6
충남	4,983,457,555	162,247,176	62,985,594	19,711,198	1,139,633	2,874,100	304,732	1,263,111	249,385,911	5.0
전북	4,723,880,381	100,749,127	72,642,486	9,687,874	5,443,900	1,505,517	413,667	769,755	185,768,426	3.9
전남	5,200,000,000	96,274,821	54,800,405	6,263,842	2,865,697	688,359	869,775	3,169,964	162,067,166	3.1
경북	5,934,130,435	132,814,419	76,920,593	30,017,761	4,787,873	357,620	423,429	2,325,004	242,858,826	4.1
경남	6,803,715,229	160,509,208	105,361,087	33,727,932	981,118	1,667,382	705,806	1,846,500	303,817,915	4.5
제주	1,632,720,518	39,281,187	25,161,244	7,132,668	855,000	1,437,257	1,249,867	2,561,164	76,823,387	4.7
계	97,702,327,257	2,474,438,331	1,212,416,063	280,903,692	59,483,487	26,015,002	8,394,961	26,121,610	4,028,289,659	4.1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2025년도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 4조 282억, 국립특수학교 676억, 국립학교 특수학급 45억을 합하여 총 4조 1,004억 원임

〈표 3·37〉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단위: 천 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시도	2,474,438,331	1,212,416,063	280,903,692	26,015,002	8,394,961	26,121,610	4,028,289,659
국립	특수학교	37,260,651	12,800,958	14,755,270	2,600,819	178,160	67,602,458
	특수학급	2,222,613	1,993,220	24,582	7,800	7,770	4,548,181
계	2,513,921,595	1,227,210,241	295,683,544	28,623,621	8,580,891	26,420,406	4,100,440,298

- 2025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3,962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66천 원 증가함

〈표 3·3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 원)

연도	특수교육 예산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9	2,984,447,992	92,958	32,105
2020	3,134,043,528	95,420	32,845
2021	3,188,731,273	98,154	32,487
2022	3,305,625,487	103,695	31,878
2023	3,679,244,503	109,703	33,538
2024	3,733,749,357	115,610	32,296
2025	4,100,440,298	120,735	33,962

- 2025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4조 1,209억 원으로 2024년도에 비해 약 3,571억 원 증가된 금액이며, 2025년 6월 기준 교육예산의 4.4%를 차지함

〈표 3·39〉 연도별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

(단위: 천 원, %)

연도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2018	63,872,934,485	2,783,412,270	4.4
2019	70,743,520,000	3,039,704,368	4.3
2020	72,097,627,000	3,174,800,528	4.4
2021	70,429,061,000	3,248,756,273	4.6
2022	83,362,762,000	3,343,304,487	4.0
2023	92,102,436,000	3,726,768,503	4.0
2024	86,045,510,000	3,763,794,357	4.4
2025	94,661,997,000	4,120,928,298	4.4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고등·평생지원특별회계 예산

** 시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 향후 과제

-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특수교육 정책 추진 및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 유치원 801명, 초등학교 817명, 중학교 357명, 고등학교 157명으로 총 2,132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음

〈표 3·4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0	36	24	15	125
부산	90	35	14	5	144
대구	41	39	16	3	99
인천	47	2	6	5	60
광주	24	4	1	1	30
대전	4	3	1	3	11
울산	34	27	5	4	70
세종	1	-	1	1	3
경기	70	220	59	14	363
강원	28	36	22	8	94
충북	29	16	6	10	61
충남	49	56	17	12	134
전북	51	55	19	14	139
전남	62	45	40	18	165
경북	73	115	70	24	282
경남	107	84	50	20	261
제주	41	44	6	-	91
계	801	817	357	157	2,132

■ 향후 과제

- 통합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통합교육 협력교수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순회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를 확대하여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추진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과정 조정 및 통합교육 상담 등 지원 강화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 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 (교육부 고시 제2025-10호, 2025.3.4. [별표 2])
 -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57,916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통합학교 관리자 교(원)장 11,657명이 특수(통합)교육 연수 과정에 참여함
-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 및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델 확산을 위해 ‘정다운학교’ 28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3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표 3·41〉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3~15시간 미만	15~29시간	30~59시간	60시간 이상	계
서울	4,974	1,013	573	663	7,223
부산	791	1,300	969	1,116	4,176
대구	430	1,184	1,020	462	3,096
인천	1,218	1,004	849	727	3,798
광주	305	377	480	324	1,486
대전	31	79	125	1,709	1,944
울산	268	562	481	438	1,749
세종	322	106	95	122	645
경기	6,415	2,581	2,176	1,673	12,845
강원	962	363	361	264	1,950
충북	758	679	403	508	2,348
충남	1,356	562	977	381	3,276
전북	593	362	911	481	2,347
전남	872	338	578	318	2,106
경북	1,424	829	624	604	3,481
경남	1,521	1,074	756	810	4,161
제주	598	242	300	145	1,285
계	22,838	12,655	11,678	10,745	57,916

※ 2024학년도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표 3·42〉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교(원)장 수	전체 통합학교 교(원)장 수
서울	1,294	1,345
부산	711	739
대구	535	561
인천	630	667
광주	315	319
대전	314	332
울산	265	271
세종	124	139
경기	2,584	2,669
강원	511	511
충북	473	514
충남	638	686
전북	674	680
전남	627	661
경북	861	882
경남	891	980
제주	210	210
계	11,657	12,166

※ 2024학년도 통합학교 관리자 기준

〈표 3·43〉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8	7	7	-	22
부산	1	4(1)	9	1	15(1)
대구	4	13	6	3	26
인천	3	2(1)	3(1)	-	8(2)
광주	2	2	-	-	4
대전	2	1	2	-	5
울산	4	12(1)	3	1	20(1)
세종	5	11	2	3	21
경기	18	14	13	4	49
강원	5	4(1)	2	1	12(1)
충북	1	6	3	2	12
충남	19	4	-	2	25
전북	5(1)	18(1)	7	2	32(2)
전남	2	3(1)	1	-	6(1)
경북	9(1)	5(1)	3	3(1)	20(3)
경남	1(1)	1(1)	-	-	2(2)
제주	2	1	2	-	5
계	91(3)	108(8)	63(1)	22(1)	284(13)

※ 괄호 안의 학교 수는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수

■ 향후 과제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예비교원 통합·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선택과목 운영 및 복수전공 확대 권고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정다운학교 운영 및 컨설팅 확대,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 추진 및 통합교육연구회 조직·운영 활성화
-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 통합학교에 학교 장애인식 검사 및 연계 프로그램 활용 확대
-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배치 확대 및 지원 자료 개발·보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5항

3)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방송(유아: 애니메이션, 초등: ‘대한민국 1교시’, 중등: 드라마)을 민관 협력으로 제작·보급하여 일반 국민의 장애인식개선 및 학교 현장의 장애이해교육을 지원함
 - － 2024년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18,580개교로, 전체의 95%임

〈표 3·44〉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시도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율
서울	2,048	1,830	89.4
부산	970	905	93.3
대구	761	742	97.5
인천	914	834	91.2
광주	567	567	100.0
대전	539	538	99.8
울산	408	407	99.8
세종	166	159	95.8
경기	4,458	4,241	95.1
강원	962	961	99.9
충북	765	761	99.5
충남	1,167	1,096	97.5
전북	1,186	1,184	99.8
전남	1,282	1,163	90.7
경북	1,484	1,318	88.8
경남	1,569	1,567	99.9
제주	307	307	100.0
계	19,553	18,580	95.0

※ 2024. 12. 31. 기준

■ 향후과제

- 학교교육활동과 연계한 학교급별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보급 추진
- 공모전, 백일장 등 참여형 장애이해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관련 법규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3항, 제4항)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98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내외부 위원 2,781명을 구성함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총 5,052건 지원을 실시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접수를 위한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연계하여 운영함

〈표 3·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단위: 개, 명)

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수
서울	11	202
부산	6	83
대구	6	140
인천	6	77
광주	3	54
대전	3	43
울산	3	44
세종	2	28
경기	29	417
강원	18	209
충북	11	183
충남	15	206
전북	15	187
전남	23	337
경북	23	301
경남	21	238
제주	3	32
계	198	2,781

※ 인권지원단 구성(최소 8명 이상): 센터장(담당과장) 1명, 장학사(연구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1명, 상담전문인력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표 3·46〉 2024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

(단위: 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모니터링 학교 수	151	129	259	545	587	600	522	272	498	537	495	457	5,052

- 2025년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강좌는 194개임
- 2025년 일반교육교원 대상 전체 연수과정 7,537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371개임

〈표 3·47〉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 수	12	1	8	15	3	17	1	1	25	11	7	19	14	22	18	16	4	194

〈표 3·48〉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일반교육교원 대상 연수과정 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연수과정 수
서울	658	30
부산	735	16
대구	928	13
인천	285	10
광주	306	18
대전	438	17
울산	390	17
세종	196	17
경기	682	31
강원	149	9
충북	152	26
충남	387	21
전북	579	27
전남	34	22
경북	344	49
경남	1,014	43
제주	260	5
계	7,537	371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온라인·대면)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전공과) 총 78,431명 중 22,096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함
 - － 주요 결과로서 학교폭력 영역은 따돌림 9.9%, 언어폭력 8.0%, 신체폭력 5.7%, 강요/괴롭힘 2.8%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습권리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1.6%가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하였고, 학교생활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2.4%가 ‘착·탈의 시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 대면 조사의 경우, 후속 조치 지원에 동의하여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100명임
 - － 대면 조사 후속 조치 결과 51건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학생 39건, 장애학생 5건, 기타 4건, 교사 2건, 지원인력 1건임
 -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체 54건 중 상담 30건, 물리적 분리 13건, 교육 프로그램 지원 8건, 지원인력 지원 3건이었으며, 가해자 조치는 전체 53건 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20건, 상담 9건, 사과 9건, 물리적 분리 7건, 특별교육 4건, 기타 4건으로 나타남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구성원(교직원, 학생 등)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및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주요 현황 진단·분석 및 예방·대응 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4월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1,924명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25년 33교로, 44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 건강장애학생 수는 332명임

〈표 3·49〉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명)

시도	병원학교명	월평균 이용 학생 수	담당 인력 수
서울(10)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원학교	10	의료사회복지사 1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병원학교	22	의료사회복지사 1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학교	13	특수교사 1, 일반교사 1, 예술치료사 1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44	의료사회복지사 1
	서울대학교 통합케어센터 어린이병원학교	38	평생교육사 1, 일반교사 1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10	의료사회복지사 1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13	의료사회복지사 1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42	일반교사 1, 심리상담사 1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원학교	13	의료사회복지사 1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2	일반교사 1
부산(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대구(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대동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경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13	특수교사 1
인천(1)	인하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광주(1)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학마을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대전(1)	충남대학교병원 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경기(5)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의료사회복지사 1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8	특수교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학교	7	특수교사 2
	파주시티재활요양병원 병원학교	7	특수교사 2
	한서중앙병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2
강원(1)	강릉아산병원 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충북(1)	충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충남(2)	국립공주병원 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단국대학교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전북(1)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한누리병원학교	11	일반교사 1
전남(2)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여미사랑병원학교	22	특수교사 2
경남(2)	경상대학교병원어린이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9	특수교사 2
제주(1)	제주대학교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계	33	332	44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서 원격수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등은 2,239명임

〈표 3·50〉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학급, 명, 일)

원격수업시스템 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개별학생 연평균 이용일 (‘24. 6. 1.~’25. 5. 31.)
			건강 장애	기타	계		
꿀맛무지개교실	14	14	272	77	349	267	132
꿈사랑학교	34	24	386	142	528	601	279
스쿨포유	35	36	965	397	1,362	1,479	152
계	83	74	1,623	616	2,239	-	-

■ 향후 과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 건강장애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및 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 간 협력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4월 기준 특수학교에 설치된 311개 순회·파견학급에서 316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076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922명, 시설 117명, 병원 37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35명, 초등학교 447명, 중학교 232명, 고등학교 262명임

〈표 3·51〉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급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겸임	922	117	37	-	1,076	135	447	232	262	1,076	311	316

- 2025년 4월 기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218개의 순회·파견학급에서 226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606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460명, 시설 117명, 병원 19명, 일반학교 10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 49명,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142명, 고등학교 152명임

〈표 3·52〉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급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460	117	19	10	606	49	263	142	152	606	218	226

- 2025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1,730명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총 2,621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416명, 시설 51명, 병원 37명, 일반학교 2,117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936명, 초등학교 1,000명, 중학교 450명, 고등학교 235명임

〈표 3·5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급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교육지원센터	416	51	37	2,117	2,621	936	1,000	450	235	2,621	1,730*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비정규교사 104명 포함

■ 향후 과제

-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전담인력 확대 및 순회교육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 배치환경(재택, 일반학급)과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순회교육 운영 도움자료 개발·보급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국 1,355개 기관에서 1,127개 기관과 연계하여 3,316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0,70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1,041개 기관에서 773개 기관과 연계하여 1,8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7,06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3·5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현황

(단위: 기관, 개, 명)

시도	문화예술				체육			
	운영 기관 수	연계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운영 기관 수	연계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서울	59	88	304	14,299	33	38	112	2,295
부산	147	49	378	10,383	94	12	124	3,080
대구	125	68	205	5,021	80	39	167	4,620
인천	86	42	221	4,147	28	21	103	2,008
광주	9	39	76	3,480	8	16	46	1,864
대전	28	13	42	3,774	25	2	25	766
울산	21	34	51	2,958	5	6	9	359
세종	9	13	106	1,150	11	20	63	627
경기	358	235	443	9,362	243	170	319	6,201
강원	45	61	111	3,216	52	57	80	1,299
충북	14	27	46	1,653	11	14	20	701
충남	37	161	462	13,983	24	72	174	2,417
전북	219	140	386	3,897	185	154	274	2,875
전남	57	47	181	3,769	69	40	126	2,063
경북	73	80	155	6,422	106	55	95	3,435
경남	46	14	111	2,314	9	9	25	1,084
제주	22	16	38	878	58	48	74	1,372
계	1,355	1,127	3,316	90,706	1,041	773	1,836	37,066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강화
- 관계기관 협력 확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건강 증진 도모
- 장애학생 문화체육예술 분야 인재 발굴·양성 및 우수사례 확산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지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33교) 내실화 지원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44교)’ 운영

〈표 3·55〉 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단위: 교, 명)

시도	예술·체육분야 중점 교육과정		직업교육 중점학교		초·중·고 진로 연계교육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서울	2	28	-	-	28	3,725
부산	-	-	1	81	13	1,753
대구	1	198	1	168	6	472
인천	4	352	-	-	7	1,240
광주	1	11	1	25	3	378
대전	-	-	-	-	-	-
울산	2	98	3	207	4	154
세종	1	112	1	30	1	105
경기	7	730	2	93	21	1,991
강원	-	-	1	47	2	106
충북	4	252	3	194	6	985
충남	4	592	11	587	9	967
전북	10	1,052	2	51	4	226
전남	5	278	5	211	9	930
경북	3	241	2	92	5	207
경남	3	137	1	163	4	519
제주	2	81	-	-	3	610
계	49	4,162	34	1,949	125	14,368

<표 3·5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개관 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2010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청각·지체· 지적장애·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사무용지, 세탁, 홍보판촉물제작 등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천연비누, 제과·제빵, 천연염색 등
2011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이료
	대전해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공예, 운동화 전문세탁 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천연비누, 조립, 임가공, 직업체험 등
2012	꽃등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제과·제빵 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전기회로접속장치, 조명장치, 휴게음식점 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포장·충전, 세탁 등
	속초천혜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도자기, 원예, 공예 등
2013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목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비누, 공예품, 원예 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향초 등
	울산해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 부품제조, 세차, 신발세탁 등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양파·대추즙, 직업체험 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갑, 핸드페인팅, 직업체험 등
	태백상온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스팀세차, 스팀세차, 클린서비스, 임가공업 등
	부천해림학교*	경기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가공, 소독, 직업체험 등
2014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 출판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 임가공업 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면장갑, 가구, 임가공 등
2015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2016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직업체험 등
2017	한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버섯재배·유통, 임가공업, 직업체험 등
2018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건조식품, 위생용품 제조
	부산해마루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농업생산물, 농산물 건조식품, 직업체험 등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웰빙건강음료 제조·판매, 외주사업장 등
2019	상화학교*	경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2023	청주혜원학교*	충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예산꿈빛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연수세트, 캠핑용 나무제품 등
	대전해든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탁, 음식료품 등
	아름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커피전문점)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25년 현재 교육부 지정 29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5교가 운영 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5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지정연도 및 운영학교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상암고	경복고	-	(문현고) (서울문화고)	(경기고)	-	-	관악고	-	-	-	-	-	-	-	3(3)
부산	-	-	부산전자 공업고	-	-	-	-	-	-	-	-	-	-	-	-	1
대구	대구과학 기술고	-	-	-	-	대구농업 미리소드고	-	-	-	-	-	-	-	-	-	2
인천	-	-	강남영성 미디어고	-	-	백문여고	-	인화여고	-	-	-	(계산 공업고)	-	-	-	3(1)
광주	광주전자 공업고	-	-	-	-	-	-	-	-	-	-	-	-	-	-	1
대전	-	동대전고	-	-	-	-	-	-	-	-	-	-	(김마중 대전전자 디자인고)	-	-	1(2)
울산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강원	-	-	영서고	-	-	-	-	-	-	-	-	-	-	-	-	1
충북	제천제일고	-	청주 공업고	-	-	-	충북산업 과학고	-	-	-	-	-	-	-	-	3
충남	공주생명 과학고	금산산업고 국영농공고	당진 정보고 서천고	(온양문화고) (천안공업고)	(태안고)	주산 산업고 (부여 정보고)	-	(청양고)	(서산 중앙고)	-	-	-	-	-	-	6(6)
전북	-	-	-	-	-	-	이리고	-	-	-	-	(전북 유니텍고)	-	-	-	1(1)
전남	목포 공업고	-	전남 기술 과학고	-	-	-	순천 공업고	-	-	-	-	-	-	-	-	3
경북	-	김천생명 과학고	-	-	-	-	-	(인동고)	-	-	-	-	-	-	-	1(1)
경남	-	김해생명 과학고	-	-	-	-	-	-	-	-	-	-	-	-	-	1
제주	제주고	함덕고	-	-	-	-	-	-	-	-	-	(서귀포산 업과학고)	-	-	-	2(1)
계	7	7	7	(4)	(2)	3(1)	3	2(2)	(1)	-	(1)	(2)	(2)	-	-	29(15)

※ ()안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련 기능 수행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고용 관계부처 연계 강화
 -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기 제공 및 체계적 진로·직업교육 이력 관리를 위해 구축한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2025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036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84명으로 취업률은 10.2%임

〈표 3·58〉 2025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제과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소계	
서울	304	230	-	-	1	-	-	2	-	-	-	-	2	-	2	7	9.5
부산	129	72	-	1	-	-	-	-	-	-	-	-	-	-	1	2	3.5
대구	159	113	-	1	-	-	3	-	-	-	4	-	-	-	4	12	26.1
인천	115	46	-	1	-	-	2	-	-	-	-	-	-	-	3	6	8.7
광주	92	43	-	8	-	-	-	-	-	-	-	-	-	-	2	10	20.4
대전	64	40	-	-	-	-	-	-	-	-	-	-	1	-	-	1	4.2
울산	46	36	-	-	-	-	-	-	-	-	-	-	-	-	-	-	-
세종	11	9	-	-	-	-	-	-	-	-	-	-	-	-	-	-	-
경기	397	146	-	9	-	-	2	-	-	1	-	11	1	1	8	33	13.1
강원	62	45	-	-	-	-	-	-	-	-	-	-	-	-	-	-	-
충북	92	66	-	-	-	-	1	-	-	1	-	2	-	-	1	5	19.2
충남	93	68	-	-	-	-	-	-	-	-	-	-	-	-	-	-	-
전북	81	51	-	-	-	-	-	-	-	-	-	-	-	-	-	-	-
전남	93	36	-	-	-	-	-	2	-	-	-	1	-	-	1	4	7.0
경북	113	92	-	-	-	-	-	-	-	-	-	-	-	-	-	-	-
경남	151	110	-	1	-	-	-	-	-	-	-	-	-	-	-	1	2.4
제주	34	13	-	-	-	-	-	-	-	-	-	2	-	-	1	3	14.3
계	2,036	1,216	-	21	1	-	8	4	-	2	4	16	4	1	23	84	10.2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5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425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494명으로 취업률은 32.7%임

〈표 3·59〉 2025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 ·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 · 제과 제빵	의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466	153	11	7	1	-	7	-	4	18	30	10	12	7	12	119	38.0
부산	182	111	1	3	-	-	2	-	-	1	2	-	4	6	-	19	26.8
대구	98	77	-	-	-	-	-	-	-	-	-	1	1	-	-	2	9.5
인천	225	136	1	2	-	-	-	-	-	2	2	1	-	-	7	15	16.9
광주	83	65	-	1	-	-	-	-	-	-	-	1	-	-	2	4	22.2
대전	111	84	-	-	-	-	1	-	-	-	1	2	-	-	-	4	14.8
울산	119	94	-	1	-	-	-	-	-	-	-	-	-	-	1	2	8.0
세종	28	18	-	-	-	-	-	-	-	1	-	-	-	2	1	4	40.0
경기	942	464	8	44	-	1	39	-	3	9	38	9	14	2	22	189	39.5
강원	83	46	-	1	-	-	1	-	-	-	4	-	-	-	2	8	21.6
충북	122	61	3	4	-	-	-	-	-	7	1	2	5	-	1	23	37.7
충남	197	110	-	8	-	-	2	-	-	7	3	-	7	1	6	34	39.1
전북	119	75	-	1	2	-	4	-	-	-	-	-	1	-	1	9	20.5
전남	140	94	-	1	1	-	1	-	1	3	2	1	1	-	1	12	26.1
경북	183	134	2	1	-	1	-	-	1	5	1	-	2	-	-	13	26.5
경남	260	154	1	8	-	-	5	-	-	7	3	-	6	1	3	34	32.1
제주	67	40	-	-	-	-	-	-	-	-	1	-	-	1	1	3	11.1
계	3,425	1,916	27	82	4	2	62	-	9	60	88	27	53	20	60	494	32.7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5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080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49명으로 취업률은 13.7%임

〈표 3·60〉 2025년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제과제빵	이로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소계	
서울	133	90	-	-	-	-	-	-	-	-	2	-	2	1	2	7	16.3
부산	82	65	-	2	-	-	-	-	-	-	-	-	-	-	-	2	11.8
대구	67	50	-	-	-	1	-	-	-	-	-	-	1	-	-	2	11.8
인천	65	43	-	-	-	-	-	-	-	-	1	-	-	-	-	1	4.5
광주	44	29	-	-	1	-	-	-	-	-	-	-	-	-	1	2	13.3
대전	32	20	-	1	-	1	-	-	-	-	1	-	-	-	-	3	25.0
울산	31	19	-	-	-	-	-	-	-	-	-	-	-	-	1	1	8.3
세종	9	7	-	-	-	-	-	-	-	-	-	-	-	-	-	-	-
경기	245	164	-	-	-	-	4	-	-	1	-	-	1	-	3	9	11.1
강원	43	28	-	-	-	1	-	-	-	-	-	-	-	-	2	3	20.0
충북	54	33	-	3	-	-	1	-	-	-	-	1	-	-	-	5	23.8
충남	30	21	-	-	-	-	-	-	-	-	-	-	-	-	-	-	-
전북	47	24	-	-	-	-	-	-	1	-	-	-	-	-	-	1	4.3
전남	19	13	-	-	-	-	-	-	-	-	-	-	-	-	-	-	-
경북	77	48	-	1	-	-	1	-	-	-	1	-	-	-	-	3	10.3
경남	77	48	-	3	-	1	-	-	-	-	4	-	1	-	1	10	34.5
제주	25	20	-	-	-	-	-	-	-	-	-	-	-	-	-	-	-
계	1,080	722	-	10	1	4	6	-	1	1	9	1	5	1	10	49	13.7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5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157명 중 1,081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51.0%임

〈표 3·61〉 2025년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제과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소계	
서울	251	5	1	7	1	-	1	18	-	2	20	9	5	1	16	81	32.9
부산	116	8	3	13	-	3	9	-	6	5	3	11	3	5	2	63	58.3
대구	182	3	14	38	1	-	1	2	-	32	9	8	4	-	6	115	64.2
인천	152	2	4	23	-	-	-	7	1	8	25	1	2	1	4	76	50.7
광주	64	5	-	8	-	-	-	3	-	-	-	-	-	-	10	21	35.6
대전	121	6	5	8	1	2	1	5	1	3	3	4	1	-	10	44	38.3
울산	99	-	1	5	1	-	3	-	1	8	9	14	3	-	9	54	54.5
세종	11	-	1	-	-	-	-	-	-	-	1	1	2	-	-	5	45.5
경기	323	2	8	74	1	-	16	-	5	23	32	21	9	4	33	226	70.4
강원	78	-	3	6	-	-	1	5	-	5	6	5	3	2	8	44	56.4
충북	115	3	3	10	-	-	9	2	-	12	4	3	-	-	13	56	50.0
충남	97	-	2	20	-	-	3	-	-	7	1	2	8	-	7	50	51.5
전북	83	-	1	8	-	-	5	2	-	6	15	1	1	1	-	40	48.2
전남	132	1	9	8	-	5	5	2	1	12	7	4	8	-	9	70	53.4
경북	174	2	5	19	-	2	3	-	1	18	9	1	12	1	16	87	50.6
경남	132	-	1	7	-	1	4	-	-	8	7	-	1	-	4	33	25.0
제주	27	-	2	-	-	-	3	-	-	6	2	2	-	-	1	16	59.3
계	2,157	37	63	254	5	13	64	46	16	155	153	87	62	15	148	1,081	51.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이수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5년 전국 167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 714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4,755명이 배치되어 있음
- 2025년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일반학교 16교에 전공과 27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159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

〈표 3·6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교	167	714	4,755
일반학교	16	27	159
계	183	741	4,914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재능 발굴 및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지원을 위해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기 제공 및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한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다양화 및 학교 졸업 이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다양화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81,065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63〉 치료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예산
서울	10,404	18,629,250
부산	5,788	11,208,960
대구	5,865	9,266,688
인천	6,756	14,968,949
광주	2,683	3,802,520
대전	2,279	2,717,287
울산	2,169	4,795,833
세종	1,159	1,695,156
경기	13,161	31,924,720
강원	2,708	5,228,000
충북	3,961	6,839,546
충남	4,311	6,204,127
전북	3,956	7,227,047
전남	2,913	6,573,793
경북	5,295	10,767,567
경남	5,919	12,972,879
제주	1,738	3,407,695
계	81,065	158,230,017

-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2025년 4월 기준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사회복무요원 총 15,247명이 배치됨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10,530명으로 특수학교 3,385명, 특수학급 7,085명, 일반학급에 60명이 배치됨
- 사회복무요원은 4,717명으로 특수학교 1,654명, 특수학급 3,041명, 일반학급에 22명이 배치됨

<표 3·6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급				사회 복무 요원	소계	유급				사회 복무 요원	소계	유급				사회 복무 요원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서울	428	20	-	448	358	806	1,011	21	-	1,032	562	1,594	3	-	-	3	5	8	2,408
부산	344	-	-	344	78	422	365	18	-	383	109	492	-	-	-	-	-	-	914
대구	247	-	-	247	128	375	318	-	-	318	149	467	1	-	-	1	-	1	843
인천	276	-	-	276	12	288	606	1	-	607	11	618	-	-	-	-	-	-	906
광주	119	-	-	119	102	221	181	10	-	191	88	279	-	-	-	-	1	1	501
대전	210	-	-	210	55	265	423	-	-	423	132	555	-	-	-	-	-	-	820
울산	140	-	-	140	109	249	368	-	-	368	218	586	1	-	-	1	1	2	837
세종	55	-	-	55	12	67	155	-	-	155	12	167	-	-	-	-	-	-	234
경기	349	-	-	349	347	696	1,070	-	-	1,070	1,166	2,236	-	-	-	-	2	2	2,934
강원	74	3	-	77	64	141	230	58	14	302	2	304	17	-	17	34	-	34	479
충북	205	-	-	205	21	226	264	-	-	264	34	298	-	-	-	-	-	-	524
충남	186	-	-	186	34	220	468	-	-	468	45	513	3	-	-	3	-	3	736
전북	156	-	-	156	14	170	274	-	-	274	80	354	3	-	-	3	8	11	535
전남	121	-	-	121	55	176	224	3	-	227	137	364	8	-	-	8	2	10	550
경북	128	-	-	128	99	227	409	-	-	409	117	526	6	-	-	6	2	8	761
경남	245	-	-	245	129	374	433	-	-	433	163	596	-	-	-	-	-	-	970
제주	79	-	-	79	37	116	161	-	-	161	16	177	1	-	-	1	1	2	295
계	3,362	23	-	3,385	1,654	5,039	6,960	111	14	7,085	3,041	10,126	43	-	17	60	22	82	15,247

- 교통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31,295명 중 15,621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학생은 89,440명 중 36,057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968억 원임

〈표 3·65〉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통학 지원 인력 수	통학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통학 지원 인력 수	통학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서울	4,543	2,176	122	1,049	646	944	111	6,556	10,366	-	-	-	655	1,019	-	568
부산	2,078	1,358	89	363	496	119	159	358	5,568	-	169	736	451	322	-	546
대구	2,066	1,087	-	671	335	275	50	3,010	4,107	30	22	396	317	379	16	746
인천	2,017	1,192	11	105	75	188	66	5,345	6,576	381	95	41	299	576	-	482
광주	1,425	806	10	303	152	207	45	3,516	2,081	32	220	410	312	347	32	1,034
대전	1,146	659	26	125	82	141	124	1,932	2,458	25	131	173	135	282	10	649
울산	820	565	1	203	128	203	28	287	2,315	-	120	498	388	400	-	926
세종	313	188	9	27	19	18	18	293	941	64	34	45	26	38	40	74
경기	5,654	3,085	92	1,596	672	1,112	163	9,806	24,668	-	1,877	5,870	2,950	3,211	-	6,050
강원	1,005	606	5	175	118	153	42	687	2,346	155	86	746	430	323	55	1,470
충북	1,564	989	19	581	293	322	59	4,251	3,594	282	115	962	508	545	158	1,607
충남	1,643	1,270	28	86	58	32	66	4,762	4,649	739	114	146	162	178	246	328
전북	1,245	924	-	46	51	75	50	4,334	3,556	711	77	523	268	387	243	27,075
전남	1,279	846	12	322	281	231	31	854	3,371	471	149	573	373	754	70	953
경북	1,582	809	9	214	171	292	38	1,177	4,978	946	167	1,019	502	589	228	2,547
경남	2,230	1,325	6	400	297	409	51	1,946	6,316	568	171	839	488	720	235	1,440
제주	685	325	9	166	83	63	42	809	1,550	12	65	736	213	185	5	461
계	31,295	18,210	448	6,432	3,957	4,784	1,143	49,923	89,440	4,416	3,612	13,713	8,477	10,255	1,338	46,956

- 2025년 6월 기준 전국 196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867대를 운영하며, 특수학교 재학생 31,027명(순회교육 지원학생 1,076명 제외) 중 18,210명(60.8%)이 이용하고 있음

〈표 3·66〉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대, %)

시도	학생 수			통학버스 수	이용학생 수	이용률
	전체학생 수(A)	순회교육 학생 수(B)	계(A-B)			
서울	4,502	232	4,270	111	2,176	51.0
부산	2,078	64	2,014	54	1,358	67.4
대구	2,056	58	1,998	50	1,087	54.4
인천	2,001	117	1,884	48	1,192	63.3
광주	1,425	90	1,335	45	806	60.4
대전	1,141	29	1,112	34	659	59.3
울산	809	72	737	28	565	76.7
세종	313	16	297	9	188	63.3
경기	5,566	45	5,521	163	3,085	55.9
강원	1,004	19	985	33	606	61.5
충북	1,550	71	1,479	53	989	66.9
충남	1,642	61	1,581	55	1,270	80.3
전북	1,242	22	1,220	50	924	75.7
전남	1,278	36	1,242	31	846	68.1
경북	1,566	-	1,566	39	809	51.7
경남	2,227	125	2,102	51	1,325	63.0
제주	627	19	608	13	325	53.5
계	31,027	1,076	29,951	867	18,210	60.8

- 특수학교 통학차량 총 867대 중 495대는 학교 소유, 372대는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안전교육은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인력 총 2,187명이 이수하였음

〈표 3·67〉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교, 대, 명)

시도	특수 학교 수	통학차량 현황						안전교육 이수		
		전체 통학 차량 수	운영 차종(대수)			운영 형태(대수)		운영자 (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 인력
			16인승 이하	17인~35인승 이하	36인승 이상	학교소유	임대			
서울	32	111	3	17	91	84	27	32	111	111
부산	15	54	-	33	21	54	-	15	54	159
대구	11	50	-	7	43	8	42	11	50	50
인천	10	48	-	8	40	3	45	10	48	66
광주	6	45	-	11	34	9	36	6	45	45
대전	6	34	1	6	27	15	19	6	33	124
울산	4	28	-	25	3	27	1	4	28	28
세종	2	9	-	-	9	5	4	2	7	18
경기	38	163	4	57	102	82	81	38	162	161
강원	9	33	-	16	17	31	2	9	33	42
충북	11	53	3	12	38	31	22	11	53	59
충남	11	55	-	20	35	27	28	10	55	55
전북	10	50	-	32	18	24	26	10	50	50
전남	9	31	1	4	26	22	9	9	31	31
경북	8	39	3	12	24	30	9	8	38	38
경남	11	51	-	20	31	34	17	11	51	51
제주	3	13	-	7	6	9	4	3	13	42
계	196	867	15	287	565	495	372	195	862	1,130

- 급식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31,295명 중 30,71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89,440명 중 89,435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1,360억 원임

〈표 3·6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서울	4,543	4,270	6,709	6,709	7,329	7,329	7,749	10,366	10,366	4,469	6,409	7,098	7,405	13,061
부산	2,078	2,078	4,900	4,900	4,900	4,900	1,954	5,568	5,568	3,160	4,170	5,330	5,570	4,797
대구	2,066	2,056	8,088	8,088	8,088	8,088	3,259	4,107	4,107	6,653	6,262	7,283	8,110	5,179
인천	2,017	1,922	9,556	9,556	9,556	9,556	3,526	6,576	6,576	4,921	6,212	6,932	7,490	8,153
광주	1,425	1,425	9,560	9,560	9,560	9,560	2,588	2,081	2,081	3,260	7,062	7,902	7,972	2,932
대전	1,146	1,137	5,339	5,339	5,333	5,333	1,388	2,458	2,453	2,990	3,695	4,715	4,743	1,870
울산	820	809	5,050	5,050	5,050	5,050	771	2,315	2,315	3,250	4,000	4,800	5,300	1,904
세종	313	313	6,969	6,969	6,969	6,969	439	941	941	5,339	6,199	6,839	6,969	1,123
경기	5,654	5,566	4,759	4,701	5,645	5,645	5,024	24,668	24,668	3,841	4,140	4,884	5,138	17,940
강원	1,005	1,004	5,402	5,402	5,402	5,402	906	2,346	2,346	4,158	5,285	5,354	5,376	3,401
충북	1,564	1,550	5,823	5,823	5,823	5,823	2,883	3,594	3,594	3,671	4,012	4,777	5,054	4,576
충남	1,643	1,642	3,730	5,630	6,080	6,170	1,837	4,649	4,649	3,600	3,750	4,630	4,840	4,803
전북	1,245	1,242	4,820	4,820	4,820	4,820	1,137	3,556	3,556	3,815	4,375	5,165	5,275	2,937
전남	1,279	1,278	5,490	5,490	5,490	5,490	1,226	3,371	3,371	3,425	4,925	5,312	5,490	3,200
경북	1,582	1,566	8,285	8,285	8,285	8,285	3,050	4,978	4,978	6,665	7,515	8,135	8,285	9,219
경남	2,230	2,227	4,513	5,964	6,534	7,097	2,875	6,316	6,316	4,230	6,992	7,802	8,249	8,476
제주	685	627	5,310	5,310	5,310	5,310	619	1,550	1,550	3,970	3,970	4,920	5,250	1,248
계*	31,295	30,712	104,303	107,590	110,174	110,827	41,231	89,440	89,435	71,417	88,973	101,878	106,516	94,819

* 급식을 하지 않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268명) 및 대학형전공과 등(315명) 미포함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역량 강화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 강구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2024년 9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학교는 총 12,229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5.7%임

〈표 3·69〉 2024년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1,358	97.1	98.3	95.4	92.9	82.5	90.9	97.4	94.1	86.2	78.3	79.8	90.3
부산	635	98.3	98.9	97.6	97.2	94.0	95.3	98.9	94.0	98.4	97.3	96.7	97.0
대구	481	100.0	99.6	99.8	99.4	99.0	98.1	99.8	98.1	98.8	92.5	98.3	98.5
인천	556	97.5	97.8	98.0	98.2	95.7	94.8	98.2	89.7	96.9	95.9	91.7	95.9
광주	324	99.1	99.1	97.8	97.5	91.4	88.9	98.5	95.7	96.9	97.8	88.9	95.6
대전	312	99.4	100.0	100.0	100.0	93.3	98.1	100.0	98.1	100.0	98.1	92.3	98.1
울산	248	98.0	99.6	99.2	97.6	98.4	95.6	100.0	94.4	99.2	98.8	99.6	98.2
세종	103	99.0	100.0	99.0	96.1	95.1	100.0	100.0	96.1	100.0	98.1	96.1	98.1
경기	2,557	99.1	99.1	98.8	97.8	94.7	94.6	98.9	95.2	96.9	95.6	94.1	96.8
강원	648	98.8	98.6	98.1	97.2	95.5	86.6	97.5	84.1	97.4	95.5	91.5	94.6
충북	497	98.6	99.4	98.4	98.4	98.6	93.0	98.4	96.0	97.2	93.4	91.5	96.6
충남	738	98.2	98.6	98.0	96.9	90.8	88.1	98.6	91.9	96.1	95.5	87.7	94.6
전북	766	98.6	99.2	97.7	97.4	93.2	83.4	98.4	96.0	98.3	98.2	96.6	96.1
전남	859	96.6	98.3	96.4	96.4	96.6	74.6	97.8	95.7	97.2	96.0	93.2	94.4
경북	949	98.0	98.0	98.1	97.5	98.0	92.1	98.0	97.3	97.4	96.0	94.2	96.8
경남	1,003	98.9	98.7	97.8	97.6	98.8	87.2	99.1	98.0	98.3	96.4	95.4	96.9
제주	195	100.0	99.5	100.0	100.0	99.0	99.5	100.0	97.4	100.0	97.9	99.0	99.3
계	12,229	98.4	98.8	97.9	97.1	94.1	90.7	98.5	94.7	96.3	94.1	92.3	95.7

※ 단순 설치율 현황

- 설립 주체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는 96.7%, 사립학교는 90.2%임

〈표 3·70〉 2024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국·공립	10,443	98.9	99.1	98.6	98.0	96.1	92.9	98.9	95.3	97.2	95.0	93.3	96.7
사립	1,786	95.2	97.1	93.7	92.0	82.9	77.5	96.3	91.6	91.3	88.6	86.3	90.2
계	12,229	98.4	98.8	97.9	97.1	94.1	90.7	98.5	94.7	96.3	94.1	92.3	95.7

-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초등학교 96.2%, 중학교 95.4%, 고등학교 95.1%, 특수학교 98.9%, 각종학교 84.1%임

〈표 3·71〉 2024년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초등학교	6,296	98.7	98.6	98.3	97.6	95.6	91.5	98.6	95.3	96.8	94.4	92.6	96.2
중학교	3,272	98.3	99.1	97.7	96.7	93.4	89.6	98.7	94.3	96.1	94.1	91.5	95.4
고등학교	2,377	97.9	99.3	97.2	96.7	91.4	89.7	98.4	93.9	95.6	93.6	92.4	95.1
특수학교	197	99.0	98.0	100.0	99.5	99.5	98.5	99.5	99.0	97.5	98.5	99.5	98.9
각종학교	87	89.7	90.8	89.7	86.2	82.8	78.2	88.5	81.6	81.6	75.9	80.5	84.1
계	12,229	98.4	98.8	97.9	97.1	94.1	90.7	98.5	94.7	96.3	94.1	92.3	95.7

-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설치 학교는 평균 97.5%, 미설치 학교는 평균 91.8%임

〈표 3·72〉 2024년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8,400	99.4	99.6	99.3	98.7	97.0	95.6	99.6	96.0	97.8	95.8	94.1	97.5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3,829	96.2	97.0	94.9	93.8	88.0	79.8	96.3	91.8	93.1	90.4	88.3	91.8
계	12,229	98.4	98.8	97.9	97.1	94.1	90.7	98.5	94.7	96.3	94.1	92.3	95.7

- 2024년 9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95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9.0%임

※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는 '24.9.1. 개교했으나, 정보공시 이전으로 해당자료에서는 제외함

〈표 3·73〉 2024년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32	96.9	93.8	100.0	96.9	96.9	96.9	96.9	96.9	96.9	96.9	100.0	97.2
부산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구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천	10	9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1
광주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3	83.3	100.0	97.0
대전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종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38	100.0	94.7	100.0	100.0	100.0	97.4	100.0	97.4	94.7	100.0	100.0	98.6
강원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8.9	100.0	100.0	99.0
충북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충남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북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남	9	100.0	100.0	100.0	100.0	100.0	88.9	100.0	100.0	100.0	100.0	100.0	99.0
경북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남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주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95	99.0	97.9	100.0	99.5	99.5	98.5	99.5	99.0	97.4	99.0	100.0	99.0

※ 단순 설치율 현황

■ 향후 과제

- 특수·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지원 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5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6,541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59.7%, 특수학급 졸업생은 55.9%,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은 66.9%이며 전체 진학률은 58.9%임

〈표 3·74〉 2025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 학 률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소계		
서울	304	466	133	903	200	46	1	1	59	21	29	48	68	230	153	90	473	52.4	
부산	129	182	82	393	62	41	1	10	38	13	-	32	51	72	111	65	248	63.1	
대구	159	98	67	324	95	41	1	5	19	17	13	17	32	113	77	50	240	74.1	
인천	115	225	65	405	45	103	3	1	18	20	-	15	20	46	136	43	225	55.6	
광주	92	83	44	219	32	40	4	-	11	1	11	14	24	43	65	29	137	62.6	
대전	64	111	32	207	40	60	-	-	10	4	-	14	16	40	84	20	144	69.6	
울산	46	119	31	196	35	72	1	1	14	7	-	8	11	36	94	19	149	76.0	
세종	11	28	9	48	9	11	-	-	1	-	-	6	7	9	18	7	34	70.8	
경기	397	942	245	1,584	141	284	4	1	81	60	4	99	100	146	464	164	774	48.9	
강원	62	83	43	188	45	34	2	-	7	7	-	5	19	45	46	28	119	63.3	
충북	92	122	54	268	63	36	1	2	12	10	1	13	22	66	61	33	160	59.7	
충남	93	197	30	320	68	70	2	-	12	3	-	28	16	68	110	21	199	62.2	
전북	81	119	47	247	51	51	1	-	13	6	-	11	17	51	75	24	150	60.7	
전남	93	140	19	252	35	68	-	-	13	3	1	13	10	36	94	13	143	56.7	
경북	113	183	77	373	90	82	4	2	23	9	-	29	35	92	134	48	274	73.5	
경남	151	260	77	488	107	70	-	3	50	11	-	34	37	110	154	48	312	63.9	
제주	34	67	25	126	13	27	3	-	10	4	-	3	13	13	40	20	73	57.9	
계	2,036	3,425	1,080	6,541	1,131	1,136	28	26	391	196	59	389	498	1,216	1,916	722	3,854	58.9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25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24개교 79명, 대학 115개교 925명으로 총 139개교 1,004명임

〈표 3·7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2013	17	185	89	649	106	834
2014	16	84	80	637	96	721
2015	18	54	84	753	102	807
2016	15	48	88	768	103	816
2017	15	46	97	832	112	878
2018	16	56	100	888	116	944
2019	16	50	71	905	87	955
2020	25	95	93	898	118	993
2021	24	94	107	797	131	891
2022	23	87	85	832	108	919
2023	18	100	85	834	103	934
2024	19	62	108	867	127	929
2025	24	79	115	925	139	1,004

※ 최종 등록기준 학교 수, 대상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제외,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

※ 출처: 대학정보공시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25. 6월 기준)

- 2025년 6월 기준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은 220개 대학에 2,465명임
- 교육지원인력 유형은 학내 이동 및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교육지원인력과 수어 통역, 속기, 점역 등을 대면 또는 원격으로 학습·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교육 지원인력으로 나뉨

〈표 3·76〉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학교 수	교육지원인력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교육지원인력	대학(원)	115	99	10	1,392	1,501
	전문대학	50	2	1	219	222
	원격대학	2	50	-	-	50
	소계	167	151	11	1,611	1,773
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포함)	대학(원)	42	570	102	-	672
	전문대학	1	2	-	-	2
	원격대학	10	11	7	-	18
	소계	53	583	109	-	692
계		220	734	120	1,611	2,465

※ 출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 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장학금 장애대학생봉사유형)

■ 향후 과제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기기 등 물적자원과 교육보조인력 등 인적자원 추진
- 장애인고등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접근성 및 학습지원 강화

* 센터 주요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자료 개발·보급 지원, 담당자 연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 맞춤형 고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음(평생교육법 제15조의2제1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4년 82개 → 2025년 96개(누적) 지정·운영
 - 2024년도에는 총 1,697개 프로그램(지역별 특화, 일자리 연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87,822명 참여
-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예비조사) 실시(2025. 1. ~)
 - ※ 3년 주기: ('23) 본조사 → ('24) 후속조치 → ('25) 예비조사 → ('26) 본조사
- 장애성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기초 연구(2025. 1.~11.)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한 내실 있는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 * 종사자·장애인 인권 등 역량강화(782명), 공무원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56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202명),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304명)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전국 131개로 8,972명의 학습자가 2,324개 프로그램에 참여
 - * 장애인 평생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청에 등록되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시설(「평생교육법」 제20조의2)

〈표 3·77〉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종사자 수
교육청 등록	93	1,368	7,436	1,394	193
지자체 지정	38	956	1,536	742	48
합계	131	2,324	8,972	2,136	241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24).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후속조치) 통계자료집

■ 향후 과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관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가족지원계획 연계 방안 연구 추진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운영자료,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및 장애인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및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평생교육법 제19조의2)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23조)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조사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지원방안 연구’와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교사) 양성과정 개발 연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 연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육진단 및 평가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특수교육 실태조사(VII) 예비조사’, ‘특수교육 종단조사’ 등을 실시하고,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 연차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음
- 학생의 장애 조기 발견과 특수교육대상자 선별·진단을 위한 기초학습능력검사 개정 연구를 연차별로 수행하고 있음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온맘 누리집)’ 운영으로 장애자녀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관련 우수 논문 발굴을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32권(1호, 2호)를 발간하여 특수교육 관련기관 등에 배부함

- 국내외 특수교육 최신 정보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국내·국제세미나, 한일 특수교육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특수교육’ 제32권을 발간하고 있음

〈표 3·78〉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 조사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지원방안 연구	490
	•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교사) 양성과정 개발 연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 연구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	
	•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육진단 및 평가 방안 연구	
	• 기초학습능력검사 개정 연구(2/4년)	
조사	• 2026년 특수교육 실태조사(VII) 예비조사, 특수교육 종단조사	329
	• 2025 특수교육통계 발간	
	•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학술교류	• 국내·국제 세미나	391
	• 국내·국제 교류 협력	
	• 「현장특수교육」 제32권 발간(연 2회)	
	• 「특수교육연구」 제32권 발간(연 3회)	
	• 스튜디오 운영	
현장 지원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온맘) 운영	150
사업관리	• 2024 회계연도 특수교육 지원 사업 성과분석	21
	• 국립특수교육원 홍보	
	• 출판권 및 저작권 관리	
계	연구 6건, 조사 3건, 학술교류 5건, 현장 지원 1건, 사업관리 3건	1,381

■ 향후 과제

-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확대와 특수교육 성과 분석을 위한 특수교육 종단연구 강화
- 제7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으로 실효성 높은 중장기 특수교육 정책 수립 지원
- 장애자녀 부모의 참여 확대로 수요자 맞춤형 온맘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추진
-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과 정보 교류 기회 확대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26년 적용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고 있음
 - ※ 교과서 및 지도서 29책, 전자저작물 11종
-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장애학생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 ('25년) 국어, 수학, 사회(초3~4) → ('26년) 국어, 수학, 사회(초5~6)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모니터링과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시각장애학생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과용도서와 학습참고서, EBS 수능 방송 교재 등을 대체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음
 - * 교과서와 각종 참고서 등을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확대, 음성(데이지) 등으로 제작 또는 변환한 자료

〈표 3·79〉 국립특수교육원 교과용도서 개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교과용도서 개발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 2026 적용 교과용도서 개발(2/2년)	3,913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200
현장 지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지원	80
시각장애학생 지원	• EBS 수능 방송교재 시각장애학생용 대체자료 제작	121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 제작	500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지원	-
	• 시각장애학생 디지털 대체자료 개발·보급	447
계	교과용도서 개발 29책 11종, 자료 개발 1건, 현장 지원 1건, 시각장애학생 지원 4건	5,261

■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과 모니터링,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 등 후속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보급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직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무교육·진학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와 장애학생 진로 설계 지원 내실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25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함
 - ※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특수교육교원 336명 대상,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25.7.30.)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고용을 연계한 '25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을 실시함
 - ※ 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 주최('25.6.17., 160명)
 -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예술·체육 교육과정 운영학교, 기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안 분석과 정보를 소개하는 '진로 이슈페이퍼'를 제공하고 있음

〈표 3·80〉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자료 개발	• 장애학생을 위한 직무교육·진학지원 콘텐츠 개발	132
현장 지원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진로 이슈페이퍼' 제공	21
계	자료 개발 1건, 현장 지원 4건	153

■ 향후 과제

-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다양화와 담당자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지원 강화

4) 장애공감문화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인권교육 내실화와 인권침해 예방,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중·고등 학생용 성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국 198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운영 매뉴얼 개정과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은폐, 축소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익명 제보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음
 - － 접수된 사안을 관할 교육지원청 인권지원단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제2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장애인식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제3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개최로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와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8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인권보호 자료 개발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성 인권 교육 콘텐츠(중·고등학교용) 개발	144
인권보호 현장 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워크숍, 현장지원 결과 수합, 매뉴얼 개정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인권지원 관련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안 접수 등)	8
장애공감문화 조성	• 제3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개최 • 장애공감문화 조성 관련 사업	11
자료 개발 1건, 현장 지원 4건		163

■ 향후 과제

- 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 현장 중심의 인권지원단 운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맞춤형 지원 강화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학교 중심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와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

5) 특수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현황 및 추진 실적

- 2024년은 집합연수 65개 과정과 원격연수 92개 과정에서 각각 7,264명, 27,768명(총 35,032명) 이수함
- 2025년은 특수·일반 교원, 지원인력, 학부모, 공무원 등 특수교육 관련인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34개 과정, 원격연수 10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82〉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2025.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68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역량 강화	40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98	특수학교 업무 담당자
	특수학교장의 학교경영 역량 강화	129	특수학교 교장
	피질(뇌성)시각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30	시각·지각장애 특수학교, 센터 특수교사
협업 연수	장애학생 통합체육 지도 역량 강화(초등)	119	초등교사 및 특수교사
	장애학생 통합체육 지도 역량 강화(중등)	116	중등교사 및 특수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동계 산림교육 체험(4개 과정)	95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 웹 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	5	시각장애 교직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 및 시스템 이해	25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기관 초등교사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14	병원학교 담당교사
	건강장애학생 대상 교수·학습 및 지원 역량 강화	29	원격수업 초·중등 온라인교사
전문 교육	특수교육 의료인력의 장애공감 문화 조성	41	특수학교(급) 의료인력(간호사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장애공감 문화 조성	67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소방안전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1~2기)	98	소방안전강사
계		974	-

〈표 3·83〉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2025.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신규)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	1,394	공통
	(신규_수어)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	23	공통
	(신규)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고급)	587	공통
	(신규_수어)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고급)	45	공통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상시)	(신규)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803	공통
	(신규 수어)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10	공통
	(신규)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고급)	308	공통
	(신규 수어)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고급)	26	공통
	(신규)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군 교과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29	초등학교 교원
	(신규) 기본 교육과정 일상생활 활동 교수 학습 전문성 강화	90	교원 등
	(신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이해와 지도	38	교원 등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의 이해	25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의 이해	267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이해	229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시각장애의 이해	337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청각장애의 이해	38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지체장애의 이해	100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선택 중심 교육과정 특수교육 전문교과 직업·생활의 이해	82	교원 등
	유치원 현장 중심 통합교육	560	유치원 교원
	초등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1,176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673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382	고등학교 교원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323	교원 등
	특수교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 역량 강화	105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장애학생 부모상담	301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시각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14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청각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19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지적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106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지체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41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자폐성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174	교원 등
	특수교육 디지털 교육자료 만들기	24	교원 등
	특수교육 영상 교육자료 만들기	32	교원 등
	블렌디드 특수교육 수업하기	102	교원 등
	장애대학생 자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7	대학담당자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와 복무 관리	49	학교관리자
	실시간 쌍방향 특수교육 수업하기	88	교원 등
	특수교육 수업전문성 향상	128	교원 등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	32	교원 등
	장애학생 국어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4	교원 등
	장애학생 수학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4	교원 등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기초과정	211	교원 등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상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68	교원 등
	장애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첫걸음	706	교원 등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전문성 강화	440	교원 등
	교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도 역량 입문	139	교원 등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11	교원 등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0	교원 등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46	교원 등
	모두를 위한 통합학급 운영 기본과정	460	교원 등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221	교원 등
	(학부모) 시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28	공통
	(학부모) 청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36	공통
	(학부모) 지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99	공통
	(학부모) 지체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47	공통
	(학부모) 자폐 및 정서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149	공통
	(학부모) 장애아동 의사소통의 실제	565	공통
	NEW! 장애학생의 인권교육과 성교육	827	공통
	즐거로운 장애인식개선 생활	490	공통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154	공통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이해	20	공통
	시각장애학생 보행지도	162	공통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165	공통
	2018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 실시방법의 이해	172	공통
	정서행동검사 바로 알기	216	공통
직무 연수 (정기)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이해	258	교원 등
	장애학생 행동중재 실행 가이드	589	유초중등 교원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 및 전환지원 역량 강화	442	유치원 교원
	유치원 교사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300	유치원 교원
	초등학교 교사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447	초등학교 교원
	중등학교 교사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407	중등학교 교원
직무 연수 (공동 활용)	AI시대,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하다	47	공통
	메타버스를 수업에 활용하기	9	교원 등
	준비물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교실 속 인공지능(AI) 교육	52	초등교원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러스트 디자인	11	공통
	UCC동영상만들기(Jbedu)	14	공통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14	교원 등
	학생정신건강 이해 및 관리	526	교원 등
	뉴노멀 시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99	공통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학급 경영	19	교원 등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공동 활동)	공감·동행을 위한 학교상담기법	27	교원 등
	학교 생활교육을 위한 상담기법 활용	26	교원 등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놀이 중심 인성교육	51	교원 등
	행복한 우리 학급을 만드는 행동중재 적용하기	296	교원 등
	긍정적 행동지원의 수업 적용 및 실행 방안	319	교원 등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유치원 교원용)	13	교원 등
	모든 유아가 참여하는 통합학급 놀이	655	교원 등
	2019 개정누리과정(심화)-관찰과 평가를 통한 유아의 놀이지원과 가정과의 연계	50	교원 등
	유·초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위한 이해와 실제	37	교원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초등학교)	25	초등교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과용도서 활용(국어과)	37	교원 등
	실습형 한글문해교육의 실제	62	초등교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수업의 이해	41	교원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과용도서 활용(수학과)	52	교원 등
	‘똑똑! 수학탐험대’ 활용하기	75	교원 등
	햇갈리는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실험방법	14	교원 등
	문화예술교육 기초의 이해	8	교원 등
	학생중심 미래형 예술교육의 실제	11	교원 등
	탄소중립학교를 꿈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33	교원 등
	사례로 보는 교원 징계 및 교원 소청심사	19	교원 등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 교직문화의 이해	47	교원 등
	독도 e런	25	공통
자격 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전환 연수	0	해당 교원
	특수교육 회소교과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연수	0	해당 교원
계		19,394	-

* 대상 구분: 교원 등(교원, 교육전문직, 지원인력), 공통(학부모 등 일반 국민 포함)

■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적용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교수 학습 지도 역량 강화 및 협업기관 연계 연수 운영
- 특수교육 관련인의 장애공감문화 조성과 통합교육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연수 방법 다양화로 학습자의 연수 기회 확대와 현장 중심의 교육연수 콘텐츠 개발

6)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 학생을 위해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클립형 동영상 50종과 현장지원단이 제작한 수업지원자료 80종을 에듀에이블(eduable.net)을 통해 보급 예정임

〈표 3·84〉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구분	지원 내용	주 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열린배움터, 에듀테크, 멀티미디어북, 클립형 교육영상, 소통 나눔, 현장교사 제작 자료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PAPS-D, 개발 자료 • 대체학습 교과서, 학습참고도서, EBS수능방송교재, 방송교재, 오류접수, 시각장애인 교사용 지도서 • 진로·직업교육자료 • 인권교육자료, 장애공감교육자료, 장애공감 공모전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해 VR 콘텐츠 1종(자립생활)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및 지원 현황 분석 연구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신장 및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해 정보경진대회·e스포츠대회·문화행사 등 전국 단위의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자료 2종(음악, 미술 교과 기반)을 개발하여 보급 예정임
-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플랫폼 운영, 맞춤형 콘텐츠 및 AI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보급, 실감형 체험교실 콘텐츠 개발 및 체험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그림 상자를 이용한 의사소통교육 등 디지털 기반 수업 개선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열린배움터(class.nise.go.kr)를 운영하고,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발달장애학생 기본 교육과정과 연계 사용이 가능한 기본교육과정 초등 3~4학년군 사회, 과학 멀티미디어 콘텐츠 4종, 지체·발달장애학생 다감각적 수업 지원을 위한 중등 사회과 실감형 콘텐츠(AR) 10종을 개발·보급 예정임
- AI 기반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기본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및 3~4학년 수학 디지털 교육자료(2종)을 개발·보급 예정임

- 특수학교 체험교실용 실감형 콘텐츠 2종 개발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에듀테크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버스 운영('25, 65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85〉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디지털 교육지원 사이트·플랫폼 운영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 열린배움터(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지원 플랫폼) 운영	980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정보화 교육 자료 개발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 개발 • 발달장애학생 기본 교과과정 콘텐츠 개발 • 지체 및 발달장애 실감형 자료 개발 • 특수교육 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개발	1,944
정보화 연구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및 지원 현황 분석 • 특수교육 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수·학습모델 개발 연구	40
현장 지원 및 대외협력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	700
관리·운영	• 학술정보관 운영	26
계	연구 2건, 개발 5건, 운영 5건, 행사 1건	3,690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확대
- 장애학생 및 교사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기초 연구 추진
- 급격한 과학기술 변화와 미래 교육환경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지속 추진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96개(누적기준) 도시를 선정·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관련 전국 단위 기초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2026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초 연구 1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각 3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콘텐츠 각 2종, 장애인 문해교육 콘텐츠 2종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교육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표 3·86〉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단위: 백만 원)

구분	과 제 명	예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4,095
조사·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150
	• 장애성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기초 연구	50
연구·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400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30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10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300
	• 장애인 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300
교육·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	60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30
센터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및 물품 구입 등	54
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건, 조사·연구 2건, 연구·개발 5건, 연수 2건, 센터 운영 1건	5,839

〈표 3·87〉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2020 (10개)		[경기] 광명시, 오산시 [부산] 서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2021 (19개)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대구] 수성구, 달서구 [부산] 동구, 동래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2022 (32개)	신규 지정 (13개)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 용인시 [대구] 동구 [부산] 남구, 영도구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김천시 [광주] 남구, 북구, 서구
2023 (70개)	신규 지정 (38개)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은평구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인천] 계양구, 서구 [광주] 광산구, 동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충북]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나주시 [경북] 경주시, 상주시 [경남] 남해군
2024 (82개)	신규 지정 (12개)	[서울]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부산] 금정구 [대전] 대덕구 [경기] 군포시,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남] 서산시 [충북] 괴산군, 증평군 [경북] 안동시
2025 (96개)	신규 지정 (14개)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시흥시 [충북] 단양군, 보은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전북] 정읍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경남] 산청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 향후 과제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규모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가족지원계획 연계 방안 연구 추진
- 장애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디지털 콘텐츠 등 개발·보급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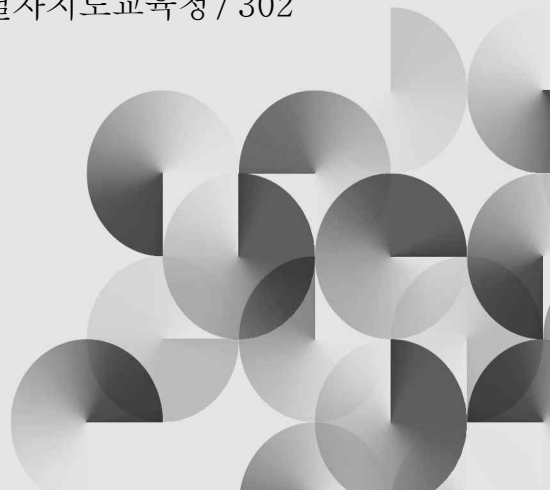


2025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부록 I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135
- 부산광역시교육청 / 147
- 대구광역시교육청 / 157
- 인천광역시교육청 / 166
- 광주광역시교육청 / 177
- 대전광역시교육청 / 193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13
- 경기도교육청 / 22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230
- 충청북도교육청 / 239
- 충청남도교육청 / 24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60
- 전라남도교육청 / 270
- 경상북도교육청 / 279
- 경상남도교육청 / 29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02



서울특별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서울특수교육방향



Ⅱ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학교명	예정지	장애유형	개교 예정
서울동진학교(가칭)	중랑구 신내동 일원	지적장애	2027. 9월
서울성진학교(가칭)	성동구 성수동 성수공업고등학교 폐교 부지	지체장애	2029. 3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희망 수요 조사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24	138	152	492	855	218	335	104	292	952	1,634
2025	139	153	500	882	222	345	107	299	968	1,679
증감	1	1	8	27	4	10	3	7	16	45

※ 2025학년도 신증설 50학급, 감축 5학급, 순증 45학급

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희망 수요 조사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나)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계획(2025~2029)」 추진

- 학교법인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대상 포함,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6교

3) 학교장 선발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학교: 23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학교: 10교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안교육 위탁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후 위탁 의뢰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서울특수교육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가) 서울특수교육원(가칭) 설립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나)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운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TF 및 토론회 운영

2)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지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 다)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문적 특수교육 지원 확대: 11센터
 - 장애 유형, 진로·직업교육, 영아교육, 가족지원 등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강화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가)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교육 이력 등에 관한 NEIS 연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 업무를 위한 NEIS 활용

나) 장애의 조기발견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 및 교육전 진단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병원 및 진단·평가 전문기관 지정 확대: 159기관

다.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2) 장애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4)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장애 전담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합지원: 7개소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

1) 함께 다지는 통합교육

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 추진하는 통합교육 정책 실행

- 통합교육 현장과 밀착된 정책과제 연구 추진
- 정책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실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나) 통합학급 지원 확대

- 다양한 학생들의 의미있는 배움이 살아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 역량 강화

2)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교수 기반의 더공감교실 운영: 연구학교 8교, 운영학교 14교, 학급단위 운영학교: 20교
- '십분의 기적' 프로젝트 운영으로 상시적 협의 문화 조성

*** 십분(十分)의 기적이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십분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수업 혁신 문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통합교육 연수 운영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연수 운영

연수명	대상	인원	주요내용	시기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연수 I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 배치된 일반학교 유·초·중·고 교(원)장	(대면) 250 (비대면) 2,000	통합교육 운영내용 통합교육 사례나눔	2025. 5.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연수 II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 배치된 일반학교 유·초·중·고 교(원)감	(대면) 250 (비대면) 2,500	통합교육 운영내용 통합교육 사례나눔	2025. 9.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교사	40	통합교육, 사회정서학습, AI·에듀테크 활용 학습 등	2025. 4~5.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중·고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2인1조)	50	통합교육 지원 관련 소통역량 함양	2025. 8.
디지털 기반 통합교육 교원 연수	초·중·고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기본)100 (심화)30	AI와 보편적 학습설계 AI 활용 수업 사례 등	2025. 5. 2025. 6.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실행자료 개발 및 보급: 관리자 통합교육 안내서, 통합학급 운영 도움자료, 통합교육 업무 지원자료 등

다)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 일반교육 교원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 연구 실천을 위한 통합교육공동체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11기관
-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1단
- 교육지원청 학교급별 교사 네트워크 구축 확대

나.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지원체제 강화

1)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가)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시

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강화

-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 내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학부모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확대)

다) 장애공감문화 확산

- 학생 주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학교 지원: 총 30팀
-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문화행사
- 장애공감문화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구축·운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점검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11단(교육지원청별 각 1단)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기능 수행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 더봄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협업

다)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대상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장애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장애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원 문해력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장학 지원
- ‘찾아가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운영
- 특수학교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임상장학, 멘토링 계획 수립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나)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3)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대

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특수학교 인공지능(AI) 미래교실 구축 지원: 2교
-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SELC) 운영 활성화

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교수학습 플랫폼 뉴쌤 활용

다) 일상생활 디지털 접근성 교육 활성화

- 학교(급)별, 교과별, 장애특성별 정보화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전한 여가생활 개발을 위한 장애특성별 e스포츠 교육 실시

4) 자율·협력 중심 교원 성장 지원

가) 교사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연수 확대

- 저경력(3년 미만) 교사 대상 수업 성장 자율연수: 10개 강좌, 165명
- 교직원계별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 연수: 20명
- 수업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20명

- 나) 스스로,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원 공동체 운영 및 지원
 -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 운영: 6개 분과, 28명
 - 안정적 교원 수업 성장 기반을 위한 수업 멘토 지원: 13명
 - 협력적 연구 활동을 위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6팀 68명
- 다) 협력적 수업 성장을 위한 수업나눔 활성화
 - 특수학교 교장(감) 수업성장 워크숍 운영
 - 수업나눔축제를 통한 수업나눔 참여 기회 확대
- 라)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회복력 증진 지원
 -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슈머 연수 운영
 - 특수학교 회복탄력성 교원 연수 운영비 지원: 32교
 -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대상 회복력 증진 연수 운영: 30명
- 마) 특수교육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나.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 1)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가)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나)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
 - 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 직업체험 및 직업 훈련 운영: 2센터
 - 라)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
 - 마) 장애학생 대학생할 체험 지원 사업 운영: 42교 209명
 - 바) 장애학생 직업실기 자격취득과정 운영 지원: 31교
- 2)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기관 연계 장애학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 아르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조금은 특별한 운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 (텐덤사이클) 지원
 -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활용
 - 장애학생 체력증진 및 회복을 위한 건강체육활동 운영 지원: 특수학교 11교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1)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

가)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12교

나) 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 강화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 운영

다) 병원학교 순회교육 확대: 10교 운영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지체중복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센터
-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육청-의료기관-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 사업 운영: 4교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 운영: 3교

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센터
- 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시각대체학습자료 제작 등 맞춤형 학습지원

다)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꽃맞무지개교실) 지원
-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병원학교 담당자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전교육 편성·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현장중심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지원체제 강화

- 1)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36교
 - 특수학교 28교, 행동중재 전문교사 배치 일반학교 8교
- 2) 개별 학생 행동중재지원 강화
 - 행동중재지원단 구성(교사, 의사, 특수교육 전문가, 행동분석 전문가 등)
- 3) 행동중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연수명	대상	인원	주요내용	시기
교(원)장·교(원)감 PBS연수	유·초·중·고 교(원)장·감 SWPBS 운영교·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 대상교	50	긍정적행동지원의 이해 등	2025. 4~5.
행동중재 전문가 되기 연수	특수교사	50	증거기반의 실제 이해 등	2025. 7.
긍정적행동지원 학부모 연수	학부모	150명 내외	가정에서의 행동지도, 약물치료의 이해 등	2025. 6. 10.

4)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실행 콘텐츠 운영

- 가) 자료 기반 행동중재 실행을 위한 서울PBS 플랫폼 운영
- 나) 서울PBS 누리집(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채널명: Seoul PBS) 운영
- 다)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실행자료 개발·보급

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1)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치료지원 내실화: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생 재택 치료지원 확대 및 모바일 바우처 앱 서비스 제공
 - 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편의 지원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무원) 역량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편성
- 3) 특수학교 서울형 늘봄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제 강화
 - 가) 특수학교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25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역기관 연계 사업 운영: 14기관
- 다)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및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 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가)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편의시설 확충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서울동진학교 외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
- 2)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 확충

설립	신·증설 예정 학급수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공립	44	33	31	30	27	165
사립	5	13	13	8	12	51
합계	49	46	44	38	39	216

- 3) 특수학교(급) 공간 재구조화
 - 미래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 조성
 - 특수학급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서울특수교육원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설립 로드맵 수립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올타리 구축
-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운영 및 역량 강화

다.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격차 해소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과정 중심 협력 기반 통합교육

- 1) 더+통합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
 - 학교 내 통합교육 협의체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배리어프리 캠페인 기획·실행
-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 실행 지원
 -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 확대를 통한 에듀테크 기반 협력기반 교실 속 통합교육 내실화 정책 확산 도모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교수 기반의 「더공감교실」 지속 운영

나.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천사례 발굴 및 보급
- 2)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운영 다양화
 - 장애인식지수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 개선 노력 강화
 - 학생 주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학교 확대
- 3)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점검표를 활용한 학교별 자체 점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가)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수업사례 나눔 및 연수 확대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 AIDT 도입 대응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다) 인공지능(AI) 활용 미래교실 운영 확대
 - 라)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속 지원
-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 3)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 실행을 위한 교원 성장 지원

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1)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 체험 확대

- 2) 희망일자리 사업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취업 지원 내실화
- 3)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4)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활성화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 1) 순회교육 지원 유형 다양화
-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 강화

- 1)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체제 내실화: 교원학습공동체, 행동중재특별지원단
- 2)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관련 데이터 관리, 실행도 점검
- 3) 서울PBS 누리집 및 PBS플랫폼을 활용한 자료기반 행동중재 실행 지원 체제 고도화

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1) 이용자 편의를 위한 치료지원 홈페이지 개선
- 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기준 및 방식 개선
- 3)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개선: 서울시보조기기센터와 연계
- 4)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지역자원 활용,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 활용
- 5) 방과후학교 활성화, 돌봄교실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다. 특수교육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홍보: 교육청 홈페이지(연중), 상담(수시)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운영
 - 나) 장애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319명), 사립(258명)
-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구축
 - 가)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협의체 운영(1회 이상)
 - 나)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안내 체계 마련

- 3) 의무교육 이행 철저: 홍보, 상담,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지원,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등 취학 의무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적령 취학 독려
- 4) 초등학교로의 입학 적응 지원 강화
 - 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5회)
 - 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348교, 767명)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체계 내실화: 진단평가팀 협의회(2회), 담당자 협의회(2회)
- 2) 선정·배치 절차 체계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 3)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의 취학 또는 재취학 시 걱정 절차에 따른 학교 지정·배치 추진
- 4)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정·배치 및 정보 관리: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업무처리 간소화 및 결과 처리 실시간 반영
- 5) 미래 성장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담당자 협의회(2회)
- 6)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기능 강화: 6개(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영유아, 진로직업탐색)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확대
 - 가) 특수학교: ('24) 15교 377학급 → ('25) 15교 379학급
 - 나) 특수학급: ('24) 535교 673학급 → ('25) 540교 701학급
 - 다) '26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25. 4월)
- 2)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및 환경개선 지원
 - 가) 학급 신·증설에 따른 시설·설비 설치 및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25. 41학급)
 - 나)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지원('25. 25학급, '23.~'26.까지 총 110학급)
 - 다) 특수학교 장애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장애맞춤형 IoT 스마트교실 50학급, 무장애 실내·외 환경 조성 3교,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18실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지도역량 강화 연수 지원
 - 나)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 등 연구대회 참여 권장

- 2) 특수교육지원단 운영
 - 가) 4개 영역(교육과정, 수업, 통합교육, 행동중재), 80명 구성
 - 나) 특수교육지원단 협의회(5월) 및 팀별 컨설팅·연구활동(연중) 운영
- 3) 특수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및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 조직·운영
 -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1교)
 - 나) 교육연구회 운영·지원: 통합교육(1팀), SW·AI활용 수업(1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6팀) 및 컨설팅 운영
 - 나)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5개원), 장애유아 지도교사·학부모 연수(10회)
 - 다) 통합교육지원실 구축(5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권장
 - 나) 일반학교 교원의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권장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통합교육 협의회 운영,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운영
 - 나) 통합교육 연구학교(1교), 통합교육 중점학교(14교) 운영·지원
 - 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유치원) 통합교육 컨설팅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실 실시(2회)
 - 나)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1회)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장애이해 교육활동 지원: 장애이해교실(300학급), 장애공감학생동아리(3교)
 - 나)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콘텐츠 활용 장애이해교육: 장애이해 동영상(유), 대한민국 1교시(초), 장애이해 드라마(중, 고)
 - 다)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지원: 장애이해온라인방탈출 콘텐츠(유, 초), 영상 콘텐츠(중, 고)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교육(60교)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 가) 6팀(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83명으로 구성
 - 나) 인권침해 예방 컨설팅 및 사안별 지원(정기지원, 특별지원)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후상담 프로그램 운영
-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찾아가는 성, 인권교육(중학교 특수학급 41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교육환경 조성
 - 가) 특수학교 스마트교실 등 AI 교육 중심 교실 구축 지원(특수학교 9교)
 - 나) 특수교육 AI 활용 교육연구회 운영 및 특수교육지원단(수업) 중심 AI 연구활동 운영 지원(2팀)
- 2)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 가)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및 디지털 활용 교육 강화
 - 나) 인공지능 기반 로봇 활용 교육 특수학교(2교), 특수학급(2학급) 운영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교 자율성 강화
 - 나)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직업교육 특성화(2교), 전공과(9교, 37학급) 운영
 - 다) 특수학교 진로직업 특화교육과정 운영(2교)
 - 라)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1팀)
- 2) 일반학교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통합교육계획, 특수학급 운영계획 수립('25. 3월)
 - 나)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4회)
 - 다) 특수학급 담당 교원의 통합교육 내실화 노력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이수 철저
 - 라)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및 운영비 예산편성
 - 마)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배치 및 일반 학생수 감축(1~3명) 권장

다.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현황 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723교), '25. 4월
- 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포함하여 작성
- 다) 개별화교육계획 유형: 3유형(교과, 생활지원, 교과 및 생활지원)

2) 개별화교육 운영

- 가)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도움자료' 보급
- 나) 개별화교육지원 컨설팅: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활용

라. 특수학교(급) 동행장학

1) 특수학교 장학

- 가) 학년초 현장지원 장학: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 협의('25. 4월, 15교)
- 나) 학기중 현장지원장학: 교육실습, 늘봄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운영, 학교 현안 등 협의
- 다) 학교 내 자율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2) 특수학급 장학

- 가) 특수학급 현장지원장학: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노후 환경 개선, 현안 등 협의
- 나)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47개 지구, 4회

3) 컨설팅 장학

- 가) 특수교육지원단(교육과정, 수업, 행동중재, 통합교육팀) 연계 컨설팅
- 나) 교육(지원)청별 통합교육지원단, 나이스현장지원단 등과 연계한 주제 중심
컨설팅 지원

마.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중증장애학생 지원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운영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수업일수(170일), 수업운영형태(방문수업,
가정학습, 체험학습)

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가) 교육과정, 특색교육, 인성교육 등과 연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운영
- 나) 특수학교(급)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 특수학교(급) 16교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체육활동 특화교실 운영: 특수학교(급) 10교
- 나) 장애학생 체력회복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4교
- 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12종목, 선수 102명

사.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교육 여건 개선(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내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1교)
 - 나) 학교-의료기관 간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한 전담 간호사 운용
- 3)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를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2개소)
-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병원학교 운영 지원(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 나) 원격수업 위탁기관(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꿈사랑학교) 운영 지원
 - 다) 학교 복귀 전·후 프로그램 운영(5교)
- 5) 행동중재 지원
 - 가) 특수학교(급)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15교), 학급(18교)
 - 나) 행동중재 컨설팅 운영: 행동중재 순회교사, 지원단 활용 컨설팅 운영
 - 다)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현장지원단(39명), 자문위원(3명)
 - 라) 병원연계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명
 - 마)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운영: 10명, 대학부설연수원 위탁

아. 늘봄·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 가) 특수학교 늘봄·방학후학교 운영(15교, 317개 프로그램, 1,760명)
 - 나) 특수학급(유·중·고) 방학후학교 운영(45교, 56개 프로그램, 273명)
 - 다)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136교, 프로그램 162개, 667명), 지원인력 운영(48교, 14,144천원)
 - 라) 유관기관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12개 기관, 22개 프로그램, 109명)
-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가) 특수학교 늘봄학교(보살핌늘봄) 운영 지원(10교, 14학급, 58명)
 -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특수학교 6교, 14학급, 유치원 5개원 5학급)
 - 다)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 참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60개원)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배치: ('24) 856명 → ('25) 914명(사회복무요원 포함)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지원(시교육청 주관 집합연수 5회 등)
- 2) 치료지원: 물리치료 등 총 11개 영역, 마중물카드를 통한 지원(5,984명)
- 3) 통학 편의 지원: 유치원~고등학교 지원 범위 확대, 연 3회 학기별 지원(3,026명)
- 4)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251회)
- 5)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 : 가족지원 연수(2회), 가족지원 프로그램 (6회), 가족상담(50가족), 학부모 자조모임(3팀)

차.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안전계획'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수립('25. 2월)
- 나) 장애학생 학교 담당자(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운영
- 다) 장애학생 일과 중 학교 이탈 예방 노력
- 라)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및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마) 장애학생 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2) 학교 안전 내실화
- 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개편)안에 따른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 나) 연 2차시 이상 응급처치교육, 초등 5학년 이상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실시
-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
- 라) 특수학교 안심 알리미·학교안전 지원 사업: 학생 등하교 문자 알림·위치추적 확인, 통학버스 위치 추적 서비스, 통학버스 운전자 스마트폰 제어 시스템 지원

카.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

1) 장애학생 진로체험활동 강화

- 가) 특수학급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급(중, 고) 대상(35교 182명)
- 나) 미래교육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급(초, 중, 고) 대상(37교 228명)
- 다) 찾아가는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급(초, 중) 대상(40교)
- 라)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개 직종(46교 548명)
- 마)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개최: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생 대상(247명)

2)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 가)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 나)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3교)
- 다) 직업교육 거점센터(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학급(고) 대상(25교, 200명)
- 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부산전자공고) 운영: 특수학급(고) 대상(13교, 99명)
- 마)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부산혜성학교 「꿈이룸」, 부산해마루학교 「에코해마루」
- 바) 장애학생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17개 기관 20개 프로그램(34교, 129명)
- 사)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 개발원 특화훈련(실무작업, 외식산업 분야) 연계(일반고 3학년 9교, 10명)
- 아) 장애학생 기관연계 직업평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20교, 121명)
- 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강화

3) 장애학생 취업·진학 지원

- 가) 장애학생 윈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13개 기관)
- 나)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연수, 상담, 체험)
- 다) 장애학생 채용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 운영: 5개 기관(15명)
- 라) 장애학생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이상 특수학교(급)(10교)
- 마) 장애학생 대학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대상(20교)
- 바)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정보 및 상담(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연계) 제공
- 사)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홍보물 제작·발간('25. 11월)
- 2)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7월), 입학적응 예비학교(10~12월) 운영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25. 7~10월)
- 2)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25. 10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협의회(7월, 11월)
- 4) 특수교육 거점지원센터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시각, 청각, 발달): '25. 6~7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25. 6~10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 연구학교 협의회 지원('25. 6~7월, 11월)
- 2) 특수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팀별 연구회 운영('25. 5~12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 성과보고회('25. 10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통합)교육 연수('25. 7~11월)
- 2) 통합교육 중점학교 컨설팅 지원('25. 6~9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25. 5~11월)
- 2) 장애공감 동아리 운영 자료 개발('25. 12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교육(지원)청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6단(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 나) 더봄학생 재학교 중심 정기현장지원 실시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대응 체계 강화
 - 가)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 및 CCTV 설치 확대
 - 나) 장애학생 대상 사안 발생 시 보고체계 강화를 통한 사안별 신속 지원
 - 다)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강화
- 3) 장애인권 존중 문화 조성
 - 가)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2회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특수학교 미래형 다목적 직업훈련실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지원
- 2) 특수학교(급) 인공지능 기반 로봇 활용 교육, AI교육 우수 사례 발굴·보급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지원
 - 가) 특수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25. 7월, 2회)
 - 나) 특수학교 교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컨설팅 실시('25. 5~11월)

다. 순회교육지원 강화

- 1) 순회교육대상 학생 학기말 평가 및 2학기 계획 수립('25. 7~9월)
- 2) 순회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수업 나눔(3팀, '25. 6~7월)

라.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부산장애학생 체육 한마당 개최('25. 11월)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교사 연수(6월)
- 2)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 양성과정(6~11월), 병원연계 행동중재 지원(7~12월)

바.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여름·겨울방학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25. 7~8월, '25. 12~'26. 1월
- 2) 유관기관 연계 여름·겨울방학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26개 기관(예정)
- 3)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직무 역량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 실시(30교)
 - 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 직무역량교육 등) 실시
- 2) 치료지원 제공 기관 현장지원 및 점검('25. 8~12월)
- 3)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25. 7월)

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

- 1) 2025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개최('25. 9월)
- 2) 2025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개최('25. 9~10월)
-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컨설팅('25. 11월)
- 4)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및 현장실습 운영 점검('25. 11~12월)
- 5) 「My JOB 프로젝트」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25. 12월)

대구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격차 완화

3. 추진 중점과제

-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및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1인당 50만 원 이내)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운영 및 순회교육 제공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공립 150천 원, 사립 401천 원 이내)
 - 라)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담당 교원의 컨설팅 및 연수 기회 확대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운영

2)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사립유치원 배치(3인 기준) 시 특수교육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나) 맘껏 놀이 중점 통합유치원 운영(2개원)
 - 단설유치원(대구인지유치원), 병설유치원(대구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다)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4개원/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별 1개원)

나. 대구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역량 강화

- 1) 학생 맞춤형 체험교육, 연수 및 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특수교육 역량 강화 중심 역할 수행
- 2)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 및 확대
 - 온맘 처음 부모교실, 온맘 성장단계별 부모교실, 온맘 공통 부모교실, 온맘 치유 부모교실 등 운영
- 3)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4)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3개소)
 - 대구광명학교(시각장애), 대구영화학교(청각장애), 대구덕희학교(정서장애)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추진
- 2) 2025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운영
 - 가) 신설: 7학급(유 3, 초 3, 중 1)
 - 나) 증설: 25학급(유 1, 초 11, 중 7, 고 1, 특 5)

라.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 가)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 장애교원 지원교사,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 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1명 추가 배치
- 2)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제고
 - 가) 특수교육 교원 전문학습공동체 운영(138팀)
 - 나) 특수교육 교원 연구회 운영(4팀/개별화교육계획, 일상생활 활동, 행동중재, 정보화)

- 다) 특수교육수업지원단 운영(유·초등 13명, 중등 10명, 총 23명)
- 라)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 활동 강화(지원장학, 권역장학, 멘토링장학)
- 마) 대구교육연수원과 협력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및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바) 특수교육 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세미나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68명)를 통한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 통합교육 지원, 문제행동 중재, 장애이해 교육 등 실시
- 2) 교수,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각 1팀, 총 6팀)을 구성하여 기본·정기 현장지원 강화
- 3) 통합교육지원실 10교 운영
- 4)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색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6개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3시간 이상 이수)
- 2)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지원
- 3)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확대 운영(26개교)
- 4)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운영
- 5) 예비교사 대상 통합교육 소양 강화

다.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운영비 지원(유·초·중·고·특 교당 80만 원)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성교육 전문가, 특수교원, 경찰,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각 1팀, 총 6팀)을 구성하여 정기·특별 현장지원 강화
- 2)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3) 유·초·중·고·특·각종학교 직원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이상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10교), SWAI교실(8교) 등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2) 장애학생 맞춤형 AI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위한 교육청 지정 거점 학교 중심 AI 융합교육 시범학급 운영(1교, 대구정보학교)
- 3) 장애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대구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6월)
 - 대상: 특수학교(급) 및 비장애학생 등 200여 명
 - 종목: 정보경진부문 18종목(정식 16, 시범 2), e스포츠부문 10종목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운영(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5-5호)
- 2)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 가) 학교 특성, 학생·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 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특수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문화예술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 다)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3) 유·초·중·고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연구 및 보급
- 4) 특수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11교, 22,000천 원 (교당 1,700천 원~2,200천 원 지원))
-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가) 2025 특수교육수업지원단 컨설팅 실시(수시 신청)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나눔 등
 - 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초 연수(15시간, 400명)
 - 일상생활 활동 연수(15시간, 400명)
 - 행동중재 연수(15시간, 400명)
 - 다)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 운영(180시간, 23명)
- 6)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 가) 학교별 운영 사례, 현안 과제 및 해결 방안 등 공유
 - 나) 희망학교 및 권역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실행력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 방안 안내(2025. 2월)
 - 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과중심, 생활지원중심, 교과 및 생활지원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나) 2024 특수교육연구회 사례집 「2024 특수교육 개별화교육 실행 사례집」 활용(학교급 및 장애영역별 개별화교육 실행 총 104 사례 수록)
- 2)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 4)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 실행 과정 누가기록 및 구체적 평가 기술을 통한 성장 및 이력 관리 강화
- 5)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또래활동 활성화) 지원(특수학교 11교, 40,000천 원 지원)
 - 학생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 집중 지원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 및 재택 순회교육 운영
- 2) 자료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 1) 특수교육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분야 진로 직업교육 지원
- 2) 고교 특수학급 연합 '빛슬합창단', 보명학교 '소리나무합창단' 등 장애학생 문화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구축(심리안정실 등)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나)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운영(특 2교)
 -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원(162,000천 원)
 - 3)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강화
 - 가) 병원학교 3학급(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운영
 - 나)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배치
 - 다) 병원학교별 건강장애 담당 교원 연수회 실시 및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건강장애이해 증진
 - 라) 병원학교별 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1:1 맞춤형 찾아가는 학교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 4)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운영
 - 나) 교과 선택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등 교육내용 다양화
 -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시 선교육지원 등 교육 공백 최소화
 - 라) 스쿨포유 초등과정(1학년) 화상강의 전담교사 배치·운영(대구특수교육원 내 위치)
 - 5)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 가) 대구특수교육원-대학,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연계
 - 나) 전문가 양성(23명),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80명), 가족상담(31가족)
- 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돌봄봉사인력) 지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프로그램 운영
-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가) 인력 지원 현황: 총 853명(실무원 576명, 사회복지무원 277명)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신규채용: 3개월 이내 직무연수 연 30시간 이상(사회복무요원은 16시간 이상)
 - 기존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 직무연수 연 15시간 이상
 - 자체연수 강화: 지원 대상학생 맞춤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 2) 치료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치료지원비 증액(월 14 → 16만 원)
 - 나) 치료지원 서비스 영역 세분화(우리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맞춤)를 통해 선택권 확대

- 3)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 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및 기타 편의시설 지속설치로 Barrier Free 구축
 - 다) 특수학교(급) 리노베이션을 통한 교실환경 개선

자.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
 - 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지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구)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나)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등 직업평가 협업
 - 다) ‘학교 내 장애학생일자리’ 사업 내실화
 - 5개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원 및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취업 전 직장 적응훈련, 사회 적응훈련 강화, 추후 사업체 취업으로 연계
- 2)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실기 직무연수과정 개설(하계 방학 중, 7개 과정 예정)
- 3) 대구특수교육원-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운영 활성화
 - 가) 진로직업 및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생 대상
 - 진로직업 11과정, 특수체육 2과정 운영
 - 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양성과정 대상자 모집 및 취업 지원
- 4)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학교기업 ‘성산’ 운영(특 5교 연합)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2교)
 - 다) 진로직업교육 업무 전담교사 배치
 - 진로전담교사 및 현장실습전담교사 특수학교당 1명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가.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 나. 대학 입학 정보 제공을 통한 진로 선택 지원 및 대학 진학 후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대학 입학 설명회(7월)
 - 대구·경북권 대학 참여
 - 대학별 입시 요강,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지원제도 안내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
 - 2) 사립유치원 배치(3인 기준)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나.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2)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다.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1)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추가 배치
 - 2) 특수교육교원 전문학습공동체, 연구회, 수업지원단 운영 강화
 - 3)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계속 배치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통합교육 실시
 - 2)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연계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 추진
- 2)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간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활성화

다.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디지털교육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AI교육 선도 특수학교(급)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및 운영 내실화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생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속 운영
- 3)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모델 연구 지속 추진

다.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 1)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 자료 제작 등 지속 추진
- 2)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중점
-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격차 완화 및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속 운영

라.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대구특수교육원 중심 체험교육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2) 전공과 교사, 진로전담 교사, 현장실습전담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현장실습 강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장애학생 대학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및 참여 대학 확대

나. 장애학생 대학 입학 설명회 지속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1. 기본 방향

가. 꿈·도전·성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공약2-45)

1) 대학형 전공과 확대 및 운영의 다양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대학형 전공과 학급 증설

2) 장애학생 진로·취업 컨설팅단 운영

가) 장애학생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진로·취업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나)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취업 컨설팅 및 연수

나.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특수학교 설립(공약 2-34)

1) 특수학교(급) 신·증설

2)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3) 공립특수학교 신설

다. 특수교육 운영 지원

1)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컨설팅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시·청각장애학생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 및 의료인(간호사) 인력 지원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재활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및 의료장비 지원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컨설팅·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컨설팅 지원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5~6월)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6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연중 운영

- 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교육지원청)
 - 다) 특수학교 장애학생체육활동 지원
 - 라)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 마)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술인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5) 특수학교 재난대응교육 지원

라. 통합교육 운영 지원

- 1)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
 - 가) 학교별 장애인식 지수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나)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 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 가)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통합교육 지원
 - 가) 통합교육 활성화 ‘정다운학교’ 운영
 - 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특수교육지원센터 6개단)
 - 다)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유, 초, 중)
- 4) 발달장애학생 정서·행동 지원
 - 가) ‘행동중재지원단’ 운영(특수교육지원센터 6개단)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 행동 관리·대응
 - 다) 공사립 특수학교 정서·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라) 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
 - 마)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 바) 특수학교 정서행동 담당교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원 운영

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1) 특수학교(급)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2) 전문직업인 양성 특화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예술·체육 분야)
- 3)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거점센터 운영
- 4) 꿈이음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 5)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 가)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 운영

- 나)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6)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역량 강화
 - 가) 「교육에서 고용까지」 지역사회 연계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확대
 - 나) 진로직업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 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바.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 2) 장애학생 미래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3) 특수교육 관련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 가) 관리자 특수교육 연수
 - 나) 특수교사·중도중복장애학급 교사·지원센터 교사 연수
 - 다) 특수교육 실무사·특수학급 종일반 강사 역량 강화 연수
- 4) 특수(통합)교육 수업지원단 운영

사. 장애학생 교육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 3) 장애학생 지원인력 운영
- 4) 장애학생 늘봄학교 맞춤형 지원강화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6개 센터)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정·배치 지침 마련을 통한 내실화
 - 다) 방과후 및 참좋은카드 발급과 치료지원 가맹점 모니터링
 - 라) 청각(남부), 시각(동부), 중도중복(시) 거점센터 운영
- 2)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건강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하대 병원학교 운영(협력학교 연일학교)
 - 다)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스쿨포유) 지원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
- 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 학급 운영: 5개 학급 11명
 - 나)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재배정: 5개 센터 51,000천 원
 - 다) 통합교육 중심 유치원 선정: 3개원
 - 라)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242명
 - 마)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추진계획 수립
 -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원장 협의체 구성
 - 장애이해 인형극 공연 지원: 68개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 6회 111명
 - 나) 진단·평가 매뉴얼 제작 보급: 1회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4개, 108명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 가) 특수학급 신증설: 139학급(유 7, 초 84, 중 33, 고 7, 특수학교 8)
 - 나) 특수학급 노후화 환경개선: 30교(유 2, 초 18, 중 4, 고 6)
 - 다) 대학형 전공과 학급 증설: 인천연일학교 2학급 증설
- 2) 인천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18교 24학급
- 3) 예술특화직업교육 운영: 8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향상
 - 가)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역량 강화 직무연수: 20명
 - 나)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연수: 인천 36명(2시간), 전국 100명(2시간)
 - 다) 특수교육 관련 교권보호 연수: 329명
 - 라)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369명
 - 마)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과 진로 연수: 9명
 - 바) 진로직업 역량 강화 연수: 95명
- 2) 특수교육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112개, 1,215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6개단 구성
 - 나)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 협력 교수팀 운영: 6개팀
- 2) 「학교장애인식 검사」 현장 적용
 - 가) 인천 시범 운영: 17교(초 11교, 중 4교, 고 2교)
 - 나) 시도교육청 정다운학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정다운학교 운영: 2교(운서초등학교, 선인중학교)
- 2) 통합교육 중심 학교 운영: 6교(유 3개원, 초 1교, 중 2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 나) 장애 인식 개선 학생 동아리 운영: 11교(고 11)
 - 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 133교(유 26원, 초 84교, 중 23교)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학교 찾아가는 장애 공감 문화 공연: 40교(고 40)
 - 나)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6개원, 7학급
 - 다) 찾아가는 장애공감(인형극)교육: 34개원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전직원 대상 장애 공감 문화 연수 실시
- 다) 공사립 관리자 대상 장애 공감 연수
 - 교장 488명(유 107명, 초 216명, 중 82명, 고 77명, 특수 6명)
 - 교감 439명(유 79명, 초 150명, 중 117명, 고 86명, 특수 7명)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인권지원단 구성: 6개단 77명
 - 나)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130교(유 15, 초 40, 중 36, 고 29, 특수학교 10)
 -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3) 특수학급 대상 성·인권교육 실시: 168교
- 4)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329명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강화
- 3)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컨설팅: 89개원 38교

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 확대
- 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수업 지원: 116교 142명, 주 1~2회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일반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5개 교육지원청
- 2)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5교
- 3)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10교, 1,978명
- 4)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인재 프로그램 운영: 36교, 63명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인천형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운영: 18교 24학급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재활복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20교, 25학급)
- 나)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안내
- 다) 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이용 컨설팅 실시: 4개 병원, 1기관 연계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치료(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교육청-5개 연계 구성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전문 보조인력(간호사): 9교 15명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지원: 6교 14명, 병원 1기관 연계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청각장애학생 대상 문자속기 지원: 교 1교(1명)
- 나) 청각장애 통합교육 컨설팅 실시: 6교(유 2, 초 4)
- 다) 통합학급 대상 청각장애 이해교육: 23교(유 2, 초 16, 중 2, 고3)
- 라) 통합학급 대상 수어교육: 20교(초 19, 중 1)
- 마) 시각장애학생 점자교육 및 보행지도: 5교 5명
- 바) 시각장애학생 심리상담 및 진로컨설팅: 6교 6명

3)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1학급
- 나) 원격수업 지원: 스쿨포유 초·중·고 100명(요보호 포함 121명)
- 다) 전문인력: 병원학교 파견 특수교사 1명, 초등 원격수업 특수교사 3명
- 라) 건강장애 담당교사·담임교사 대상 업무지원 및 수시 상담
- 마)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7개 프로그램, 17교 18명

5) 행동중재 지원

- 가) 행동중재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6개단 121명
- 나) 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대상자 선정: 20명(일반 8명, 특수 12명)
- 다) 학생 대상 개별 심리상담·미술·운동 지원: 150명(초 80명, 중 48명, 고 22명)
- 라) 학부모 대상 행동중재 컨설팅: 41명
- 마) 교사 대상 행동중재 컨설팅: 35명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가)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비 재배정: 5개 센터, 50백만 원

나)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6,948명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가) 유치원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73개원 119학급

나) 초등학교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5교 5학급

다)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9교 33학급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공사립 학교 737명

나)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계획 수립 안내(3월)

다) 장애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1,315명

라) 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320명

2) 치료지원 내실화

가)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5,394명

나) 치료지원 가맹점 모니터링: 치료지원 내용, 기록 관리 등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치료지원: 언어치료 80명, 작업치료 9명

3)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가) 장애학생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407회

나)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대여 플랫폼 구축: 인천시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47대, 1,192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390명(252교)

아.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 운영: 10교

2) 특수학교 재난대응교육 실시: 10교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장 점검: 1회, 10교

자.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마을연계 직업교육 운영: 미추홀학교 1교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4교
 - 다)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8교 47학급
 - 라) 대학형 전공과 운영 확대: 재능대학교 4개 학과, 1~2학년 32명
인하공업전문대학 1개 학과, 1~2학년 40명
- 2) 진로직업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가) 방학 중 「꿈이음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60명
 - 나) 장애학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16교 30명
 - 다) 직업교육 거점 「찾아가는 직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22교 236명
 - 라) 특수학급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팅 운영: 중학교 47교, 고등학교 23교
- 3)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산업체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27교 177명
 - 나) 발달장애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76교 440명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어린이집 재원 5세 장애유아 진단평가비 지원: 1인당 250천 원
- 2) 어린이집 재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월 160천 원
- 3) 장애영유아 담당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4) 특수교육대상유아-교사-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음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희망 조사
- 2) 학기 중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희망 조사(연 2회)
- 3) 교육청 주도의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을 위한 자치 법규 개정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통합학급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레벨 UP! 통합교육’ 실시
- 2)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3) 특수교사 소진 방지 및 마음 챙김 연수 실시
- 4)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5)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진학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 6) 특수교사 대상 장애 인권 연수 실시
- 7) 중도중복장애학생 응급상황 대처 방법 연수 실시
- 8) 특수교육교원 디지털 교육 혁신 연수
- 9) 2022 개정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10) 특수교사 진로직업 역량강화 연수 실시
- 11)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단 및 특수(통합)교육 수업지원단 연수 실시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학생·학부모·교사의 통합교육지원 요구 수렴 및 지원 형태 다양화
- 2)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사례 나눔
- 3) 학교 장애인식 검사 매뉴얼 개발·보급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정다운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 2) 통합교육 중심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유·초·중 통합학급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2)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과밀학급 순회교육 강화
- 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서·행동 지원
- 3)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강사 미채용교 지원

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재활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및 의료기기 지원
-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시각장애학생 점자교육, 보행지도
- 나) 시각장애학생 시기능 평가 및 훈련
- 다) 시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개별 심리 상담
- 라) 시각장애학생 진로·직업 컨설팅
- 마) 시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대여
- 바) 저시력 노트 제작 및 점자 자료 제작
- 사) 청각장애 학생 교과수업 원격 문자 통역 지원
- 아) 청각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및 대여
- 자) 청각장애 통합교육 컨설팅 및 「찾아가는 청각장애 이해교육」 실시
- 차) 청각장애 기초 수어교육

3) 행동중재 지원

- 가) 학생·학부모 대상 개별 심리상담 지원
- 나) 개별 학생 행동중재 사례 관리
- 다)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대상 행동중재 컨설팅
- 라) 특수학급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대학형 전공과 입시 설명회 운영
- 2)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3)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4) 찾아가는 진로취업 컨설팅 운영
- 5) 방학중 꿈이음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 6) 진로 소식지 'My job' 발행

광주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구분	세부 추진 내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4.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3-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4. 순회교육 지원 강화 3-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3-7.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3-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3-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3-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Ⅱ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등 적극 홍보
 -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보급
 - 특수교육 안내자료(리플릿, 포스터 각 1종) 개발·보급: 6월, 보건소, 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배포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영아학급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조기 지원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보급
 - 라)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가)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 지원
 - 나)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다)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2)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담인력 확충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다)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성화하고 전문적 교육 지원 강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배치 유형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총 계
	유	초	중	고	소계	공립	사립	소계	
신설	5	1	2	3	11	0	0	0	11
증설	0	3	2	2	7	16	3	19	26

- 나)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다) 신설 특수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 가)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나)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우선 배치 및 전보 유예 방안 마련

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점자, 수어 등 특수교육 관련 국가 공인 자격취득 지원

나)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다) 특수교육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라) 장애특성과 통합교육 관련 지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목록 마련 및 적용

나)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 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다)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라)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초·중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 프로그램 보급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감, 통합학급 담당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관리자의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연간 3시간 이상 이수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 특히 순회교육 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통합학급 협력수업’ 운영 성과 일반화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나) 교과용 도서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확산
 - 다) 장애 당사자 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권장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장애인의 날(4. 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나)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인력풀 구성 및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장애예술인(단체) 초청공연 등) 지원
-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4)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기반 마련
 - 가)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 실시
 - 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
- 5)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가) 전문가 콘텐츠 개발과 학생, 교직원 공모전,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 나) 인터넷, 방송, 인쇄물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나) 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등 실시
 - 다)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라)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가능
 - 마)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강화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 함양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라)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24)·보급(‘25)
 - 바) 제45회 장애인의 날 맞이 「2025 장애 인권 주간」 운영: 4. 16.~4. 26, 교육감 서한문 발송, 현수막 게시, 교육활동 전개, 계기교육 자료 제공, 신문제작 및 보급, 유공자 표창 전수 등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AI교육 중심의 활용 환경 구축 및 관련 기기 활용 확산
 - 나) 장애학생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콘텐츠 보급
 - 다)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선도교원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 2)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 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
-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 가)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 및 방학 중 장애학생 SW·AI캠프 등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VR·AR 콘텐츠, AI 로봇 등 에듀테크 기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실감형 체험교실’ 등 활용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메타버스(가상공간)’ 운영 및 ‘실감형 체험 콘텐츠’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 교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맞춤형·참여형 교육지원 확대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2) (일반학교)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가)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나)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보급을 통한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
-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 등 실시
 -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 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5)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구성
 - 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학기마다 실시
 - 라)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사본(원본대조필) 송부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가)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나) 교육과정과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안내 자료 보급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 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재택 순회교육 실시
 -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순회교육 실시
 - 다) 순회교육 담당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와 내용 결정
 - 라)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건강장애학생 포함)
 - 마)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나)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다)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건강증진 도모
- 나) 관계기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개발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다) 지역 및 장애 영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라)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 제공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확대
-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관련 직무연수 실시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 6.)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나)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다)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 지원인력 배치·확대
 -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 건강·안전에 관련 컨설팅 제공
 -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라) 의료 지원인력을 통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실시
 - 마)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 학습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설치·운영
 - 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역할 강화
 - 다)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라)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마)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환경 등 교육실태 파악 및 적절한 교육 지원 강화
 - 바) 청각장애특수학교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수어 연수 및 학생 수어 교육 강화(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
 - 사) 시청각장애(deaf-blind) 학생 평가지원 자료집 현장 활용 지원('24., 광주광역시 교육청 개발)
-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학마을 병원학교 1학급 운영
 - 병원학교 위탁 운영: 여미사랑 병원학교(화순), 느티나무 병원학교(나주)
 - 나) 건강장애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안 마련 및 위탁교육의 경우 개학 이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 다) 병원학교 학생 등을 위한 대학생 보조강사 및 전문상담 지원
- 5) 행동중재 지원
 - 가)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해 체계적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전문가 연계 강화 및 지원 환경 조성 확대
 - 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학부모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대학 연계 실습중심) 및 프로그램 운영
 - 다)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강화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 가) 장애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 나) 교육청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2) 초등 늘봄학교 연차별 확대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
 - 가)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따라 현장 중심 방문·점검·컨설팅 등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
 - 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련, 늘봄지원실 또는 늘봄지원센터에 늘봄 행정업무 이관 및 행정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다) 늘봄학교 전담체계 구축에 따라 특수학교 늘봄연구사 배치·운영
 - 라) 늘봄허브 내 교육청 개발 늘봄학교 프로그램 탑재 및 기관·개인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검증 인력 편성 및 운영
- 3)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방과후 프로그램 발굴·운영 확대
 - 가)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 나)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에 의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지원
 - 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학 중 통합 프로그램 운영
- 4) 장애학생 맞춤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및 방과후 참여를 위한 지원인력 지원
 - 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환경 구성 및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다) 안전한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5) 지역사회 늘봄 및 방과후·돌봄기관 연계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및 돌봄 해소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추진
- 6)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적성을 계발하고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 나) 교내강좌 개설 및 위탁, 개별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2)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다)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1) 사회복지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2)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 2) 치료지원 내실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지원 강화
 - 나)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 다)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실시
- 3)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 가) 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다) 각급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담당자 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가)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나)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다) 장애학생 등·하교시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강화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가)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나)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점검 강화
 - 나)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다) 특수학교(급)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라)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 마)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에 간이체육시설, 체육관 등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피해 예방
- 4) 특수학교 학생 안전 관리 강화
 - 가) 특수학교 학생 생활지도·관리 방안 및 대책 마련
- 5)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가)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정 일자리’ 창출
 - 나)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다)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마)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1)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2022. 6. 29.)
- 2)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6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기관 포함)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실시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나.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생애주기별 전환교육프로그램 장학자료 개발·보급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 2)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통학구역(학구) 기준에 따른 학생 배치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 2)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추진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 교육지원단’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참여
- 2) 통합학교 교(원)장·감의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실시: 3시간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실시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실시
- 2)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특수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실시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특수교원 연수 실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 및 순회교육 실시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
- 2) 장애학생 실내악단 구성 및 운영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컨설팅 실시 및 협력 지원

- 2)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컨설팅 실시
- 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지원
- 4) 건강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5) ‘행동지원 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 중재 및 컨설팅 제공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초등학교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 및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2)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및 지원
- 3)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카드제 도입 관련 정책 협의회 운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으로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2)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지원비 지원
- 3)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4)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실현

목표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원 체계 강화

중점 추진 과제

1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 2-1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 2-2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 2-3 특수학교(급) 확대
- 2-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2-4 장애학생 인권 내실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 3-1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3-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3-3 순회교육 지원 강화
- 3-4 장애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 3-5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 3-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교육편의 지원 강화
- 3-7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4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문화

- 4-1 진로역량 개발 지원
- 4-2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4-3 디지털 역량 강화
- 4-4 문화예술·체육 활동 내실화
- 4-5 놀음학교 및 방과후교육 지원 활성화

Ⅱ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가)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 리플릿 안내(연 2회)
 - 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검사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이 있는 특수학교(4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지원실 운영(3센터, 4실)
 -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 가족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 교원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 다) 유치원 특수학급(62학급) 및 통합유치원(1개 원), 통합교육 거점유치원(2개 원) 운영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하기’ 연수 운영(2센터)
 - 나)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치원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 및 관리
 -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무상(의무)교육 리플릿(2회)

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 1)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및 졸업 시까지
- 2)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 가)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대병원, 다빈치병원,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립세종수목원, 대전광역시가족센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정보문화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 나)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 특수교육원: 특수교사 연수, 진로·직업교육,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유아교육 및 치료지원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3)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총 57명) 및 전담 인력 배치
- 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운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연구학교 가산점 제공)

4)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상담 제공
-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다) 진단·평가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3회)

다. 특수학교(급) 확대

1) 특수학교 신·증설

- 가) 과밀학급 축소를 위한 특수학교 학급 증설(6학급)
- 나) 지역별 불균형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1교)
-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가칭서남학교, '29. 3. 개교 예정)

2) 특수학급 신·증설 및 다양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8학급)
- 나) 교육·치료·돌봄 병행을 위해 재활병원* 내 학급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
* 협력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5학급), 대전웰니스병원(2학급), 대전보람요양병원(1학급)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 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가) 공간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이 불가능하여 설치 기준 초과 학급에 협력교사* 추가 배치(12교)

* 순회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 강사 등

- 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교원 중 보직교사 증치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특수교육 교사학습공동체 공모·운영(8팀, 71명)
 -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교사 연구회(6팀, 59명)
 - 행동중재 지원 학습공동체 운영(4팀, 40명)
- 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1회)
- 다) 교사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위한 신규 특수교사 직무연수(3~4월)

- 라) 직업교육 역량강화 연수(4월), 직업교육 담당교사 심화연수(2회)
- 마) 보완대체 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수(6월)
- 바) 행동중재 지원 역량 강화 연수(기초 7월, 심화 8월)
- 3)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사 마음 챙김 연수(5월, 6회)
 - 나) 특수교사 정서 지원 연수(10월)
- 4) 현장 지원 중심 특수교육 맞춤형 장학 자료 개발(2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가) 장애유아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2개 원)
 - 나) 거점형 통합교육지원실 운영(2교, 3센터), 통합교육지원단 운영(4팀)
-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교육 만족도 제고
 - 가) 과밀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현안 발생교 순회교사 수업 지원(11교, 주 2회)
 - 나) 시각, 청각장애학생 대상 통합교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장,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유치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운영
 - (관리자) 통합학교 교(원)장 특수교육 이해 연수 이수(6월, 3시간)
 - (통합학급 교사) 통합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원격직무연수(8개 과정, 특수·일반교사 450명)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 가)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 우리반' 운영(5교)
 - 나) 일반·특수교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5팀, 38명)
 - 다)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2개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1팀)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학교(급) 방문 ‘찾아가는 장애인해교실’ 운영
- 나) 행복동행버스 이용 학급 단위 특수교육원 방문 ‘찾아오는 장애공감교실’ 운영
-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운영 확대
 -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6교)
- 4) 장애인식개선 홍보(연중) 및 특수교육 이해 라디오 캠페인(5~6월, 150회)

라. 장애학생 인권 내실화

- 1) 인권침해 대응 체제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상시 감지체계 운영
 - 나)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내 업무담당 및 지원인력 배치
 - 업무담당 교사(특수교육원·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상담교사(특 2교)
-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3팀)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교육 실시
 - 나)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 권장 안내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대전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일부개정 고시('24.10.)
 - 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고시 외 과목 개설 안내(5월)
 - 다)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나이스 교무업무 기능 개선사항 활용, 장애학생 평가조정, 통합교육 운영 등 안내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17명)
- 3)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2월)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생맞춤 선택형 교육과정 모델학교 운영(2교)
 - 다)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교사연구회 운영(6팀)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수립
 - 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법적 요건 이행 및 보호자 참여 보장 안내(3월, 8월)
 - 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원) 대상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점검(12월)
 - 다) 특수교육원(지원센터), 거점형 통합교육지원실 등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관리

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대상 선정 및 지원
 - 가) 일반학교 순회학급(14학급), 병원학교(1학급), 병원과건학급(9학급)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자 가정·병원·복지시설 방문 순회교육 지원(주 3회 이내, 80명)
 - 다) 순회교육대상학생 급식비 지원(69명)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담당교사 연수 및 복무 관리 지도
- 3) 특수학교(급) 교사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및 출장 시 수업 지원(6명)

라. 장애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51명)
 - 나)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노력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병원 소속 간호사가 학교 방문 및 교육활동 시간에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가래 흡인, 경관영양 등 개별 맞춤형 의료적 지원(3교, 10명)
 - 나) 기관 연계 특수교사·물리치료가 학생 운동 발달 프로그램 운영(특 1교)
 -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지원 사항 포함
-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1센터)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단평가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 나)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학급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장애이해교육 운영
 - 찾아오는 시각장애이해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교 청각장애학생 실시간 원격 문자 통역 지원(5명)

- 시·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및 보호자 교육 운영, 보조공학기기 지원
- 다)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시각장애학생 대상 시기능, 점자, 보행 수업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 청각장애학생 대상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소아암 병동 내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 교원 배치(충남대학교병원, 1명)
- 나)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협력학교: 대전대신초)
- 다) 초등학교 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화상수업 운영(초등교사 1명)
- 라) 원격수업 운영 위탁기관 연계 교육 지원(스쿨포유 44명, 꿈사랑학교 6명)
- 마)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6월)

5) 행동중재 지원

- 가) 특수교육원(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3개 기관)
- 나)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특 6교, 3개 기관)
 -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3개 기관)
 - * 행동중재전문가, 교수, 의사, 특수교사, 치료사, 상담사 등
 - 개별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행동분석전문가 연계 사례분석 및 중재 계획 수립·운영(30명, 210회)
 -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특수교육원, 12명)
- 다)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교원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 지원
 - 행동중재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및 연수 운영(기초, 심화)
 - 장애학생 위기행동에 대한 교사 컨설팅 지원(11명, 14회)
 - 행동중재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및 임상실습 지원(4명, 1,260시간)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578명)

- 가)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나)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연수*(2회)
 - * (기간) 하계 7. 29.(화)~ 31.(목), 동계 '26. 1. 27.(화)~ 29.(목)
 - (형태) 집합 및 원격(실시간) 연수

2)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교육(187명)

- 가)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나)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운영(방학 중)

- 3) 기숙사 생활지도원, 수어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 가) 대전맹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4명)
 - 나) 수어통역사 운영을 통한 청각장애학생 맞춤 지원(1교, 1명)
 - 다)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대학 연계 교육봉사 운영(8교)
- 4) 치료지원 내실화
 - 가)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 약정 체결(31개 기관)
 - 나) 신규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 점검(1회)
 - 다)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력병원 심층 평가 및 진단·평가팀 운영(매월)
 - 라)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 운영 실태 정기 현장 점검(72개 기관)
- 5)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 가)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통합시스템* 운영(1개 원, 3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유한 기기를 특수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일괄 대여
 - 나) 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운영(1회)
 - 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편의 지원

바. 특수학교(급) 안전 역량 강화

- 1)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운영 지원
 - 가) 재난 대응 조력자 지정 제도(Buddy System) 운영
 - 나) 학교 내 비상(호출)벨 설치·활용으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 강화
- 2)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및 교출(가출) 대비 계획 수립·운영 지원
 - 가)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보호 인력 배치 및 통학 환경개선
 - 통학 지원인력(특 6교, 70명), 노후 통학버스 교체 및 차량 증차(특 3교, 4대)
- 3) 관할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및 재난 상황별 안전 대피 훈련 실시

4. 장애학생 교육 기회 확대

가. 진로역량 개발 지원

- 1)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특수교육원 기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강화(진로중심교사 23명)
 - 다)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및 체계적 관리
- 2)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가)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계획 포함

- 나) 현장실습의 활동유형, 절차, 범위, 시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 4)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등 수준별 전공과정 운영(6교, 37학급)
- 5)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대전해광, 대전원명, 대전해든 3교)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2)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체계 강화
 - 가)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기회 확대
 - 나)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 다)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전문인력 배치(취업지원관 3명)
 - 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교육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연 2회)
- 3) 지역 내 참여 일자리 확대('25년 9명 신규 채용)
- 4)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학생보호 및 진로 직업교육 운영
 - 나) 현장실습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정부(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참여

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내실화

- 1) 문화예술활동(35교)·체육활동(5교), 체육동아리(6교) 학교 자율 운영 확대
- 2)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음악회' 운영(4월, 595명)
- 3)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연계 통합형 '친구사랑 해양캠프' 운영(6월, 26명)
- 4) 특수교육대상학생 끼발한 밴드 및 '2025 꿈끼팡팡! 끼발한 발표회' 운영

라.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 지원 활성화

- 1) 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6교)
- 2) 특수학교 늘봄지원 실장(2교, 2명) 및 지원인력 배치(4교, 4명)
- 3)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학급 운영(41학급)
- 4) 유·초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유 4개원, 초 2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담당교사 연수
- 나. 특수교육원 부속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운영(7월~)
 - * (주요 업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련체험 및 행동중재 지원, 장애이해교육 등
- 다.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중(중앙투자심사 10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2학기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10학급)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가.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이해 연수(6. 24.), 통합학급 담임교사 원격연수(연중)
- 나. 모든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결과 조사(12월)
- 다. 유치원 통합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거점형 통합교육유치원 성과공유회(12월)

3.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및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설 지원(7월, 특 1교)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7월, '26. 1월, 각 24시간, 대면·비대면)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교 컨설팅 및 점검(9~10월)
- 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11~12월, 특 1교)
- 마.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생맞춤 선택형 교육과정 모델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교사연구회 사례 나눔 운영(12월)
- 바.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및 운영 사례 나눔 성과보고회(12월)
- 사.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점검(12월)

4. 장애학생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 전공과 선발평가(10~11월)
- 나. '2025 꿈끼팡팡! 끼발한 발표회' 개최(11월)
- 다. 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사례 나눔(12월)

울산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교육비전: 모두를 위한 통합의 울산 특수교육

2. 교육목표

- 가. 촘촘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 실현
- 다. 특수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탄탄한 교육환경 조성

3. 추진방향

-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주요내용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화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협력기반통합 교육여건조성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순회교육지원 강화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지역사회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고등교육 기회확대 ■장애성인평생교육 지원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2)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강화

- 가) 영아의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5명

3)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강화

- 가) 의무교육비 지원: 공립 월 30천 원 이내, 사립 월 100천 원 이내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 35명
- 다) 특수교육실무사 및 지원인력 배치: 실무사 42명, 사회복지무원 31명
- 라)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운영시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4)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3팀
- 나)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 다) 2025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실시: '25. 6~8.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설치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상담전화	역 할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55-6601	센터운영·통합교육·장애이해교육 총괄, 특수학교 및고등학교 특수교육 지원
울산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	219-5790	강북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울산강남 특수교육지원센터	227-6604	강남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2) 시설 현황

구 분	사무실	진단 평가실	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	학부모실	조기 교육실	기타	계
			센터내	거점	센터내	거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	6	·	2	·	·	6	16
울산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9	·	·	1	1	·	·	13
울산강남 특수교육지원센터	2	1	4	3	1	·	1	1	1	2	16

3) 인력 배치

구 분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임상 심리사	직업 재활사	치료사		행정 일반	기타	계
						재활	심리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1	2	9	1	1	4	·	2	2	22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1	19	·	·	15	3	·	2	40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	1	17	·	·	13	2	·	1	34
계	1	4	45	1	1	38		2	5	96

라.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신설: 11학급(유 3, 초 4, 중 4)
- 2) 특수학교(급) 증설: 17학급(초 11, 중 2, 고 1, 특수학교 3)
- 3) 특수학급 설치 현황: 설치율 75.8%(설치학교: 238교 / 전체학교: 314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37	45	110	190	54	77	37	58	238	370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가)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나) 학교급별 통합교육 및 학급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다)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과정 연수 실시
- 2)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가) 교육청, 학교 단위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나)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 자율적 수업연구회 운영지원
- 3)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승진가산점 등)
- 4) 특수교육교원 연수기회 확대: 국립특수교육원, 울산교육연수원 등
- 5) 교원치유센터 연계운영, 산림복지프로그램 활용연수 등 마음회복 연수 운영

바.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 1) 학교 및 교사 수요자 지원 중심의 컨설팅 실시
- 2) 특수교육 맞춤형 컨설팅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연중, 3팀, 필요시 수시 현장 컨설팅 지원
 -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지원: 39교 59명 지원
- 2)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통합교육 중점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 가)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1교 운영
 - 나) 통합교육 선도학교 정다운학교 19교 운영
 - 다)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원교사 배치확대(10명→20명)
-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내실화
 - 가)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건강장애지원, 시·청각 거점운영
 - 나)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집합연수: 2회, 632명
 - 나)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이수 권장
- 2)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통합학급당 연 15만 원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이상 의무 실시
-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3)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5개 프로그램 운영, 35교 57회 지원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 3팀 44명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1) 특수학교(급)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기별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특수학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기기 확충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나) 장애학생의 정보화 교육 장소 제공(교육정보실, 여가문화체험실)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1팀 8명
-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 가) 학생참여형 수업, 교내외 진로체험 자원등을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
- 3)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1팀 8명
 - 나)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다.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구분	자격 구분			소속
	유치원	초등	중등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2	7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9	7	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8	6	3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2) 특수학교 체육 교기 운영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종목	볼링	역도	육상	수영, 역도, 스키

- 3) 전문직업인양성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5개 위탁운영(음악, 미술)
- 4)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4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2)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 학교복귀를 위한 원격수업 제공
 - 나) 원격수업 지원: 스쿨포유(20명), 꿈사랑학교 위탁운영(24명)
-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시·청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청기, 송수신기 등 지원

나) 시각대체교과서 지원

4)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연중, 3팀

나) 특수학교 행동중재전담교사 배치(4교 10명)

5)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가) 유치원특수방과후과정 편성 운영: 43학급 162명

나) 초등 늘봄학교 운영: 늘봄학교 확대시행에 따른 현장 방문·컨설팅 지원

다)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특수학교 4교, 69강좌

라)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개인별 방과후교육 수강(1인 월 12만 원 이내지원)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치료지원 내실화 및 심리상담 지원 강화

가) 학교재활지원: 재활사가 해당 학교에서 주 2회 재활지원

나)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월 16만 원 이내 전자카드 결제

다) 심리상담 지원: 1인 10회기,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및 그룹지원

- 치료 및 심리상담지원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치료지원학생	117	717	318	201	1,353
심리상담지원	7	183	136	45	371

2)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시스템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현황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종류		보유현황	종류		보유현황	종류		보유현황
보조 공학 기기	시각장애	10종 86개	보조 공학 기기	시각장애	8종 22개	보조 공학 기기	시각장애	4종/25개
	청각장애	11종 55개		지체장애	74종 108개		지체장애	6종/20개
	지체장애	16종 102개		청각장애	5종 5개		청각장애	1종/1개
	의사소통장애	3종 12개		의사소통장애	7종 19개		의사소통장애	7종/7개
진단평가 도구		36종 42개	진단·평가 도구		18종 241개	진단·평가 도구		7종/31개
직업평가 도구		16종 31개	교재·교구		19종 3163개	교재·교구		5종/277개
성교육자료		2종 2개	도서		7종 2,552개	도서		24종/844권
교재·교구		285종 424개	직업훈련교구		1종 9개	직업훈련교구		6개
스마트러닝 기기	태블릿PC 111대 노트북 31대		성교육자료		1종 57개	성교육자료		1종/11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 12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36개
			신체운동활동자료		14종 26개	신체운동활동자료		9종/22개
			컴퓨터활용 CD자료		76종 157개	컴퓨터활용 CD자료		1개
			기타		4종 16개			

3)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계
2025년	423	18	295	736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신규채용자(30시간 이상), 기존인력(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

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신규배치 사회복무요원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 기존 사회복무요원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직무교육 실시

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가) 장애학생 안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25년도 예산확보

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나) 특수교육대상자 차량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6)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 통학환경 개선

나) 재난대응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다) 학교별 재난상황별 취약요인 분석 후 학교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4.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 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지원

- 대상: 중, 고 특수학급
- 내용: 제과제빵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운영 지원
- 방법: 지원센터 및 거점학교 직업교육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활용

나)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 내용: 직업교육·현장체험활동 지원인력 여비, 교육 운영비 등 지원
- 지원액: 특수학교 전공과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급당 1,700천 원(81학급)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 가) 울산혜인학교(2011년 선정) 학교기업 설치·운영
 - 나)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업체)와 협약, 연계운영
- 3)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교육청카페 ‘청마실’ 운영
 - 대상: 전공과 학생
 - 내용: 카페 ‘청마실’ 실습을 통한 바리스타 등 서비스업 현장실습
 - 나)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장 운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일반사업장 일자리 현장실습
- 4) 장애학생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 가) 지원고용 사업을 통한 장애학생의 실질적 취업 기회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사후지도 강화
- 5) 특수학교 장애극복활동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나) 프로그램 내용: 현장학습, 건강증진프로그램, 타지역 견학활동 등

나. 고등교육 기회 확대

- 1)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체험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가)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대학생활체험 운영(3회, 47명)
 - 나) 대학진학설명회 운영(6. 15.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80여명 참석)

다. 장애 성인 평생교육 지원

- 1)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초·중등교육 지원
-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대상영아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정보 지속 홍보
- 2)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비 지속 안내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강화

나.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1) 울산특수교육원 설립추진: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관련부서 협조
- 2)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추진: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관련부서 협조

다.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실시('25. 6.~11.)
- 2) 특수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한 자율장학 지속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통합교육 중점학교 컨설팅 지원
- 2) 통합교육 연구학교 성과 공유회('25. 12.)
-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속 지원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5개 프로그램, 27교 39회 지원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공모전 개최('25. 6.~7.)
- 3)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작품 온·오프라인전시회 개최('25. 10.)

다. 장애학생 인권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속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지원
- 2) 긍정적행동지원팀 지속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관련 컨설팅 제공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2025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 '25. 9. 전국대회 참가, 35명 예정

나.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 1)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서 수립안내 및 자체점검 결과제출: '25. 10.
- 2)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지원

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2025년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치료, 심리상담, 지원인력, 통학비 등)

- 1) 치료지원 내실화 및 심리상담 지원 강화

- 가)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상시 신청(월 16만원 이내 전자카드 결제)
- 나) 치료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25. 7.)
- 2)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 '25. 5.~10. 6회기 운영
 - 나) 청각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 '25. 4.~9. 4회기 운영

4.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다양한 현장실습 및 직업교육을 위한 사업체 개발
- 2) 2025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 참여('25. 10)
- 3)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진로 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 추진 방향

가. 비전: 특수교육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의 미래 모델 실현

나. 목표

- 1)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 2) 미래를 열어가는 특수교육 교육환경 조성
- 3)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 책무성 조성

2. 중점과제

가. 특수교육 함께돌움교육과정

- 1) 함께돌움교육과정 운영
- 2) 장애영유아교육지원
- 3)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나. 특수교육 미래체제 구축

- 1)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2) 통합교육지원 내실화

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 1) 질높은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 2) 방과후 교육 및 돌봄 운영
- 3)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Ⅱ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교육 지원

- 1)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 가) 장애영유아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비 지원(33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나) 지역사회 기관 협조체제 구축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 가)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순회교사(4명) 지원
 - 나) 장애영유아 순회교사 수업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
 - 다) 어린이집 교사 통합교육 연수 운영
 - 개별화 교육지원계획(월1회 이상)
 - 장애인권 및 문제행동지원
- 3)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 토요 가족지원 프로그램 연계 장애영유아 가족 프로그램
 - 나) 장애영유아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 장애영유아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한 가정당 10회기 이내, 5가족)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함께돌움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2025 특수교육 함께돌움교육과정 운영지원단 구성
 - 유·초·중등교원 급별 4명 총 12명 이내로 구성
 - 함께돌움교육과정 및 개별화교육지원 계획 수립 컨설팅
 - 2025 특수교육 함께돌움교육과정 현장 적용 연수(2월)
 - 나) 문화 예술 체육 중점·진로와 직업 중점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예산 지원
 - 읍면지역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육 강사 지원
 - 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지원단 구성(7명) 운영 및 컨설팅(11월, 특수학교 2교)
 - 라) 지역사회 연계 두드림(방송댄스), 볼링 동아리 운영(2개 종목, 23명)
 - 마) 문화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 예술 강사 지원(특수학교 2교 강사 8명)
 - 바) 체육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과정 연수 운영(18명)
 - 사) 토요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축구, 보치아 등 7종목, 46명)

- 2) 2026학년도 특수교육 함께돌봄교육과정 지침 개발
 - 가) 2026학년도 특수교육 함께돌봄교육과정 개발 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유·초·중·고 특수학교(급) 교사 및 관리자로 구성(4월~12월)
 - 나)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총론 2.0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한 편성·운영 지침 개발
 - 다) 함께돌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보급
- 3) 문화예술·체육 중점·진로와 직업중점 교육과정 운영
 - 가) 중점학교(문화·예술·체육,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특수학교 2교, 강사 8명)
 - 세종이음학교, 세종누리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예산 지원
 - 읍면지역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육 강사 지원
 - 문화 예술 중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나) 토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볼링, 보치아 등 16개 프로그램, 136명)
 - 다) 체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과정 연수 운영(18명)
 - 라)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총 24개 메달 획득(금 8개, 은 11개, 동 5개)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영유아 통합교육지원 강화
 - 가)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를 함께 통합하여 교육하는 통합유치원 설립 협의체 구성
 - 나) 통합교육 질적 확대 방안을 위한 현장교사 의견수렴
- 2)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 지원단 역할 활성화 방안 마련
 - 특수교육대상 학생 포함 시 통합학급 적정 학생수 방안 마련
 - 장애영역별 특성에 따른 통합지원 컨설팅 실시
 - 나) 정다운학교 운영 모델 다양화 방안 마련
 - 프로그램 중심의 정다운학교 운영
 - 협력강사 운영을 통한 정다운학교 운영(4월~12월, 초등학교 시범 운영)
 - 다)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10학급)

나.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활성화

- 1)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 프로그램 보급 및 장애인식 수준 추이 분석
- 2)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활성화
 -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 나) 학교(급)별 전문가, 특수교사, 일반교사로 구성
- 다) 통합학급 수업, 장애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 지원

다. 특수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특수교육관련 연수 참여
 - 나) 학교급별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원격연수(15시간 이상) 수강 및 대면연수 강화
 - 다) 통합교육 및 장애공감문화 관련 연수 과정 운영 지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질 높은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학생 월 평균 805명(학생 1인당, 월 16만 원 지원)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 재활 순회 지원(총 56명)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심리적응행동훈련, 직업치료 영역 확대
- 4)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 가)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12학급 신증설)
 - 나) 특수학급 신·증설시 환경구성비 지원
 - 다) 법적 정원 초과시 특수학교(급) 신증설 원칙
- 5)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지원
 - 가) 원거리 특수교육대상학생 월별 통학비 지원(월 평균 237명)
 - 나) 읍면지역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차량지원(17교)
- 6)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4~12월, 13개 프로그램, 906명)
- 7) 학부모 자조모임(특수학교 2교, 자조모임 3곳)
- 8) 학부모 힐링 연수 지원(3개 프로그램 72명)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1) 맞춤형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 가) 중증장애인일자리 근로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 (연 2회)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자격취득과정 운영(3~12월, 14교)
 - 다) 찾아가는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중2학년(7명), 고 1, 3학년(31명)
 - 라)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일배움과정, 심화체험) 프로그램 운영(121명)
- 2)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및 학교내 일자리
 - 가)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운영(4명)

- 보비스쿵(카페), 세종시가죽센터, 세종도화(제과·제빵)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산업체 연계 현장 실습 기관 발굴(22업체)
- 다)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 지원(도서관보조원 9명, 청소보조원 8명, 장애인 예술단 2명)
- 라) 장애인일자리지원단 운영(3~12월, 21회)
- 마)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7월, 11월 연 2회)
- 바) 학교 내 일자리 운영(세종누리학교, 세종이음학교, 종촌고, 세종고, 8명)
- 3) 장애학생 대학입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나사렛대, 대덕대, 7명)
 - 나) 진로교육원 연계 대학진학상담 프로그램 운영(14교, 18명)
 - 다) 진로교육원 연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37교, 152명)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중심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가. 질높은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 1) 치료 지원 내실화
 - 가) 학교로 방문하여 학교 일과 시간 중 언어재활 실시
 - 나) 이용패스 제도 안내를 통한 통학비 중복지원 최소화
- 2)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방법 검토
 - 가)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 나) 늘봄학교와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과의 중복 여부 확인 및 대책 수립
- 3)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 가) 전문상담기관 연계 학부모 개인상담 지원
 - 나) 장애유형별, 가족별 특성을 반영한 토요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확보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 가)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 상담 제공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가)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언어재활사, 취업지원실무사 연수비 지원

- 나) 순회교사 검사 방법 및 해석 연수(3월) 및 중증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수(8월)

2. 통합교육 질적 지원 강화로 미래특수교육 체계 구축

가.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가) 세종시 관내 특수학급 수요를 고려한 신·증설 추진
 - 나) 법적 정원 초과시 특수학교(급) 신증설 원칙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교육권 보장 체제 구축
 - 가) 세종 제3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실시
 - 나) 세종특수교육원 개원('26년 7월)에 따른 체험공간 구성안 마련
- 3) 특수학교(급) 꿈마루 교실 지원 확대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중심, 진로 중심의 학습 공간 구성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안정 환경 구축(3교, 6천만 원)
 - 유치원: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구성
 - 초등학교: 생활중심 교육공간 구성
 - 중·고등학교: 진로흥미탐색 중심 교육 공간 구성

나. 통합교육지원 내실화

- 1)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가) 영유아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통합유치원 설립 협의체 구성
 - 나) 영유아 통합교육 질적 확대 방안을 위한 현장교사 의견 수렴
- 2)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 지원단 역할 활성화 방안 마련
 - 나) 정다운학교 운영 모델 다양화 방안 마련(2025. 4. ~2025. 12. 9개월)
- 3) 맞춤형 장애이해교실 운영
 - 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인권교육 포함 장애이해교육 연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찾아가는 장애인예술단 및 장애이해교실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1)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내실화
 - 가)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지원 강화

- 나) 청각장애학생 소속학교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수어 연수 및 학생 수어 연수 교육 강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 가) 교수, 행동지원전문가, 의사, 장학사, 특수교사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행동지원단 운영
 - 나) 행동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실시 및 임상실습(4명)

나. 개별성장 맞춤형 늘봄(방과후 및 돌봄) 운영

- 1)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방과후 및 돌봄 교육지원체계 강화
 - 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1인당 16만 원 내 실비 지원, 600명 이상)
 - 나)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학교(급) 늘봄학교 운영 지원
 - 가) 학기 중 저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 나) 초등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학교내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 1) 학교내 일자리 운영을 통한 현장실습기회 확대 및 취업 연계 지원
 - 가) 장애학생 학교내 직무 개발을 통한 졸업 후 일자리 창출
 - 나) 장애인고용공단 협조를 통한 직무지도원 사전교육 운영
- 2)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 성인의 사회 참여 촉진
 - 가) 중증장애인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배치
 - 나) 각급 학교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배치

나. 진로 직업 특화교육과정 및 대학입학지원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찾아가는 직업평가 운영
 - 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를 통한 직업능력 탐색
 - 나) 직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실습지 발굴
- 2) 대학 진학 설계를 위한 맞춤형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운영
 - 가) 대학 및 장애 영역별 컨설팅을 통한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
 - 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 상담

경기도교육청

I 특수교육추진 방향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경기특수교육 실현

정책
방향

- (자율) 수요자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균형) 교육약자를 고려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로 모두를 위한 교육 보장
- [미래] 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체제 구축

4대
추진
전략
·
10개
추진
과제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3개년)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3개년)
-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 강화
-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지원시스템 내실화 (3개년)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3개년)
-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체계 강화

- 가) 영유아 건강검진(생후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 등록 단계까지 맞춤형 조기중재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계 안내 및 연계 강화 추진
- 나) 의료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축 및 협업을 통한 특수교육 안내 체계 확대
- 다) 유보통합 관계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장애영유아 지원 홍보 강화 및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

2)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 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 나)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한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 다)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강화를 통한 장애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및 이음교육 지원
- 라)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마)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대상 특수교육 분야별 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교육-보육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 노력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및 다양화

【경기도 특수학교 설립 계획】

설립 년도	지역명	학교명(가칭)	장애 유형	교육과정별 학급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5	안성	[공립]안성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	-	20
2027	시흥	[공립]시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4	30
	수원	[공립]새빛학교	시각	2	6	3	3	6	20
2028 이후 (예정)	남양주	[공립]남양주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4	36
	고양	[공립]고양특수학교	지적/지체	1	12	12	12	8	45
	부천	[공립]대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2	34
	포천	[공립]포천특수학교	지적/지체	1	6	6	6	2	21

※ 투자심사 추진 시 장애유형 및 교육과정별 학급수는 배치계획에 맞추어 변동될 수 있음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감축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나)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부지 확보(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폐교 부지 활용)
- 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따른 기존의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교 및 기관과 특수학교간 교류를 확대하고 운동회, 예술제, 체험학습 등 특수학교 지역사회 개방으로 지역사회와 공존

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 우선 증설
- 나) 유·초·중·고등학교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설치 추진
- 나) 연령별 운영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추가 배치, 유치원, 초등학교 과밀특수학급 대상 교사 추가 배치 운영

※ 특수교사 배치기준: 유치원(1학급, 5명 이상), 초·중학교(1학급, 7명 이상) 교사 1명 추가 배치

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운영 및 학급당 정원 감축
- 나) 중도중복장애 지원을 위한 교사 배치 확대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1)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 가)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고도화 및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추진(2026. 3. 1.자 개원 예정)
- 나)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담당 업무 총괄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허브 기능 강화

-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및 전문적 교육 체제 지원 강화

* ('24)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개, 행동중재지원센터(한서중앙병원) 1개

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중증)장애	복부 시각·청각	건강장애
거점지원센터	수원	용인	성남	구리남양주	의정부

- 나)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른 분야별*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세분화된 현장 지원 확대
 - * 행동지원, 인권, 상담, 가족지원, 재활, 수어, 점자, 보조공학기기, 보건·의료 등
- 다) 학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상담 운영 등 가족지원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 가) 장애(위험)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상담 제공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직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연 4회) 강화 및 업무 담당자 간 권역별 협의체 조직 및 우수사례 공유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1)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 가) 미래형 디지털 활용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 개발
 - 나) AI-에듀테크 활용 선도교원 양성 및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을 통한 에듀테크 활용 특수교육 지원
 - 라) 의사소통, 정서안정,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활용 확대
- 2)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강화
 - 가)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나)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수업혁신을 위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운영
- 3)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가상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굴·보급
 - 나)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의료기관,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협력을 통한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강화
 - 다)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라) 건강장애학생 등을 위한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 운영 지원 확대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 교육 연계 강화

가) 초·중·고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도내 진로직업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지원 강화

구 분	관련 기관 및 현황
진로직업 지역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 - 미래형 직업교육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파주, 평택) 특수교육지원센터 25청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직업교육 거점 및 중점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6교 -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학교 5교
관계기관 연계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수원, 의정부)

나)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진학설명회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다)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라)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 및 시기 등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안내

2)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가)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로의 점진적 변화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

* 단계적 도입: ('25년) 고등학교 1학년 → ('26년) 고등학교 2학년 → ('27년) 고등학교 3학년

나)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교육과정 운영 지원, 컨설팅 지원 및 개발 자료 안내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나) 미래 체육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 기회 제공 확대

다.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나) 복지·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 교육 실시

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로 장애학생 안전 강화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초),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초·중·고) 교과별 평가자료 보급
 - 나) 특수교육 수석교사 교육과정 지원강화(수석교사 3명)
 -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특수교육 협력강사 500명)
-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 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협력 강화
 - 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학습 자율성·선택권 강화
 - 다) 장애유형·정도,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기반 강화

3.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 1)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 구축
 - 가) 행동중재 전문가(특수교사)양성 확대 및 상시 상담, 중재 지원
 -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집중 지원(한서중앙병원 1개소)
- 2) 행동중재 실행 역량 강화
 - 가) 학생 현장지원 및 행동분석을 위한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및 4단계 맞춤형 지원
 - 나) 특수학교(급)별, 지역별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 다) 학생별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로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 라) 교육공동체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협의체 구축 등 현장 지원 강화

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1) 특수교육 인력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정규교사 확보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73명 증원)
 - 다) 사회복지요원의 전공과 적성, 학생의 장애유형 및 성별(남학생 배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특수교육 치료 및 방과후 지원 운영으로 교내방과후, 꿈이든카드(자유수강권) 등 학생 필요에 따라 사용
 - 나) 지역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 평가조정 규정 마련,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평가조정 시행 등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 3)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가) 수요자 중심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 기관 확충 등 늘봄학교(초등과정) 지원 체계 마련
 - 나) 학습자 중심의 방과후 교육 지원
 - 다)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강화
 - 라) 특수교육 종일반 학급 증설('25년 250학급) 및 운영 내실화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 1)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정책 수립
 -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통한 교육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지속 운영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 ▲ 유·초·중·고 모든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저소득 가정 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제도화
- ▲ 정책적 성찰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실현

-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교) 확대 및 컨설팅 지원
- 2)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 가) 교육지원청별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과 통합교육 탐구수업 공동체 운영으로 통합교육 현장 역량 강화 및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나) 통합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권장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 다)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
 - 라) 특수교사의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역량 강화 연수 및 특수교육 정책실행 연구회 지원 강화

- 라) 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교사 등 대학생 교육 봉사 및 멘토링 역량 강화
- 3)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 가) 개정 교과용 도서 편찬 보급 시, 장애인식 개선 내용 포함 안내 및 교과 연계 장애인식 개선 수업사례 공모전 참여 안내
 - 나) 정다운학교를 통한 협력적 수업 설계안 개발·보급

나.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교육 이수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대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연 2회 이상)
 - 유·초·중·고 학생 및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연 1회 이상)
 - 나)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라)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 체험존, 직접 체험하는 장애이해교육 지원
 - 라)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을 통한 통합 고도화
-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강화 및 긍정적 행동지원 확대
 - 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 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 다) 생활인성교육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위 상담지원, 외부 연수기관, 심리 상담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
 - 라) 특수교육대상자, 교직원,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개발 보급
 - 마)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긴급 현장 지원 및 교육활동 침해 긴급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조직

Ⅲ 향후 추진 계획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유보통합 관계기관(부서)간 협업을 통한 장애영유아 지원 홍보 및 교육-보육 기관 간 교육격차 단계적 해소 노력
- 2)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5. 11.)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25. 9., 1개교 목표 안성특수학교 설립 추진)
- 2)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 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사전 확보

【경기도 특수학교 설립 계획】

설립 년도	지역명	학교명(가칭)	장애 유형	교육과정별 학급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5	안성	[공립]안성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	-	20
2027	시흥	[공립]시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4	30
	수원	[공립]새빛학교	시각	2	6	3	3	6	20
2028 이후 (예정)	남양주	[공립]남양주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4	36
	고양	[공립]고양특수학교	지적/지체	1	12	12	12	8	45
	부천	[공립]대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2	34
	포천	[공립]포천특수학교	지적/지체	1	6	6	6	2	21

※ 투자심사 추진 시 장애유형 및 교육과정별 학급수는 배치계획에 맞추어 변동될 수 있음

- 3) 특수학교(급) 운영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 특수학교(급) 신증설 수요조사 및 확보(유·초·중: 8월, 11월 / 고: 4월 8월)
- 4) 복합특수학급 운영교 확대 및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지원 강화('24년 15개교 42학급 → '25년 26개교 57학급)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인력 강화

- 1)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추진('26. 3. 1차 개원 예정)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연수 및 협의회 운영(연 2회)

2. 미래형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1) AI 기반 성장 맞춤형 플랫폼 구축 및 현장 보급
- 2) 의사소통, 정서안정,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시범 운영 및 사례 공유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점검('25. 4.~11. 자체점검, '25. 12. 결과 제출)
- 2)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3.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별, 지역별 긍정적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급) 컨설팅 지원, 우수 운영사례 발굴·확산
- 2) 개별학생 행동평가·행동중재 데이터 누적 집중 관리

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주기적 업무평가 실시
- 2)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방안 강구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 1)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2)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 1)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적용 무장애 장애이해 체험관* 체험 기회 제공
 * 무장애 시설, 제품, 재활 보조공학기기 등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험관, 교육용 키오스크, 가상현실(VR) 등 확대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초·중등학교 과정별 관리자·교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 미래를 열어가는 더 나은 강원특수교육 〉

1. 기본 방향

-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토대 마련
- 나. 교육공동체 협력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합교육 확산
- 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미래사회로 확장되는 교육 실현
- 라. 지역사회 기반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추진 과제

-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내실화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배치 등 지원
 - 장애유아지도사(31명),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18명) 배치 운영
 - 나) 유치원 특수교육 전공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1명, 원주)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 선택권 및 학습권 증진을 위한 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연도	2024	2025
유치원 특수학급 수	38	42

라)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실효성 제고 및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상호 간의 협업적 교수체계 구축

-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강릉 하슬라유치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2)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광역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구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	춘천	철원
	원주	횡성
	강릉	평창
	속초양양	고성, 인제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정선
	홍천	양구, 화천

3)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 강화를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구분	소재지
강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춘천계성학교 소재
강원시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명진학교 소재

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체제 다양화

1) 개원목표: 2026년 예정

2) 운영 구분: 본원(춘천), 분원(원주, 강릉)

3) 중점기능: 각 지역 특성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라.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축소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2) 특수학급 신·증설 환경개선비 지원: 급당 35,000천 원

(환경개선비: 25,000천 원, 교재·교구비: 10,000천 원)

3)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특수학급 현황	2024년: 419학급 → 2025년: 432학급
특수학교 현황	2024년: 203학급 → 2025년: 211학급

마. 특수학교(급) 노후환경 개선 추진: 28학급 지원(학급 당 20,000천 원 이내)

바. 특수학교 다양화 및 특성화

1)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를 소규모 및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2) 특수학교 재구조화로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추진

구분	학교명	학교형태	비고
1	춘천계성학교	유+초+중학교	기본·공통교육 중점
2	춘천동원학교	고+전공과	직업교육 중점

(※ 2023~2025년 설계 및 공사 → 2026. 3. 1.자 재구조화 완료 예정)

사.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학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교사 대상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 운영
-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운영, 산림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음 건강 회복 연수 운영 등)
- 3) 특수교육담당 교직원 복지지원비 확보로 교육활동 보장(1인당 30만원 이내 실비 보장)
- 4)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사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 5)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더배움공동체」 운영 지원(7팀, 12,000천 원)
- 6)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특 9교)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별 특수교사, 지역사회와 연계한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도 1단, 지역 17단)

- 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확대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 계획 컨설팅
 -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통합 학급당 100천 원,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나) 교육지원청 주관 장애공감 문화 확산 및 협력적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원)장 연수 운영
 - 다)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특히 순회교육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3교, 북원초, 산양초, 양구초)'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1개원, 하슬라유치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계획 반영
 - 나)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정(2019. 12. 27.)
 - 다) 장애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 편성
 - 6학급 이하 600천 원, 7학급 이상 1,200천 원
 - 라) 장애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위원회' 구성 권장

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속초청해학교, 태백라온학교)

바) 인쇄물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가)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수 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나)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장애학생 상담활동 강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나) 정기 및 특별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실시

다)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나)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교원 양성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실시

4)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 중심의 협의체 구성으로 교사용 자료 개발·보급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 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2) 개별화교육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채택순회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확대
- 2)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3)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학교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20학급 이하(교당 12,000천 원), 21학급 이상(교당 15,000천 원)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 지원
- 2) 활동 중심의 특수학교 운동실 구축 지원(원주청원학교, 태백라온학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 강화 지원(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동해요양병원 등)
- 2)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 지원인력 배치(특수학교 간호인력 배치: 동해해솔학교 간호인력 1명 배치)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 확보를 위해 병원학급 신설 지원(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병원학급 운영: 춘천동원학교 협력)
- 4)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적 지원 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지원 등)의 참여와 소견 반영으로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
- 5)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 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 6) 건강장애학생 지원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 교원 배치(강릉아산병원학교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학교복귀 축하케이크, 학교복귀준비꾸러미 등 제공)
 -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 7) 행동중재 지원
 - 도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집중 지원
 - 8)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희망 학생
 - 지원내용: 교내 방과후학교, 위탁형 방과후학교, 방학중 계절학교
 - 지원기준: 150천 원×12개월, 연 1,800천 원(1인 기준)
 - 9) 치료지원 내실화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원방법: 순회치료사 지원, 치료지원비(마음모아카드) 지원
 - 지원기준: 160천 원×12개월, 연 1,920천 원(1인 기준)
 -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10)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지원 및 방과후·돌봄 참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198,042천 원)
 - 11) 장애학생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 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12)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업무 협약(2021. 4. 2.)

바.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늘봄학교 전담체계 구축에 따라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운영
 -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강릉오성학교 1명 배치-동해해솔학교 겸임)
 -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1명 추가 선발 예정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1)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진로체험망)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의 내실화(속초청해학교, 태백라운학교)
- 3)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및 지원으로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의 다각화 촉진(원주 영서고등학교)
-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의 내실화(연수 지원 및 협의체 운영 등)
- 5)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대상: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공과 재학생
 - 지원내용: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38교, 77,985천 원)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72명, 34,996천 원)
- 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도교육청 1단, 교육지원청 17단)
- 7)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권역	거점지역	전환교육지원센터	역할
영서 북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동원학교	- 특수학교(급)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영서 남부	원주, 영월, 횡성, 평창, 정선	원주청원학교	
영동 남부	강릉, 태백, 동해, 삼척	강릉오성학교 동해해솔학교	-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협력 추진
영동 북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속초청해학교	- 특수학교(급) 교사 연수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적극 홍보
- 2)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

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지역 여건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강화

- 도 단위 및 지역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 분석 등 관련 연수 운영(연 2회 운영)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초·중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지수’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단 체계 구축
 - 내실있는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통합교육 실시학교에 적용(2024년) 및 학교 과정별 장애인식 수준 추이 분석(2025년)
- 2)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3)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 4) 교육지원청 주관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원)장 워크숍 운영
- 5)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하는 학생동아리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지원 확대
- 2) 특수교사 대상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및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강화
- 3)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 1) 참여대상: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생
- 2) 지원내용: 진로 선택을 위한 대학생활 정보 제공, 대학 전공 체험, 진학 컨설팅 등 대학생활 직·간접적 체험 프로그램 제공
- 3) 지원대상: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신청학교
- 4) 운영기간: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맞춤형 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충북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다. 맞춤형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 확대

3. 추진 과제

-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전환교육 지원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제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가 양성 교원 연수 추진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거점센터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지원 내실화
 - 나)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10학급) 및 통합형 방과후과정 운영(65학급)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실 운영(5센터, 8명)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가) 장애영유아거점센터 중심 유초이음교육 지원 강화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및 선정·배치 절차 준수

가)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기관 연계 진단·평가 실시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전면 개정 보급(2025. 3.)

2)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처우개선: 승진가산점 및 이동가산점 부여

나) 거점센터 운영 및 인력배치: 행동중재지원센터(4명), 시청각특성화센터(3명)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

가) 특수학교 학급 신증설: 15학급(유 1, 초 4, 중 7, 고 2, 전공 1)(감축 8)

나) 특수학급 신증설: 32학급(유 7, 초 11, 중 13, 고 1)(감축 18)

2) 특수교육기관 다양화·특성화

가) 충북산업과학고 전공과 특수학급 신설 자체투자심사 통과(2029년 입학)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과밀 특수학급에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교사 추가 배치(정원 2명 초과교: 9명)

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역량강화 연수: 통합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위탁), 통합교육 리더교사 역량강화 연수, 행동중재 역량강화 및 전문가과정 연수, 교사교육과정 설계 연수

나) 직무연수 실시: 특수학교(유,초)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규임용자 직무연수,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연수, 특수(통합) 교육 관련 원격연수(위탁)

다) 특수교육 학습공동체(84팀) 및 특수교육연구회, 통합교육연구회(각1팀) 운영

3)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교권보호 프로그램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10센터) 및 유치원 통합교육거점센터(10센터) 운영
 - 나)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 강화 사업(60개 유치원)
-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정다운학교)
-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합교육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반영(유·초 450만 원, 중 550만 원, 고 650만 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통합학교 관리자(교장, 원장, 교감, 원감) 집합 및 실시간 화상연수 추진(646명)
- 2) 일반교사-특수교사 협력 증진 온통프로젝트 운영(10개 학급)
 - 가) 정다운 학교 확대 및 컨설팅 지원 강화(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8교)
 - 나) 정다운 학교 운영 지원 순회특수교사 배치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실시 안내
 - 나)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제5095호) 공포('24.4.5.)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나) 중·고등학생 대상 장애공감 교육용 영화 제작·배포('25.9.)
- 3)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 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안내
 -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권장 안내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 나)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월 1회 이상 인권지원단 정기지원 및 특별지원을 통한 학교 지원
- 나) 유관기관 인권지원단 협의회 및 역량강화 연수 진행(학기별 1회)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나) 각급학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안내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에듀테크 교육지원(특수학교 11교)
 - 나) 특수학교 대상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특수학교 11교)
-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 운영 안내
-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 가) 충북특수교육원 '상상누림체험관' 운영: VR·AR, 코딩로봇 등 에듀테크 체험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운영 및 자료 개발
-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나)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계획 포함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보급 및 활용
 -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나)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평가자료 보급
-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특수학교 일상생활 활동 운영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5)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지원
 - 가) 2025 고교학점제 학교별 담당자 및 현장지원단 협의회(1회, 18명)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 나) 행동지원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사항 IEP포함 안내
- 2) 개별화교육계획 자체점검표 활용 자기점검 및 컨설팅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장애유형 및 특성,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주 3회 이상 순회교육 권장
- 2) 소속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순회교육 실시하여 수업공백 최소화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거점 교육기관 운영(특수학교 11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및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 기준 안내
 - 나) 특수학교 건강권보장사업 추진(특수학교 4교)
-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학습자료 공급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운영(3센터)
 - 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협의회 운영
- 3)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
 - 나) 종합병원 내 병원학교(충북대병원) 운영
 - 다)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청주혜화학교
- 4) 행동중재 지원
 - 가) 충청권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충북특수교육원(전담인력 4명)
 - 나) 행동중재 학습공동체: 지역별 담당자(월 1회), 자격보유자(월 2회)
 - 다) 행동중재지원단 운영:도 단위 1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10센터
 - 라) 긍정적인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7교
 - 마) 행동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연수 일반교원 3명, 특수교원 7명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초등 늘봄학교 연차별 확대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
 - 가) 특수 늘봄학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 1) 특수학교(급) 늘봄(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급) 늘봄(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협의회

- 1) 늘봄(방과후)·돌봄 담당 인력 지원 강화
 - 가)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협의회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집합연수(2월, 77명)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실시간 원격연수(2월, 199명)
 - 다) 특수교육 온나누미(유급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581명)
- 2) 치료지원 내실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1인당 월 14만 원
- 3)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1) 학교안전강화 종합 대책 수립 TF운영(정책기획과 주관, 체육건강안전과, 인성시민과, 창의특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교육활동 보호센터, 총무과, 노사정책과 참여)
- 2) 특수학교 안전 강화 학교장(감) 연찬회 연수 운영(2회, 각 2시간)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 가) 충북특수교육원 발간 ‘학교밖 진로체험로 1번길’ ‘활용 안내
 - 나) 교육관을 활용하여 자립 및 전환교육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지원
 -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3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운영
-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강화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 1) 다양한 진로별 맞춤형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대학 진학 및 진학상담, 대학생할 체험 제공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 자료집 제작 및 대학생할 체험 지원
 - 나)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2회)

- (2) 학교내 일자리 및 현장실습을 위한 취업 안내자료 제작
- 2)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 가) 학부모교육을 통한 학부모 자조 모임의 토대 마련
 - (1) 우리 자녀의 성장스토리(2회, 12명)
 - (2) 학부모 힐링캠프 운영(1회, 30명)
 - 나) 진로전담교사 학습공동체 운영(10명)
- 3)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과 연계 지원
 - (1) 업무 지원 인력 파견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사항 유기적 협력
 - (2) 고등학교 학생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1)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취업처, 장애인관련단체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
 - (2) 장애학생 취업지원 관련 기관간 교류 및 협력(4월, 1회)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가)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학부모 설명회 운영
- 2) 장애위험 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실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확대
 - 나)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연수 운영
-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고도화 연수 운영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설명회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2) 남부3군 전공과 설치 추진
- 3) 과밀 특수학급 정원외 기간제교사 및 운영비 지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교원 자격 및 직무연수: 특수학교 (유치원·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합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장애 영유아 거점센터 연수,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행동중재 역량강화 연수
 - 다) 행동분석전문가 양성과정 연수(10명)
-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치유 연수
 - 나) 교권보호 프로그램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통합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 나)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모두가 협력하는 통합교육 변화 유도
- 2) 통합교육 즉시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온 119' 활성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교(원)장, 교(원)감], 교사
 - 가) 일반학교 관리자 집합(400명) 및 실시간 화상연수(200명)
 - 나) 모든 일반교사 대상 통합교육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
 - 가) 일상적 수업 속에서 구현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나) 장애인권교육 및 온·오프라인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 실태조사 실시,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및 평가회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가) '특수학교발전 자체진단' 연계 에듀테크활용 교육과정 지원
 - 나) 특수교육 맞춤형 장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교육과정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 가)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연수 운영(4회)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AIDT 활용 지원
- 2)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지원
 - 가) 2025.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공유 워크숍(11월, 1회)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학기별 이행점검 실시
- 2) 개별화교육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담당자 협의회 및 연수 운영으로 역량 강화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장애공감문화 형성을 위한 장애공감콘서트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건강권보장사업 추진(특수학교 4교)
 - 가) 청주의료원 협력병원 연계 소속 간호사 배치(1교)
 - 나) 학교자체채용 단시간근로 간호사 배치(3교)
-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모니터링
 - 나) 시·청각 장애학생 실태조사 실시 및 맞춤형 지원
- 3)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충북대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 4) 행동중재 지원센터 및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강화(7교)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초등 늘봄학교 참여 현황 모니터링, 늘봄실무사 대상 연수 운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연수, 실시간 화상연수
- 2)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점검 실시
- 3) 보조공학기기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1) 학교안전강화 종합 대책 수립 및 추진('25년 6월 발표)
- 2) 특수교육 위기학생 지원 강화('25년 6월 발표)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특수학교별 자율적 운영에 기반한 자유학년제 지원
 - 나) 특수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습공동체, 교사연구회 운영 권장
-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운영
 - (1) 청주혜원학교 고3, 전공과 재학생 및 특수학급 고3 재학생
 - (2) 발달장애 학생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 나)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休' 운영
 - (1) 청주맹학교(시각장애) 전공과 재학생
 - (2) 시각장애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컨설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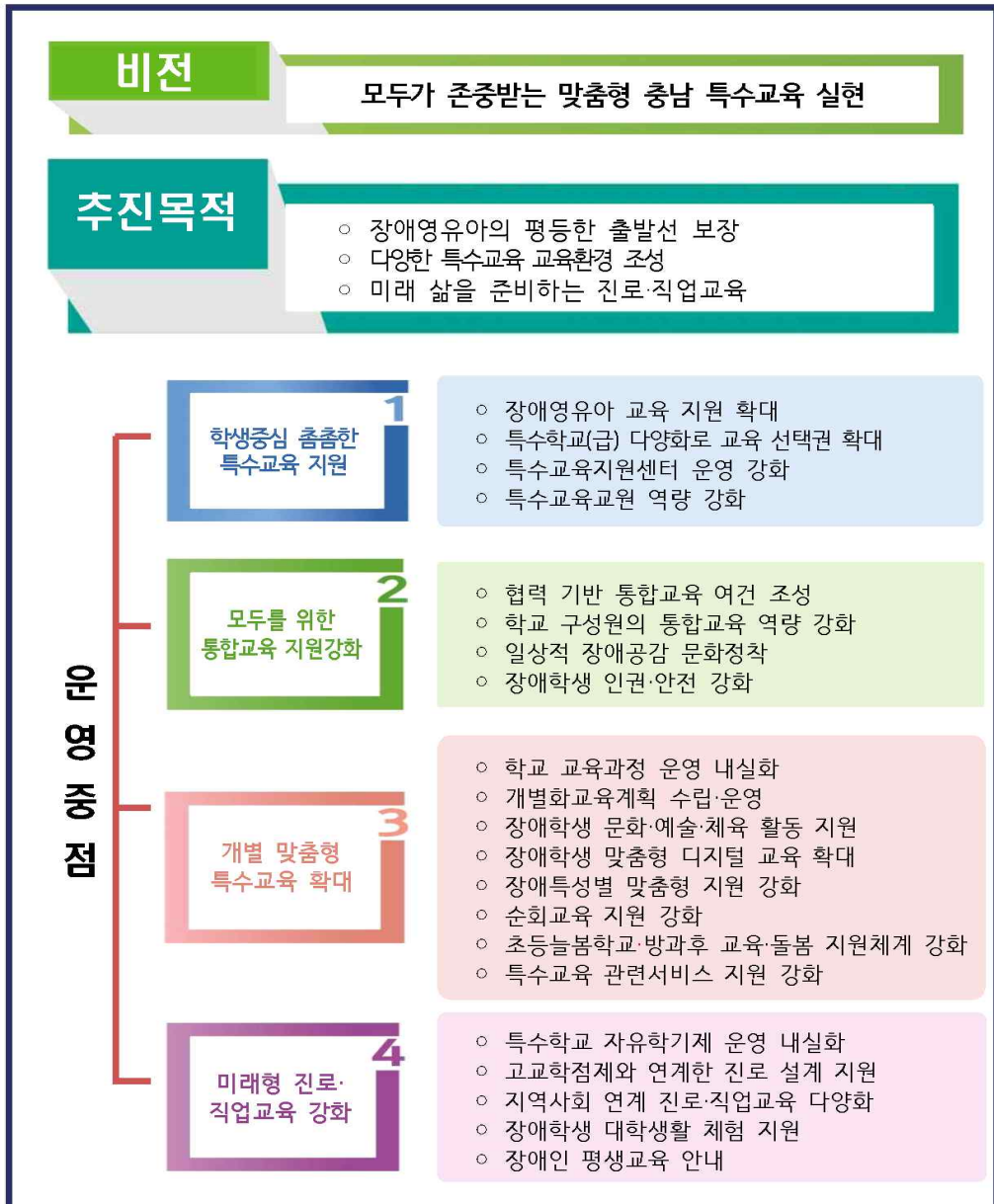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 1) 다양한 진로별 맞춤형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고3, 전공과 대상 모의면접 및 컨설팅 실시
 - 나) 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설명회 개최
- 2)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 가) 충북특수교육원 교육관 개관(9월)에 따른 전환교육 시범프로그램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3단계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학부모교육을 통한 학부모 자조 모임의 토대 마련
 - (1) 우리 자녀의 성장스토리(2회)
 - (2) 학부모 힐링 연수
- 3)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가) 장애학생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 나)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Ⅱ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 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나)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 제공 확대
-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 가) 장애유형·발달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 나)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강화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및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로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

※ 특수학교(급) 학급수 (4.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1	11	116	73	77	38	316
일반학교	115		486	185	122	0	908
계	127		602	258	199	38	1,224

※ 특수학교(급) 학생수 (4.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2	41	555	382	409	253	1,642
특수학급	405		2,181	878	661	0	4,125
일반학급	71		250	98	105	0	524
계	519		2,986	1,358	1,175	253	6,291

- 나) 일반학교 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 고려, 특수학급 신·증설(65학급 증)
- 2) 특성화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 가) 천안·아산 지역 특수학교 설립(2027년)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근거리 통학 지원
 - 나) 국립공주대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24. 9. 개교) 직업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3)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가) 특수교육 교원 확보 노력(1,534명, 교사배치율 98.3%)

나) 과밀 특수학급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24명)

다) 특수학급 학생 정원 준수 및 재정 지원(급당 4,000천 원 + 정원초과 1명당 500천 원 + 통합학급운영비 특수학급당 500천 원)

라)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지원(급당 15,000천 원 내외)

4)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가) 개원: 2027. 7.(예정)

나) 총사업비: 394.8억 원(지상 3층, 지하1 층)

다) 주요 역할 및 기능: 충남 특수교육 현장 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육 혁신 선도 등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 충남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충청남도교육청(1센터), 교육지원청(14센터)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업무 표준안 활용 연수('25. 5~6.)

3) 현장 맞춤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성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시·청각장애 거점센터(1), 자유학기제 거점센터(8), 통합교육 거점센터(2)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154명)

다) 치료지원(3,578명) 통학편의 지원(615명), 방과후학교 지원(3,361명), 가족 지원(4개 대학 7개 지회,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3개 센터)

라) 통합교육지원단(14개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14센터) 운영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강화

- (가족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14개), 장애인부모회(7개), 대학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4개 대학), 부모 자조모임(3센터)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 지원

- 수어통역사(3명), 문자통역기(5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95명), 보청기·인공와우용부품(43명), 보조공학기기(31명), 대체교과서(9명)

5) 통학비 지원(615명), 통학지원인력 배치(55명)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 역량강화 배움자리: 특수교사 2회, 신규 특수교사 1회 이상 운영
- 2) 상반기 역량강화 연수 추진(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3회,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인권지원단 담당자 연수 1회, 현장실습 담당교사 연수 1회)
- 3)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4)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운영(상반기 특수학교 4교 실시)
*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14개 지원청)
- 5) 특수학교(급) 단위학교 자율장학 실시: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6) 특수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 수업나눔 연수 1회, 찾아가는 전문가 수업코칭(2교 4명), 학교 밖 학습공동체 운영(18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유치원 통합교육 강화: 통합유치원(2원), 통합교육 거점기관(5원, 3센터)
- 2)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25교)
- 3)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18개)
- 4)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학생도움단 운영(4센터, 6개 대학)
- 5)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특수학급당 500천 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충남형 통합교육 실천방안 정책연구 추진
가) (주제) 정다운학교 운영 모델의 정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교육 운영 방안 탐색
나) (시기) 2025. 6. ~ 10.
- 2)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연 2회 이상,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 2) 센터중심 일반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14센터)
- 3)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구성·운영(1개단, 13명)
- 4)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 운영(정다운학교, 25교)
- 5) 학교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1회)

라. 장애학생 인권·안전 강화

- 1)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운영
- 2)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15개단, 본청 1, 교육지원청 14)
- 4) 교육지원청별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운영
- 5) 장애인권교육 강화(교직원·보호자 대상 연 1회 이상)
- 6)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15시간 이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유,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 2)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3)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 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 6)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및 현장 지원 강화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수립 및 운영 강화
- 3)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활성화
-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현장 지원 강화
- 5)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가이드 개발(e-book)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지원(104교)
 - 가) 특수학교 문화·예술 중점 교육과정 운영(4교)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문화·예술 교육사업 운영(9센터)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체육 꿈나무 지원(32교)
 - 나)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종합 3위, 금 45개, 은 50개, 동 31개)
 - 다) 장애학생 체육육성종목 중심학교 운영(5교)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4)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강화
 - 가) 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 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라.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지원(60교, 5센터)
 - 나) 특수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2)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3)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활용
- 4)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활용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9교)
- 2) 특수교육 대상학생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심리안정실 구축, 6교)
- 3)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교생활 의료적 지원(6교)
- 4) 의료기기 의존 중증장애학생 단국대병원 협력 사업 운영(1교)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문제)행동 지원 및 예방활동 강화
- 6)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 가)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14센터)
 - 나) 행동중재프로그램 운영 지원(28교, 53명)
 - 다)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 위탁 운영(23명)
- 7)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수어통역사(4명), 문자통역기(5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95명), 보청기·인공와우용부품(43명)
 - 나)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1센터)
- 8) 건강장애학생 교육 기회 보장(병원학교 2교, 원격수업 1기관)

바.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 가) 특수학교 채택학급 설치(7교, 13학급)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154명)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3) 순회교육 담당교원 연수 강화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3,361명)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5센터)
 -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방과후배움카드) 시스템 운영
- 2) 특수학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배치 운영: 특수학교 9교, 24명
- 3)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가) 늘봄행정사 배치(특수학교 9교)
 - 나) 늘봄지원실장(임기제 연구사) 배치·운영(특수학교 2교)
 - 다) 늘봄지원실장 미배치교 정원외기간제 배치(특수학교 5교)
 - 라) 공립유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배치(117명)
 - 마) 초등 통합돌봄 강사 지원(26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 가) 특수교육실무원(595명), 사회복지무원(95명), 희망일자리(170명), 자원봉사자(76명)
-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배움자리 운영 (1월)
- 3)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3,578명)
- 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31명), 대체교과서(9명)
-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편의 지원(615명)
-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학여행비 지원(232명)

4.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9교)
- 2) 내실있는 진로 교육을 위한 진로연계교육 운영(9교)
-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14센터)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 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11교)
- 2) 고교학점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4월)
-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5명)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 진로·진학 지원
 - 가)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지원(30명)
 - 나)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설계·평가·상담 지원(6명)
 - 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공동체 배움자리 운영(1회)
 - 라) 장애학생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교육공동체 배움자리 운영(1회)
-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0교)
 - 가)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 3)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교육과정 운영(10교)
- 4) 장애학생 취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1개단, 26명)
- 5)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26명), 중증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170명), 장애학생 도제교육형 현장실습(4교)
- 6) 특수학교 학교기업(4교), 학교협동조합(1교),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2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10교)

라.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 1)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초·중등교육 지원
- 2)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중심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

가.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2학기 공립유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
- 2)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체계 마련 및 시범사업 안정적 정착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2학기 특수학급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 2) 특수교육 기관 설립 추진(공사 착공): 충남교육청특수교육원, (가칭)한여울 학교(특수학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 맞춤 컨설팅(14개 센터)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계획 및 진단·평가 시행
- 3)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종합관리시스템 개발(12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기회 확대
- 2) ‘충남 특수교육 온수업 한마당’ 운영(11월)
 - 가) 수업 토크 콘서트, 수업나눔, 수업자료 공유 등
- 3) 하반기 특수교육 지원장학 추진
 - 나) 특수학교(6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자문상담, 통합유치원 지원단 운영
- 2)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연수(관리자 3시간, 통합학급 담임 15시간)
- 3)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장애공감 문화 확산
 - 가) 장애학생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 추진(7~12월)
 - 나) 행동중재전문가 양성(23명)
 - 다)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위한 심리안정실 구축(3교)
- 4) 과밀 특수학급 통합교육지원 시간제기간제교사 추가 배치(21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 활성화
- 2)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나눔자리 운영(하반기)

다.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정착

- 1) 일상적 장애공감 장애인식개선 행사 추진
 - 가) 충청남도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12월)
- 2) 학교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11월)
- 3) 학교장애인식지수 진단을 통한 장애공감 문화 확산(정다운학교, 25교)

라. 장애학생 인권·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교사, 학생, 학부모 약 3,900명, 연 1회)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통합교육지원단·행동중재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7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2026학년도 적용 학년군 편성·운영지침 개발
- 2)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장학 활성화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 콘텐츠 활용 강화(영상콘텐츠 1종)

다. 장애학생 문화 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충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7월)
- 2) 제13회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9. 20. / 9. 23.)
 - 가) 보령 일원, 참가 규모 1,800여명, 6종목
 - 나) 사전경기: 9. 20. 당진학생수영장(수영)

라.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강화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필요 학생 맞춤 지원 강화
- 2)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바.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장지원점검 운영
 - 가)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 운영 점검 지원(6센터)
 -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시스템 단일화(학교장 위탁운영 일몰)
-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가)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미배치교 정원 교육부 요청 (3명)
 - 나) 공립유 방학중 특수교육실무원 대체인력 운영 지원(희망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장애유형과 특징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추가 배치 노력

-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교육 편의 등) 여건 정비

4.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 1)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양질의 체험처·체험프로그램 확충
 - 나) 거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매칭, 안전한 체험처 관리
 - 다) 꿈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 1)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과별 최소성취수준 개발
- 2)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 현장 안착화 지원
- 3)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 조성 지원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및 실습처 컨설팅 실시
 - 가)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실습 활성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2)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추진 강화
- 3)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4)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라. 장애학생 대학생생활 체험 지원

- 1) 대학생생활 체험: 나사렛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2교, 학생 30명 운영)
- 2) 장애학생 대학입학설명회 개최(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2. 추진 목표

- 가.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확대
- 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평가비 지원: 1인 250,000원 범위 내
- 2) 특수교육대상 영아 교육지원: 특수학교 영아학급(1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배치(4명)
- 3)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1개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 확충: 90명
- 2) 기능별 특성화 거점센터 확대
 - 가)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 센터
 - 나) 장애영역별 거점: 3개 기관(시각, 청각, 지체)
 - 다) 행동중재 거점: 1개 센터
 - 라) 문화예술·체육활동 중점: 4개 센터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가)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회: 1회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11회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컨설팅: 상반기 1회
- 라) 지역 내 관계기관 전문인력 상시 지원 기반 마련: 행동 중재, 인권지원단 외
- 마)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년 정책연구: 3명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및 특성화

1)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단위: 학급 / 증·감 포함)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2024	12	22	13	6	8	61
2025	9	27	8	2	4	50

2) 특수학교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

- 가) 동부권(무주·진안·장수) 특수학교 개교 예정: 2026. 3. 1./ 중·고·전공과 10학급
- 나) 군산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 개교 예정: 2027. 3. 1./ 유·초·중·고·전공과 21학급
- 다) 전주 직업 중점형 특수학교 개교 예정: 2027. 3. 1./ 중·고·전공과 18학급
- 라) 서부권(김제·부안)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준비

3)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 가) 신·증설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지원: 52개 학급
- 나)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개선비 지원: 23개 학급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 1) 2025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1회
- 2) 특수학교 관리자 및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6회
- 3)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강화: 20팀

구분	영역	내용
연구회	에듀테크, 교육과정 행동 중재, 통합교육	· 특수교육 분야 전문 연구 및 현장 적용 방안 연구
교사 연수회	특수교육수업개선	· 장애유형별 교육, 교과교육, 예술교육, 범 교과교육 (환경교육 등) 수업 개선 연구 활동 · 에듀테크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연구
	진로 직업	· 특수교육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 3) 교과별 수업 및 장애 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가) 2025 전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특수학급 운영 사례 나눔 연수: 2회
 - 나) 행동 중재 지원 역량강화 연수: 2회
 - 다) 새학년 준비 특수교사 에듀테크 역량강화 연수: 3회, 85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지역청 중심 14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2) 일반학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지원: 2개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 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통합교육 연수: 1회
 - 나)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일반 학교 교(원)장, 교(원)감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 가) 교육과정 통합교육(정다운 학교) 운영 모델 개발 지원: 30개교
 - 나)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운영 및 컨설팅: 2개교
 - 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지원: 88개 학급
- 3)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 85개 학급
 - 나) 유치원 중증 장애 유아 배치 시 특수교육 지원인력 우선 배치

다.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

- 1) 장애 이해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연 2회 이상
 - 나) 지역별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확대 운영: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2)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 가)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든 학교 및 기관 전체 직원, 연 1시간 이상
 - 나)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신고 의무 연수: 모든 학교 및 기관 직원, 연 1시간 이상
- 3) 각급 학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교육과정 설명회 등 활용
- 4)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 장애학생 작품전시회, 그림책 발간, 솜뿔 챌린지 등 (1개월간)

라. 장애 학생 인권 강화

- 1)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 학생 온라인 인권 보호 지원센터 운영
- 2)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 10교
- 3) 2025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25. 5~ 7월. 온라인 및 대면조사
- 4)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5개단, 187명
 - 가) 매월 정기현장 지원 및 특별지원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지원
 - 나) 더봄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193명
 - 다) 인권지원단 위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2회

3. 개별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2월
 -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반영한 '전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원 연수: 1회
 - 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9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연중 컨설팅
- 2)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14개 통합교육지원단 연계

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지원 강화: 115명
- 2) 재택(가정, 시설, 병원 등) 순회교육 학생 지원: 20명
- 3) 순회교육 대상 학교의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컨설팅 지원
-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가정(또는 시설) 방문 및 상담 권장: 연 2회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지원: 10개교
 - 나) 문화예술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개 센터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 문화 체험학습 운영: 연 2회, 학생과 보호자 60명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10개교

나) 건강 체육활동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 센터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창단: 9명(지휘자 1명, 단원 8명)

마.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가) 장애학생 미래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4개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AI기반 미래교육 실시: AI로봇 체험, XR모션센서, 코딩로봇체험, VR자전거 등

다) 인공지능 로봇 활용 미래 교육 시범 운영 연구학교: 1개교

라)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및 여가 활용 확대: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6월, 427명

바.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 및 중증장애 학생 지원: 45명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전북대학교병원 협력 학교 내 간호사 배치: 2개교

3) 시·청각 장애학생 지원

가) 장애영역별 거점센터 운영: 3개 기관(시각, 청각, 지체)

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학교(10교), 거점센터(3개 기관)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지원: 전북대병원 한누리 병원학교

나) 원격수업 수강 지원: 스쿨포유, 꿈사랑학교, 전북e-학습터

다)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 담당 교사 연수: 1회

라)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및 수업콘텐츠 개발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5)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지원 전문가 양성 및 연구회 운영: 15명, 1개팀

나)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1개 센터

다) 행동중재 지원단 운영: 14개단

라)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 10개교

마)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 연구학교 운영: 1개교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 늘봄학교 지원: 10개교

- 2)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3,357명 지원
- 3)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으로 방학 프로그램 운영
- 4)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 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지원: 91학급

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 인력 운영
 - 가)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지원 인력 특수교육도사 운영: 433명
 - 나)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운영: 251명
 - 다)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96명
 - 라)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사 8명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 3명
- 2) 특수교육 지원 인력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원격): 도교육청 주관 연 5일, 433명
 - 나)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신규 16시간 이상
- 3) 치료지원 내실화: 3,880명
 - 가) 내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기관 및 병원 이용 월 17만원 지원
 - 나) 치료기관 모니터링: 10개 특수학교, 15개 도·지역교육청 중심 연 1회 이상
- 4)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 가) 특수학교(급) 승강기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 25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1,318명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재난 상황별, 장애특성별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3) 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 안전 강화를 위한 주출입구 통제장치 지원: 7개교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가.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 교육 지원

- 1) 지역 기반 활용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강화
 - 가)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 지원: 3개교
 - 나)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3개 센터
 - 다) 전북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지원: 537명
 - 라) 장애학생 대학생생활 체험 지원: 39명

2) 특수교육대상학생 특화 진로·직업 교육과정 지원

가)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지원: 4개교

나)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활동 지원: 9개교

다) 진로직업 교사연수회 운영: 6개팀

라) 학교 기업 선화 체험관 운영 활성화: 1개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진로직업]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 협의체 운영: 연 2회

2) 장애학생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3개 특수학급, 3개 센터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 9명

다. 관계부처 연계 취업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 취업 지원 확대

가) 관계 부처(교육부-고용부-복지부) 장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활성화

나) 고용노동부 연계 일배움 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일자리 확보

다) 복지 일자리 직무 다양화 및 참여자 확대

2) 장애 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가) 상반기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학교내 일자리사업) 운영: 9개교, 34명

나) 특수행정실무사 배치 확대로 고용률 향상 지원: 80명

2) 장애 학생 직업실기 역량강화 지원: 17개교

Ⅲ 향후 추진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 영아 교육 현황 파악 및 지원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기능별 특성화 거점센터 운영: 연중

가) 장애유형별, 행동중재거점, 문화예술체육활동 거점센터 운영: 연중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직무연수 운영: 7월 ~ 2026. 2월

다) 업무 담당자 협의회 및 거점센터 운영 사례 나눔회: 1회(11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가) 소통 협력 역량강화 워크숍: 1회(9월)
 - 나) 업무 담당자별 업무능력 향상 연수: 1회(9월)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성과 보고회: 1회(11월)
- 3) 순회 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다. 특수학교(급) 설치 확대 및 여건 개선

- 1) 특수학급 신·증설 사전예고제 시행 및 컨설팅: 연중
-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3) 서부권(김제·부안) 특수학교 설립 추진
- 4)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여건 개선 지원 및 컨설팅, 결과 보고: 11~12월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사 에듀테크 역량강화 연수: 2회(8월), 40명
- 2) 특수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 1회, 26명
- 3)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례 나눔을 통한 일반화 확대: 11월
- 4)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회: 2회(8월, 12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연중
- 2) 초, 중등학생 및 교원의 장애식수준 진단: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나. 일반 학교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연중
- 2) 장애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정다운학교 운영 컨설팅: 연중
- 3)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 1회
- 4)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운영 보고회: 1회(11월)
- 5)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관리자 연수(원격, 집합)

다.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

- 1)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을 통한 장애공감 문화 조성
- 2)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3) 학부모 대상 범국민 장애이해 교육 확대

라. 장애 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 2) 2025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12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및 사례 나눔: 11~12월

나.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강화: 연 2회 점검

다.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2025 전북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및 전국 대회 참석: 1회(9월), 45명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결과보고 및 사례 나눔회: 1회(11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 문화체험학습 운영: 하반기, 30명
- 3)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공연: 6회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결과보고 및 사례 나눔: 1회(11월)
-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결과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1회(12월)
- 3) 장애영역별 거점기관 운영 평가회 및 향후 계획 협의: 1회(11월)
- 4) 개별 학생 대상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보고회: 1회(11월)
- 5)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 교과용 도서 보급: 10명

바. 초등 늘봄학교 및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 운영 지원: 하반기 7월~12월

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1박 2일, 80명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 및 자원봉사자 지원
- 3) 특수학교(급)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 편의 확대

아. 장애 학생 안전 강화: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확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 교육 지원

- 1) 2025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9월, 10명
- 2) 특수교육 진로직업 교사 연수회 운영 평가: 1회(11월)

3) 장애학생 진로탐색 지원 사업 운영 평가: 1회(12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현장 모니터링: 10~11월

2)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평가회: 1회(12월)

다. 관계 부처 연계 취업 지원 확대

1) 특수행정실무사 기관별 수요조사 및 배정: 10~11월

2) 하반기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학교내 일자리사업) 운영: 40명

3) 직업 관계기관과의 사업(일자리 사업 등) 평가회: 1회(12월)

4)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분야별 사업 평가회: 1회(12월)

전라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 가. 특수교육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
- 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영역

-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조기 발견 및 특수교육 정보 전달 강화
 - 가) 영유아기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거점센터 운영(7청)
 - 나) 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무상교육 홍보
 -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 가) 7거점센터를 통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선별검사비 지원
 - 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중점유치원 운영(2원)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예정) 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
 - 나) 초등학교 방문 체험, 부모 상담 등 입학 전 적응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적령 입학 상담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담당자 연수로 전문성 확보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매뉴얼 개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센터장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운영 강사	치료사	운영 보조원	주무관	계
23	1	23	78	20	26	22	2	193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 가)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위원회, 인권·통합교육지원단, 유관기관 협의체 등 구성·운영
 - 나) 시·청각장애 거점센터(3), 진로·직업 거점센터(7), 문화예술 거점센터(1)
 - 다) 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라) 소규모지역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인력 맞춤형 연수 강화
 - 가) 센터장, 교육전문직 워크숍 실시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인력 연수 실시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운영강사, 치료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라.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 2)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공약)
- 3) 특수학급 현황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5	86	58	59	35	243
특수학급	70	402	175	100	-	747

- 4)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급) 운영 확대
 -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2교), 문화예술(2교), 체육중점(4교)
 - 나) 특수학급: 직업중심(3교), 문화예술(1학급), 체육중점(31교)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및 맞춤형 디지털 교육 연수 실시
 - 나)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다) 교실수업 개선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라)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 2) 함께 성장하는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 멘토링, 컨설팅 등 실시
 - 나) 특수교육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추진
- 3) 특수교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피해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
 -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법률 지원, 상담 지원 등
 - 나) 특수교육 교직원 등 마음돌봄 연수 운영
 -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 가족, 특수학교 교직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장애유형별 신속한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23단) 구성·운영
 - 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 2)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통합교육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통합교육 중점학교 운영(2원, 3교)
 - 나)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통합교육) 운영(1교)
 - 나) 통합교육 교사연구회(6팀)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교(원)장, 교(원)감 특수(통합)교육 관련 집합·원격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30시간 이수 권장
 -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 권장: 학생수, 업무경감, 성과금 반영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전문가 활용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공연 실시
 -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장애이해교실’ 실시
 - 다) 각급 학교교육계획에 장애이해(인권)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추진 안내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가)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3차시 이상 의무 실시
 -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2025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 실시)
 - 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23단) 및 역할 강화(매월 정기지원, 특별지원)
 - 라) 장애인권교육 강화 및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교육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전남 미래교육을 대비한 2030교실 모델 개발 및 운영(2교)
 - 나) 맞춤형 디지털교육 연구회 활동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1팀)
 - 다)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보급
- 2)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3)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프로그램 활용 등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교의 특성, 교육공동체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2) 특수교육 보결수업지원 강사 운영(16명)
- 3)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 가) 전라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내

- 나) 학교교육과정 내 통합교육 계획 수립·반영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안내
- 다)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운영 지원 자료 활용 지원
- 라)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현장 지원: 교원연수, 자료 보급
- 마)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절차 준수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역할 강화
- 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 다)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중재 및 의료지원 사항 포함 작성·안내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안내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실시
 - 나) 학생특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령 순회교사 연수 시 역할 및 복무 안내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가) 문화예술 중점학교 운영(1교)
 - 나) 장애·비장애학생 운영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3교)
-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체육교육 중점학교(4교) 및 체육중점 특수학급(31학급) 운영
 - 나) 특수학급 통합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3)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4) 제7회 전라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 5)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전문인력 배치 확대 노력
-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 적극 활용
- 다) 개별화교육계획에 의료적 지원사항 포함하여 작성

3) 시각·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거점지원센터(3청)를 통한 시각·청각장애학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나)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다) 전남보조기기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 등 교육 지원
- 나)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2교, 3학급)
-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한 학적 및 성적처리 안내

5) 행동중재 지원

- 가) 전문가(자격증) 양성과정 국립공주대학교 위탁 연수(6명)
- 나) 1~3기 행동중재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행동중재 연구회 운영
- 다) 대학, 병원, 전문가 연계 집중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라)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 중심 행동중재지원단 운영(31단)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 가) 공립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지원
- 나) 교외방과후 중 치료지원 영역과 중복지원 신청 안내 및 예산 확대
- 다) 영유아 방과후과정 연간운영계획 수립 후 특수학교(급) 교육계획 반영

2) 특수교육 초등늘봄교실 운영

- 가) 특수학교(급) 초등늘봄교실 참여 희망자 2명 이상 시 편성·운영
- 나) 특수학교 무기계약제 운영, 특수학급 초단시간 계약자 운영
- 다) 운영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관리 계획 포함
- 라) 늘봄지원전담인력(늘봄지원 기간제교원, 늘봄실무사) 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 가)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 나)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관리 계획 수립
- 다)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초1~2 대상 교내 특기·적성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 특수학급: 통합학급과 함께 특기·적성 및 치료지원 프로그램
- 라)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액 확대 편성
 - 최대 월 20만원 이내 수강료 지원
 - 꿈-그린카드(전자카드)를 통한 매월 결제
 - 수강여부 확인 등 및 서비스 질적 관리 철저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단위: 명)

특수교육실무사	통학차량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계
326	27	203	556

2) 특수교육실무사 근무 개선

- 가) 근무일수: 연간 최소 300일(주휴포함)
- 나) 직무관련 집합연수일,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일 확대
- 다) 병가 등 특수교육실무사 대체 인건비 지원

3) 사회복무요원 신청, 배치, 직무교육, 복무 관리 등 운영 철저

4) 치료지원 내실화

- 가) 대상자 선정 및 치료지원 영역·방법 등 운영 철저
- 나) 복지관, 병원, 사설치료실 등 유관기관 연계구축 지원 확대
- 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치료지원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개선
- 라) 치료지원의 내용·방법 등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
- 마) 고품질 치료지원을 위한 사설 치료실 연 1회 이상 점검

5)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 나)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 평가자료 활용
- 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평가방법 등 명시

6)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 가) 통학버스 미이용 학생 중 2km 이상 통학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 나) 통학비 지원방법 개선(실비 지원) 및 점검 강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7)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 장애학생 가족의 개별적 요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부모상담,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지원 강화

나) 가족캠프, 문화·여가 등 휴식·심리·정서 지원 강화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 가) 재난 상황별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나)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나) 학교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다)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라)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 마) 장애학생 일과 중 학교 이탈 예방 노력
 - 바) 현장체험학습 시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체험 기회 확대
 - 가)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9교)
 - 나)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집중학년·학기제,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다)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 내실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 가)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9교 35학급 운영
 - 중증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입학전형 보완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원인력 확충, 미진학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2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운영
 - 다)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운영(30교)
 - 라)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 운영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9교) 운영 및 내실화
 - 특수교사 직업실기 자격취득 과정 연수 실시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연수·진로 설명회 운영

- 도교육청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3개 43명)
- 3)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가)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운영 및 지침 개정 안내
 - 나) 현장실습 우수산업체 인증을 통한 양질의 취업 기회 제공
 - 다) 학교 내 일자리(80명)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보조원(22명)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및 홍보·상담 강화
- 나. 미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전남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 다. 서부권 과밀해소와 전문적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라. 장애학생 체력강화와 체육전문인 육성을 위한 체육중점 특수학교 운영 확대
-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연구회를 통한 현장 맞춤형 연수 확대
 - 2) 특수교육 관계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돌봄연수 지속 지원
- 바.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대비한 정책 수립 철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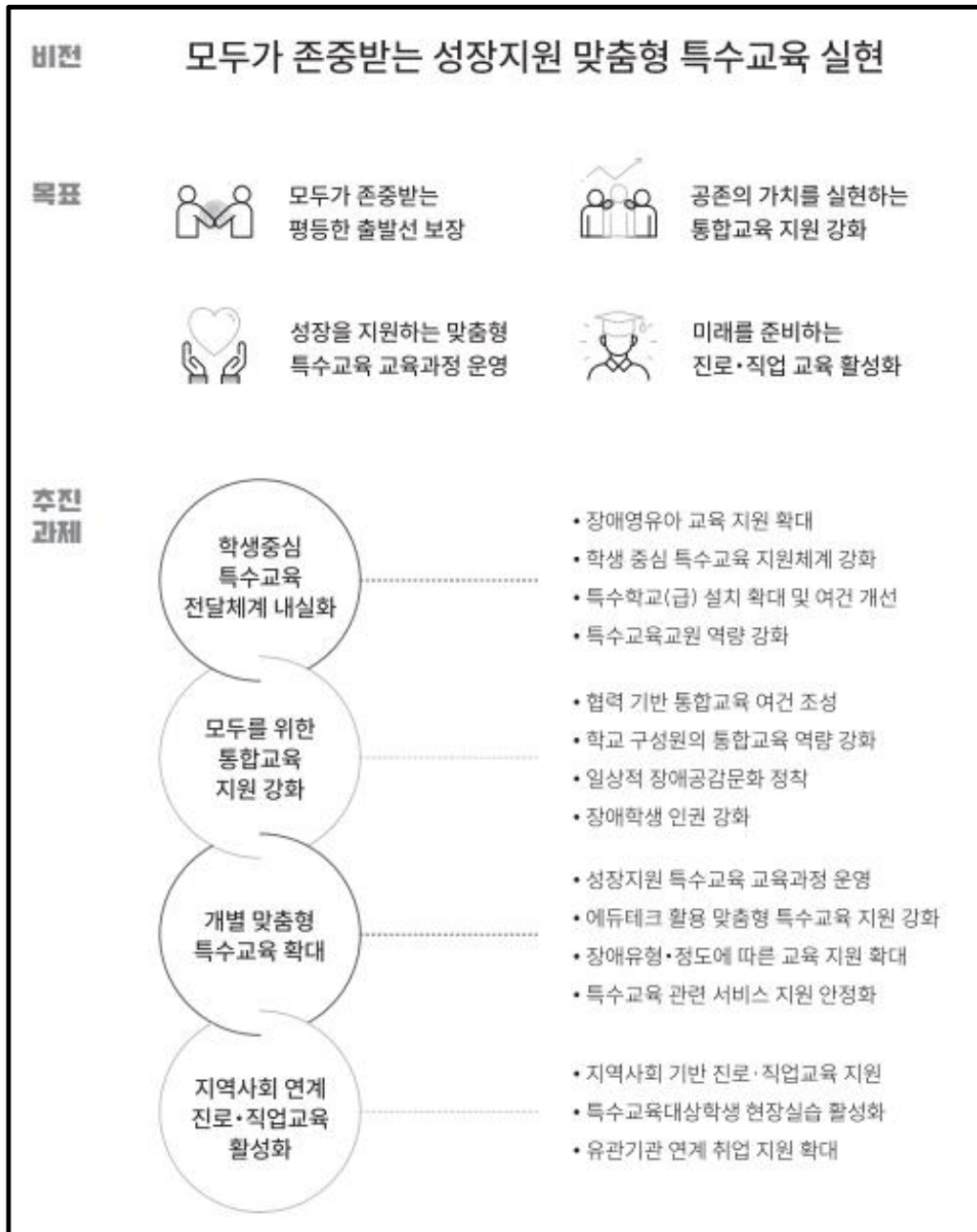
- 가.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통합교육교사연구회 운영 내실화
- 나.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역량 강화
-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라. 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내 전문가 그룹 구성 확대
 -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가.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통합교육교사연구회 운영 내실화
- 나.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역량 강화
-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라. 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내 전문가 그룹 구성 확대
-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차별 없는 늘봄학교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경상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Ⅱ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가) 유관기관 연계로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안내 체계 마련, 무상교육 홍보 및 정보 지원
 - 나)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 홍보 및 정보 지원
- 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보육기관 간 차별없는 지원 제공
 - 나)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SFP) 수립·실행 지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대상 진단·평가 및 치료지원 서비스 실시(2025년)
 - 다) 특수교육대상영아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통한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입소입학신청사이트’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 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 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 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라)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강화
 -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운영 내실화
 - 마)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확대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 가) 권역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안동·구미·경산) 운영 내실화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항, 구미, 경산, 안동
 - 나) 시·청각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시각장애(포항), 청각장애(구미)
 - 다) 개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경상북도통합예약시스템’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 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
 - ('24) 22개 센터 내 교사 136명 → ('25) 141명으로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비 확충 및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등 배치 확대
 - ('24)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13명 → ('25) 14명으로 배치 확대
- 다) 센터 기능 구조화 및 역할 전문화를 위한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 라)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 중심의 연수 강화 및 근무 교원 처우개선
 - 업무 관련 필수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보조공학기기, 행동중재, 교육과정, 장애영유아 등)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교육 지원 등
 - 전문직 전형 가산점 제공(2021~), 학습휴가(5일), 연수 지원 등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업무 전문성 강화
 - 경북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연수 실시('25.)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 특성화 및 다양화
 - 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배치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특수학교 설립 수요 분석
 -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 경북 서부권역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28) 1교
 - 경북 동부권역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모색
- 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사(시간강사) 및 지원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통합유치원 확대
- 다)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상향
 - ('22) 급당 300만 원 → ('24) 학급당 400만 원(정원초과 1인당 50만 원)
- 라)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비 상향
 - ('22) 급당 3,000만 원 → ('23) 학급당 4,000만 원 → ('24) 학급당 5,000만 원
 - 특수학교(급) 공간 혁신 및 노후 학급 환경 개선
 - ('23) 학급당 4,000만 원 → ('24) 학급당 5,000만 원

- 마) 특수학급 수업 지원 교사제 실시 내실화
 - 특수학급 결·보강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보장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9개 센터 내 13명 배치
- 바) 특수학교(급) 수업 지원 특수교육지원강사제 실시
 - 과밀학급 해소 및 중증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
 - 교당 1명, 30교 지원
- 사) 특수교사 단계적 충원 추진
 -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현황, 교육 현장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에 특수교사 증원 배치 요청 및 배치 계획 수립
- 사)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중도중복장애학급’ 시범 운영: 김천동부초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 가) 기존 특수교사 주도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 통합교육 책무성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교육활동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 2)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 가) 학교 장애인식 검사 실시('25. 5.~6.)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연수 강화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 편성하여 매년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일반학교 관리자[교(원)감 포함]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의무 이수 (2025. 3.~)
 -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0년 내 15시간 이수 권장
-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적 역할 모형 발굴 위한 ‘정다운학교’ 확대 운영

- 정다운학교(20교)
- 교육부 지정(통합교육 연구학교): 3교(유치원 1원, 초등 1교, 고등 1교), 자체운영: 17교(유치원 8원, 초등 4교, 중학 3교, 고등 2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미래형 장애이해교육 강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범교과 학습 인권교육과 연계한 계기교육 및 장애이해 수업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회방송’을 활용한 학교(급)별 장애이해교육 운영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및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 지원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 구미, 경산, 안동)
- 찾아가는 장애공감 문화 공연: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온울림’ 앙상블

다)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유치원)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경북교육청 ‘맛쿨멋쿨’ 수어 콘텐츠 활용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 특수학교(급) 현장 지원 강화

-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분야 전문성 갖춘 핵심교원 양성
-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프로그램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 (정기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실시
- (특별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실시
-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 조사 실시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다) 통합교육 의식 제고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 지원

- 경북 어울림 인권 동아리 18팀 지원, 공모(동아리)사업 학교자율운영체제로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가)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AI형 에듀테크 및 실감형 콘텐츠 보급(AI 학습보조 로봇 등)

나)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확대

- 특수학교 6교 운영: 상희, 경희, 안동영명, 안동진명, 구미혜당, 경북영광학교
- 장애 특성 고려한 에듀테크 기술 활용 수업 지원 기반 조성: 경주교육청('23)
-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 운영: 경희학교('24), 특수학교 8교('25)

다) AI 활용 및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교원 연수 기회 확대

- 사례: AI 스피커 및 플랫폼, 수어 활용 청각장애 학생 AI교육 등

라) 의사소통,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활용 확대

마)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을 통해 드론·로봇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

- 지역 SW교육기관 방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등

2) 특수교육 플랫폼 운영

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안내

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및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특수학교(5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동아리(70팀), 장애학생 재능 키움 지원(101명)

나) 전문가 멘토링 및 체육 분야 진로 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체육 인재 발굴

- 특수학교 운동부 지원, 특수학교 1교 1운동 종목 지원, 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9월 예정)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위해 세부 시행 지침 보급

- 나) 학교급·배치유형·지역별 특수성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체계 구축
- 다)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원 대상 활용 연수 강화

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생활기능 중심 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 활용 가능한 지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안내
- 나)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건강장애·재택순회학생 급식비 및 사회적응활동비 지원(7, 11월 예정)
- 다)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인공와우 수술 및 기기 교체 비용 지원(2022.~, 48명, 3억원)
- 라) 시각·청각·시청각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지원체계 마련
 - 시청각장애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평가 도구 및 교수·학습 방법 등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마) 특수학교(급) 교사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와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 집중 지원 확대
 - * 2022~2024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270시간, 48명)」 이수 완료, 2025년: 25명(예정)
 - 행동특성에 따른 개별 학생행동중재계획 실행을 위해 학교 내 심리안정실 (행동지원실 등), 비상벨 설치
 - ※ 심리안정실 지원: ('24) 152 → ('25) 200 → ('26) 250 → ('27) 300
 - ※ 비상벨 설치 지원: 도내 8개 특수학교 설치 완료('23)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 위한 여건 개선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생활지도원 연수 연 2회 실시
- 다) 특수교육실무사 처우 개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야간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과 함께 동숙 시 동숙비 지급(1박, 50,000원으로 상향)
 - 방학 중 근무일: 학기 준비일 4일(학년도 기준)
- 다) 장애학생 가족의 교육 회복과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지원 추진
 - 재활승마 가족캠프: 특수학교(급) 재학생 60가족(상·하반기 각2회 운영)

-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연수, 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2025년)

3)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체계 강화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수요 반영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가)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다양화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초·중·고 진로교육 연계강화, 지역사회 연계 현장 체험 중심 진로·직업 교육 기회 확대

나) 특수학교 전공과 중심 진로·직업 프로그램 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교육기회 다양화

다)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1, 2학기)

- 고등학교, 전공과 대상 실습형 직무 체험 제공

마)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 강화 및 학교급별 진로·직업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및 전공과 학생 대상 2개 대학 체험 추진
- 대학 연계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활성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2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

- 운영비 증액(2023년 교당 3,000만 원 → 2024년 교당 4,000만 원)

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고등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326명 지원

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통합 위한 자립생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운영

차) 고등학교과정 장애학생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41교(급)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나)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부-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가)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
 - 나)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컨설팅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장애학생의 요구와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 연계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가)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안내 체계 및 지원 강화
 - 나) 장애자녀 부모지원 정보제공 확대
- 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 가) 교육·보육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및 입학 적응 지원 확대
 - 다) 어린이집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실시를 통한 유보통합 준비

나.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구조화 및 운영 내실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내실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역량 강화

라)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 특성화 및 다양화
 - 가)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나) 특성화·전문화된 특수학교 운영 모델 확산
 - 다) 기존 특수학교 재구조화 추진
 - 라) 특수학교-지역사회 간 교류 확대
- 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가)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 나)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 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나) 특수교육 교원 확충 및 개선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 가)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정비
 - 나) 통합학급 협력교수를 위한 여건 개선
- 2)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가) 일반학교 대상 학교 장애인식지수 적용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 가) 교원 자격·직무연수 시 통합교육 교과목 확대 편성
 - 나) 지역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강화
 - 다)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 확산
-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정다운학교 및 경북형 어울림학교 지원 강화
 - 나)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다양한 장애이해교육 및 학생 동아리 지원
- 나) 학생·교원 대상 연 1회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강화
 -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인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 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 가) AI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환경 조성
 - 나) 에듀테크 활용 장애학생 맞춤 인프라 구축 및 활용
 - 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 연수 지원
- 2) 특수교육 플랫폼 운영
 - 가) 장애학생 맞춤형 플랫폼 열린배움터 운영 안내
 -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안내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 다) 문화예술 분야 체험형 교원연수 지원 확대
-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지침 안내
 - 나) 개별화교육계획 현장 지원
 - 다) 학교급·배치유형·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
 - 라)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실 운영 확대
-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강화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다) 경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나) 시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강화
 - 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내실화
 - 라) 특수학교(급) 교원 행동중재 역량 강화
 - 마) 장애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강화
-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치료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여건 개선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다) 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 체제 구축
- 3)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가) 장애학생 방과후·돌봄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나) 교내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가)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2) 관계부처(기관)간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시스템 활용 확대
-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가) 특수학교-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운영

경상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목표

-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3. 중점 추진과제

-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지원 체계 확립(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센터 배치 강화)
 - 2)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검사 기록지 지원 확대
 -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 전환을 위한 초등입학 적응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 적극 활용
 -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및 담당자 대상 관련 지침 안내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확대(순회교사 6명 증원)

- 4)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장애영아 거점센터, 전환교육지원실, 시·청각장애 거점센터)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2025년 35학급 신·증설
- 2)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신·증설 학급 83개, 노후 10학급)
- 3) 신설 유치원 및 학교 설립 시 특수학급 의무 설치 강화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 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과지도, 메타버스 자료 제작, 교육과정 운영, 진로직업 교육, 예체능 교과교육, 생태환경교육, 긍정적 행동 지원 등 연수 확대 운영
 - 다)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11개 특수학교(급) 및 2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공모형, 3팀) 운영
- 2)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기회 확대 및 교육활동보호 연계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운영(19개)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별도의 도단위 유치원 통합교육 자문단 구성 및 운영(1개)
 - 다)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25년 155명)
 - 교육과정적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원장) 연수 운영(3회, 1,000명)
 -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감(원감) 연수 운영(3회, 1,000명)
 - 다) 통합교육 행정지원(행정실장) 연수 운영(1회, 300명)
 - 라)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1회, 64명)
 - 마)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2회, 55명)

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및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위탁 운영(연중)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및 통합교육 지원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2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교사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수 등 강화

나) 2025년 유치원 통합교육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1종)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인권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나)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장애공감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강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안내

나)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다)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를 위한 실태조사 안내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인권지원단 운영(21개)

나)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현장지원(특수학교는 연 2회)

다)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실시

라)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 경험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더봄학생 선정 및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나) 특수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3시간 이상)

다)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 및 강화

라) 학교 단위 장애 공감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가)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2교) 및 공학체험관(경남특수교육원) 운영
 - 나) 권역별 특수학교 미래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특수학교 5개교, 특수학급(교) 3교)
 - 다) 특수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지원
 - 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열린배움터’ 활용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아이톡톡 활용 지원
 - 교수학습자료, 수업나눔,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교 특성 및 교육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학교 자율적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지원
 - 나) 고등학교 과정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 반영
 - 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 다)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확산
- 4)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 지원
 -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 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
 - 다) 교육과정중심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환경 재구조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및 사례집 개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학년 초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
- 전출입 업무 처리 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처리 기간 준수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연수 지원

- 온라인 전달연수 실시: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
-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사, 관리자, 학부모,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자 등에 대해 연수 이수 독려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

가)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실시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지원 강화

다) 장·당기 결설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순회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지원

나)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등에 대한 연수 강화

다) 순회교육 담당 교사에게 순회교육 활동비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공연부문 10교 128명, 전시부문 6교, 54명)
-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8교실 10명)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1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 2025 경상남도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준비
- 체력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활용 지원체계 개선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수련활동 지원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시설 및 체험관을 이용한 체험활동
- 장애공감체험을 통해 비장애학생의 장애 인식 및 태도 개선 지원
- 1일 체험형 수련활동 및 1박 2일 숙박형 수련활동 운영

라) 특수교사 대상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진단·평가 지원 강화,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적용)
- 2)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료적 지원 강화 및 지역 의료기관 협약 추진
- 3)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도서 및 대체자료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4)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교복귀프로그램 지원
 - 나)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4월)
 - 다) 병원학급 운영(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및 경상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 라) 가칭)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구축 추진
- 5)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 가) 장애학생 개별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44명)
 - 나)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연수(120시간, 이론 60시간/실습 60시간, 24명)
 - 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 라)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지원(1교, 김해신안초등학교)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1인당 월 12만 원 이내)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440학급)
- 3) 토요프로그램(민간위탁) 및 방학 중 희망나눔학교(지방보조금) 운영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원 배치(678명)
- 2)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나)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강화

- 3) 치료지원 내실화
 - 가) 병의원 치료(물리, 작업, 청능훈련) 및 발달재활치료(언어치료 등)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비 지원(월 15만 원 이내)
 - 나)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119명 배치)
- 4)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 및 대안평가 지원
 - 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내용 삽입
 - 나)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방안 지원
- 5)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가) 보조공학기기 통합지원시스템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나) 전시 체험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실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
- 6)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편의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숙사 숙식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2교)
 -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11교 51대)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학교별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안전생활체험관)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기회 확대
 - 나)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진로설계관 운영
 -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1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교) 운영
 - 라) 예술·체육분야 중점 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지원(4교)
 - 마) 장애학생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1교)
-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7교)
- 3)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 서비스지원 협의체 운영
 - 나) 전환교육지원실 운영(7센터) 및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12명)
 - 다) 경상남도 진로정보 도움자료 개발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5)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거대과밀 특수학교 해소 및 다양화·특성화·전문화 특수학교 신설 추진(가칭)진해나래울학교(2027. 3. 1.) 및 김해제2특수학교(2029. 3. 1.) 개교 예정)
 - 나) 지역별 특수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컨설팅 지원
 - 다) 학기 단위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2학기에도 특수학급 신증설)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 장애영유아, 행동중재, 진단평가 등 연수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다) 특수교육교원 국외 연수 실시
 - 라)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2)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현장 지원 활성화
 - 나) 통합교육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보급
 - 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정다운학교 대상)
 - 가)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프로그램 활용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 2)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통합교육 집합(원격)연수 참석 권장
- 3)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통합교육 관리자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강화(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 4)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1차년도 성과공유회 개최(11월)
 -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 및 현장 적용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 나) 인권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강화
- 2)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 확대
 - 가)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 실시
 - 나)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실시 강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3)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점검 강화
- 4) 장애인권 강화 및 인권보호 조항 학칙 반영 추진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3)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4)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5) 특수학교(급) 교구 설비 기준 개정 고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실시 지원
- 2)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안내 강화
- 3)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학급 운영
- 2)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연수 강화
- 3) 특수학급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결보강제 운영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경상남도교육감 장애학생 체육대회(9월)
- 2) 경남 장애학생 문화예술제 개최(10월)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컨설팅 실시
- 3) 가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준비
- 4)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연수 운영(120시간, 1년 과정, 24명)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 2) 특수학교 중심의 안정적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실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 및 원격연수(2회)
- 2) 치료지원 내실화 및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관리 철저
- 3) 학교 단위 정규평가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해 대안적 평가 관리 방안 마련
- 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편의 지원
- 6) 특수교육활동 긴급치료비 지원

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1) 학교별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시 및 점검 일반화
- 2) 장애학생 등·하교 교출 및 이탈 사고 예방 강화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2) 산업체, 장애 맞춤 훈련기관, 학교 연계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 강화
- 3) 2025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참여(9월)
- 4) 대학진학 설명회 운영(6개청)
- 5) 경상남도 진로직업교육 성과 공유회(1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를 여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목표

- 가.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나. 통합교육 내실화로 장애공감문화 정착
- 다. 수요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격차 완화

3. 중점 추진 과제

- 가.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전달체제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4. 제주특수교육의 강조점

- 가.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른다.
- 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른다.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길러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충실을 기한다.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건강한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 마.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활동으로 직무능력을 계발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한다.
- 바.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사. 화해와 상생, 포용의 4.3평화·인권·통일교육 및 제주이해교육 강화를 통하여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II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2기관
-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58명 선정·배치 및 54명 치료지원
- 3)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20명(신청자 전원)
- 4) 만3세~5세 장애유아(비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비(월 16만 원) 지원: 311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제주영지학교분교장 및 (가칭)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 나)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거점지원센터 2개
 - 다)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내 원격화상교육실 운영
 - 라)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내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 지원실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확충
 - 가) 특수학교 교사동 증축
 - (1)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 추진(설계용역 완료)
 - (2)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추진(설계용역 완료)
- 2) 특수학교 전공과 다양화
 - 가) 제주영송학교 전공과 생활자립반 증설 1학급
-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가) 특수학급 신설
 - (1) 유치원: 2학급(해안초병설유치원, 동화초병설유치원)
 - (2) 초등학교: 5학급(애월초등학교, 보목초등학교, 새서귀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3) 중학교: 1학급(위미중학교)

나) 특수학급 증설

(1) 초등학교: 12학급(노형초등학교, 도련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재릉초등학교, 하귀일초등학교, 위미초등학교)

(2) 중학교: 2학급(제주중앙여자중학교, 한라중학교)

(3) 고등학교: 1학급(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4) 특수학교 학급 증설

가) 특수학교: 2학급(제주영송학교 1학급, 서귀포온성학교 1학급)

5) 특수학교(급) 신·증설 현황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계
2024	2	0	2	7	1	6	4	0	4	1	0	1	7	0	7	21	1	20
2025	2	1	1	17	0	17	3	0	3	1	0	1	2	1	1	25	2	23

5) 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신설을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중기학생배치계획 및 과밀학급 현황,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부에 특수교사 증원 배치 요청

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87명 정원을 활용하여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지원, 1학급 2인담임제 운영 학교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6개 연구회(461명)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10명

다) 특수교육담당교원 대상 행동중재 연수: 250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1)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 (2)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 (3)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대면연수 1회 개최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도교육청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1개교(초)
 - 나)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5개교(유 2, 초 1, 중 2)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장애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확대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신청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추진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제주장애학생의 날(매년 6월 5일) 및 장애이해교육주간 운영
 - 나)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도교육청 민간
위탁사업기관 2기관(제주장애인야간학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 추진
 - 나) 공공형 최초 장애인오케스트라 ‘햇빛(Heartbeat)’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공연
-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가) 세계 자폐인의 날(4월 2일) 기념 블루라이트 행사 캠페인 참여 및 홍보:
1기관(도교육청)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가)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1회
 - 나)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3명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 나)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특수학교는 연2회 이상)
 - 다) 특별지원: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3회 대면 연수 실시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 나)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가)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특수학교 1개교 운영
- 2) 장애학생 미래교육환경 역량강화 지원
 - 가) 장애학생 미래교육환경 조성 지원: 특수학교 3개교
 - 나) 중학교 1학년 입학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 1노트북 지원(희망자에 한함)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수학교 3개교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제주이해교육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 지원: 특수학교 3개교
 - 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원 연수 운영
-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 가)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컨설팅 및 도움자료 개발 추진
 - 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시외과목 개발 TF팀 운영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 1학기 1회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1학기 1회 이상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 가) 특수학교 채택 순회교육: 19명(초 8, 중 6, 고 5)
 -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112명(유 26교, 초 32교, 중 8교, 고 1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특수학교 3개교, 민간위탁사업 운영 1기관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특수학교 3개교, 장애인체육회와 연계 지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센터
 - 나)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 2) 행동중재 지원
 - 가)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3개단
 - 나)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10명

사. 방과후교육·늘봄 지원체계 강화

-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수요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128교)
- 2)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특수학교: 특수학교별 계절학교 운영(3개교)
 -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절학교 운영(2센터)
- 3) 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평가 연 1회 실시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교육(지원)청별 집합 연수 2일 실시
- 3)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가) 배치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16시간 이상)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 4) 치료지원 내실화 운영
 - 가)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주희망나눔카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나)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점검 실시(상반기 1회)
-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44회)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연 2회 이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 나)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3명(특수학교별 1명)
- 2)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학교내 장애학생(전공과) 일자리사업 운영: 특수학교 3개교
 -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3) 제주어린이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바리스타 직업체험교실 운영
- 4) 제주발달장애훈련센터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 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직업센터(위탁기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도내 특수학급 및 전공과 학생 취업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2기관: 주기적인 홍보 실시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추가 선정 배치를 통한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3)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시 추가 지원
- 4) 만3세~5세 장애유아(비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 지원 신청시 추가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를 통한 전문성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 다)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

가) 특수학교 교사동 증축

- (1)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경제성 검토
- (2)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일상감사 수검

2) 특수학교 다양화

가) 제주 동부지역에 제주영지학교분교장 설립 추진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특수학급 신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추진

나) 특수학급 증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설 추진

4) 특수학교 학급 증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설 추진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87명 활용 2인 담임제 운영 지속 지원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강화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여름방학 중 연수신청자 10명에 대해 연수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 학교에서 통합교육 컨설팅 요청시 수시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을 통한 상시 지원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1개교(초) 통합교육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 나)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5개교(유 2, 초 1, 중 2) 통합교육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장애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확대 지원: 도 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신청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지속 추진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햇빛(Heartbeat)’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장애공감문화 확산
- 나) 공공형 최초 장애인오케스트라 ‘햇빛(Heartbeat)’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실시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가) 미술공모전 및 백일장 등에 교육감 후원명칭 승인 요청시 승인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가)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나)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통한 상담 및 인권지원 내실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운영 내실화
- 나)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지원
- 다) 특별지원: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 나)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속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학교에서 신청시 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4)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 지원: 특수학교 3개교
-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도움자료 개발 보급
- 6) 고시외과목 개발 추진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 2학기 1회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민간위탁사업 운영 기관 및 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강화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지원
- 2) 행동중재 지원
 - 가) 통합교육지원단(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시 행동지원 전문가단 방문 지원
 - 나)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방학중 대면 연수) 지원
 - 다) 특수학교(급) 학부모 대상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1회

사. 방과후교육·놀이 지원체계 강화

-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수요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추가 지원
- 2)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특수학교: 특수학교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시 계절학교 운영
 -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시 계절학교 운영

3) 도내 특수학교 3개교 늘봄학교 운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학년말 업무평가 1회 실시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교육(지원)청별 집합 연수 여름방학 기간 중 2일 실시
 - 나) 온라인연수 상시 지원
- 3) 사회복지무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가) 배치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 4) 치료지원 내실화: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점검 실시: 하반기 1회
-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수시 지원
- 6)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내실화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연 2회 이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 운영 내실화
- 2)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학교내 장애학생(전공과) 일자리사업 운영: 취업으로 인한 수요 추가 발생시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운영
 -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내실화
- 3) 제주어린이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바리스타 직업체험교실 운영
- 4) 제주발달장애훈련센터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 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직업센터(위탁기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도내 특수학급 및 전공과 학생 취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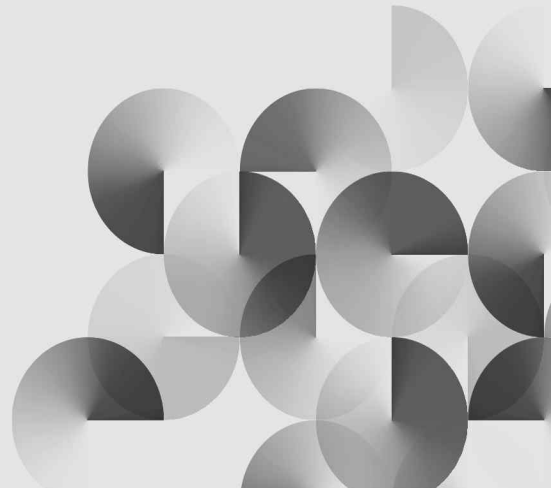


2025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부록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1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2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2024. 2. 27.>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0.>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2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27.]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24. 2. 27.>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 5. 29.>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10. 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0. 1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2. 10. 18.]

제34조 삭제 <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 <제20565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84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 2. 25.>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2021. 4. 2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 29.>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2. 25.>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2.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 2. 25.>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 6. 28.]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본조신설 2025. 2. 25.]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2. 25.>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 4. 18.]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 [본조신설 2022. 6. 28.]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장 보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35284호, 2025. 2. 25.>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개정 2025. 2. 2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큐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큐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앐이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앐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앐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앐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앐을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앐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앐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앐 또는 자폐성장앐

2) 시각장앐, 청각장앐, 지체장앐 또는 정서·행동장앐

나. 시청각장앐: 시각장앐 및 청각장앐을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교육부령 제360호, 2025. 6.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6. 20.]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 6. 29.>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360호, 2025. 6. 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6. 30.>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명 (한자)			성별 남, 여
	주소			
	소속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교장) (인) 시·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자르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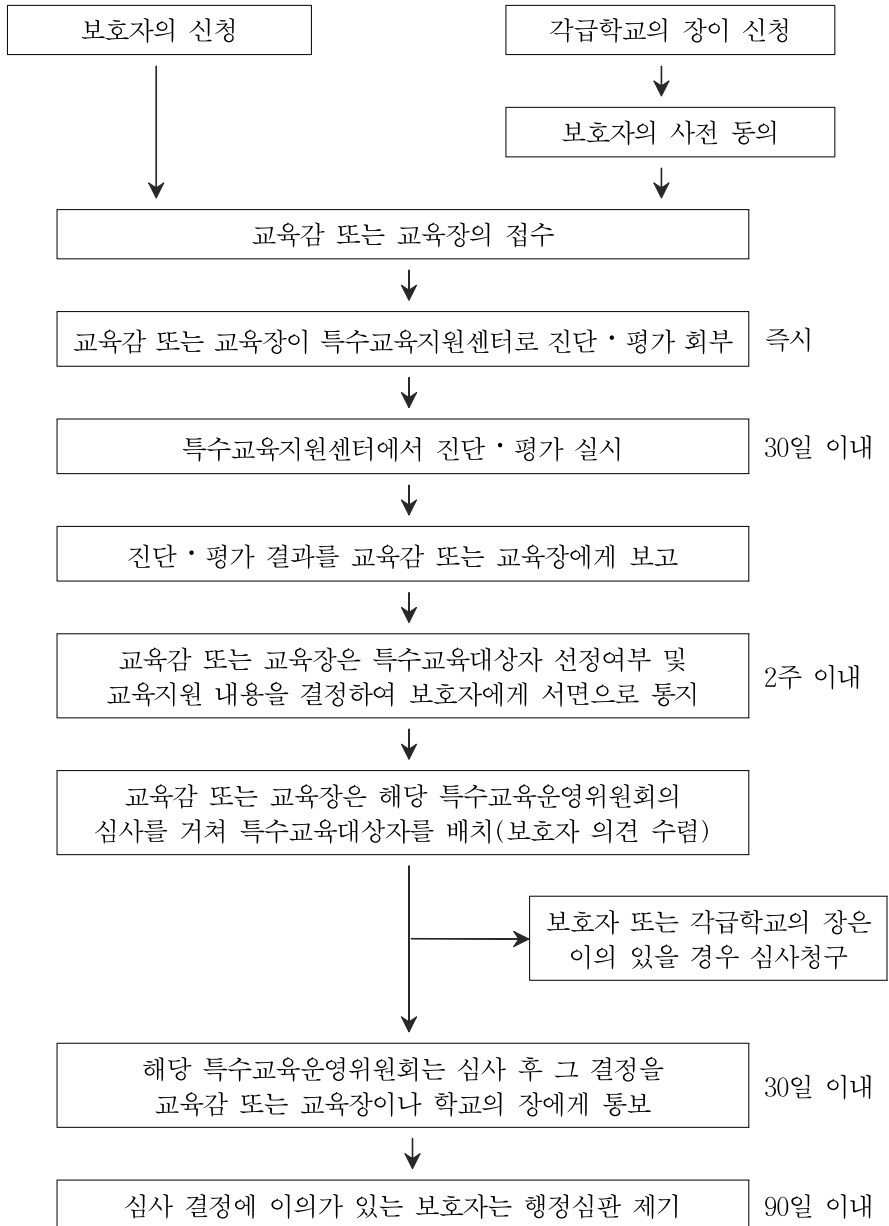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고등학교 과정 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않음.
-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9. 17.>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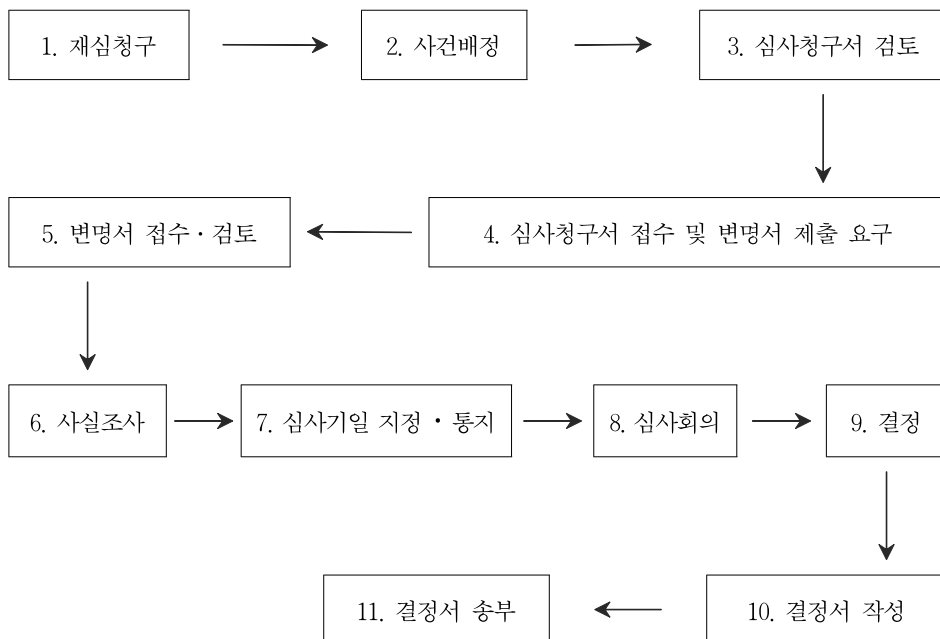
심사청구서(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별지 제5호 서식〕

심사결과통지서(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9. 17.〉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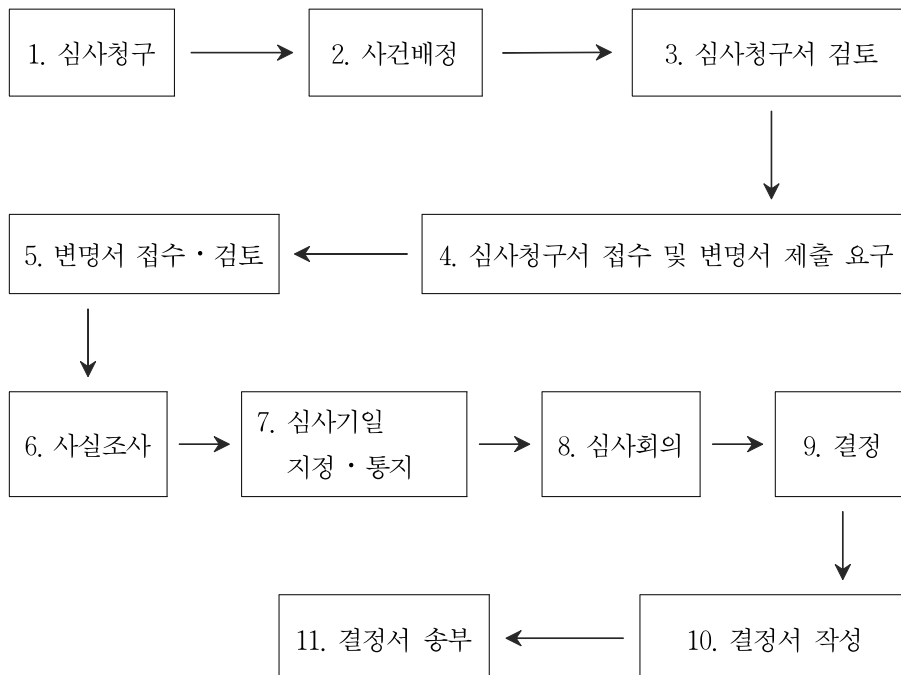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② 청 구 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학교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별지 제7호 서식〕

심사결과통지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진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559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세종특별자치시 평기길 108-41
우편번호 30052
